

월간
재정포럼 9 9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7년 9월호 제135호

현안분석 • 우리나라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및 평가/ 박노욱
공무원 및 공적부문 임금 결정/ 원종학

특집 · 2007 세제개편(안) • 2007년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 및 평가

정책흐름 • 2007년 세제개편(안) 외

재정통계 • 연도별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총괄내역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현재와 미래 · 김유찬
현안분석	06 우리나라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및 평가 · 박노욱 18 공무원 및 공적부문 임금 결정 · 원종학
특집 · 2007 세제개편(안)	31 2007년 세제개편안의 방향 및 주요내용 · 김낙희 45 2007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Ⅰ) · 이철인 51 2007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Ⅱ) · 전병목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56 日, 소비세 1%p 인상 추진... 연금재원 확보 위해 외
정책흐름	66 2007년 세제개편(안) 107 금년도 국세징수 실적 호조 114 세수추계 오차 발생원인과 개선방안
재정통계	119 연도별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총괄내역 외
이런의견 저런생각	138 국민연금기금 독립 운용, 효율 높일 계기다 외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현재와 미래



김유찬
충북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국세행정의 역할

조세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국세청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징수되는 세금으로 인한 국민의 금전적 부담과 국가재정에 대한 효과를 논외로 하여도 징세비용과 납세비용 측면에서 국민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또 국세행정은 국민에게 가능한 한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조세정책을 보완하여 과세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사회의 투명화에 기여하여야 하는 복잡하고 다원적인 정책목표를 가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위한 국세행정의 주변여건은 어떠한가?

우선 경제환경을 볼 때 국제금융시장은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은 크게 증대되었고 이와 함께 그들의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행위 및 이에 대한 대응책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동시에 국내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가 고도화되면서 이들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국세청의 조세주권 확보에 큰 도

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 국민의 권리 의식이 제고되면서 이제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에 고품질의 납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국세행정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기구로 변신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는 IMF 경제위기 이후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에 직면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층 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공평한 세부담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강해지면서 필연적으로 국세행정은 보다 엄정해질 수밖에 없다.

국세행정 분야에서 최근에 경주된 노력들

우선 국세청의 최근의 가장 괄목할 성과로는 IT 기술을 응용한 과세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세원 파악과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지난 수년간 신용카드세액공제제도를 통하여 이루어낸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하여 세원 투명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시행 2년차인 2006년도에 발급금액 30조원을 달성하였으며 현금영

.....

우리나라 사회는 IMF 경제위기 이후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에 직면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층 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공평한 세부담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강해지면서 필연적으로 국세행정은 보다 엄정해질 수밖에 없다.

.....

수증홈페이지 회원수도 민간포털사이트에 버금가는 1천만명을 돌파하였다. 또 투명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세원 노출을 위해서 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고 사업 관련 금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과세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국세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에 따라 2006년 징수세액 100원당 소요비용은 0.79원(1966년과 비교할 때 2.17원의 36.4% 수준)으로 감소하여 국세청 개청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 국세청의 국민 수에 비례한 인력규모는 OECD 선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납세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보면 우선 홈택스서비스를 통한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전산화를 시행함에 따라 법인세 96.9%, 종합소득세 81.2%, 부가가치세 76.2%의 전자신고율을 달성하였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절차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국세청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전산수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험료, 의료비, 직업훈련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바 있

다. 이와 함께 2007년 7월부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령, 질의회신, 심사, 심판결정문, 판결문 등 국세관련 각종 법령정보 14만 여건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세무조사의 횟수와 기간을 성실신고 담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조사역량 강화로 세무조사 1건당 추징세액은 증가하도록 하였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였다.

전통적 세정 취약계층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소득간, 계층간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삼아 6차에 걸친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또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여 사업자등록부터 세무조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하여는 범칙처리기준을 엄격 적용하는 등 조세범칙조사와 가산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동안 부당한 신고위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수준이 선진국(40~100%)에 비

.....

현재 국세청이 추구하고 있는 과세인프라 구축을 통한 세정 효율화, 신뢰 세정을 위한 납세서비스 증진, 소득계층 간 공평과세 실현, 국제조세 분야의 역량 강화 등의 과제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세행정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해 현저히 낮아 탈세행위 억제 효과가 미흡하였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고의적 탈세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40%까지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2006년 말 신고업무의 집행여건은 매우 어려웠으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결과적으로는 지역별로 큰 편차 없이 전국 평균 98.2%로 기대 이상의 높은 자진신고율을 기록하여 보유세 정상화의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래의 과제

현재 국세청이 추구하고 있는 과세인프라 구축을 통한 세정 효율화, 신뢰 세정을 위한 납세서비스 증진, 소득계층 간 공평과세 실현, 국제조세 분야의 역량 강화 등의 과제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세행정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에 더하여 향후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 4대 보험 통합 징수 등 복지 분야로 국세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고유 업무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관련 업무의 수행능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소득파악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가지지 못하는 전문성을 확보한 징세기관이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는 기타 비조세기능을 조세징수기능과 함께 수행하는 것은 OECD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다. 4대 사회보험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3개의 보험공단에서 각각 수행함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관리운영상 비효율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아직 우리나라의 국세행정은 납세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끔씩 언론을 통하여 국세공무원이 연루된 비리사건을 접하게 되면 국민들은 국세행정이 어렵게 이룩한 업적들을 한순간에 모두 잊어버리게 된다. 국세행정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에 바탕된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신뢰받기 위하여 국세청은 세무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잘 작동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것도 중요한 미래 과제 중의 하나이다. **KIP**

| 현안분석 |

- 우리나라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및 평가
박노욱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공무원 및 공적부문 임금 결정
원종학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및 평가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npark@kipf.re.kr)

재정 성과관리제도는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여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공공재원 활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목적を 가지고 있다.

I. 서론

재정 성과관리제도는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여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공공재원 활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¹⁾. 우리나라에서는 중앙 예산당국의 4대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공공부문에 확산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²⁾.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부터 일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재정의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재정 성과관리제도가 급속히 확산되어 다양한 공공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도입되고 있다. 시범사업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격세지감이 들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는 성과중심의 예산제도(시범사업 당시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불렀다)의 도입이 과연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예산 편성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하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공공부문에서 당연히 도입해야 하는 제도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6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성과관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됨으로써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1) 이런 목적을 가진 제도를 지칭하는 명칭은 다양하다. 영어로는 Performance budgeting, Performance-based budgeting, Performance-oriented budgeting, Performance-informed budgeting 등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관리 예산제도, 재정 성과관리제도 등으로 지칭되어 왔다.
2) OECD에서는 working party for performance & results 회의가 매년 많은 회원국들의 관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브라질, 칠레, 중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에서 공공부문의 성과를 측정하고 의사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것도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로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전시키기 위한 유인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약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법제화의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례를 국제적으로도 알리는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다른 나라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례를 OECD 고위예산담당국자(Senior budget Official) 회의에서 소개하였고, 최근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례에 대한 소개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사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경험을 나눌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확산되고 정착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시행 3년이 경과되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이 모두 평가되었고, 2008년에는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성과정보의 생산과 평가를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투자와 노력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 성과관리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과연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없는가? 과연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계속될 수 있는 제도인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4대 재정혁신의 하나로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현황을 소개 및 분석하고,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구성된다.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확산되고 정착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II.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우리나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제도는 2003년, 즉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2000년과 2002년 사이에 시범사업을 통하여 이미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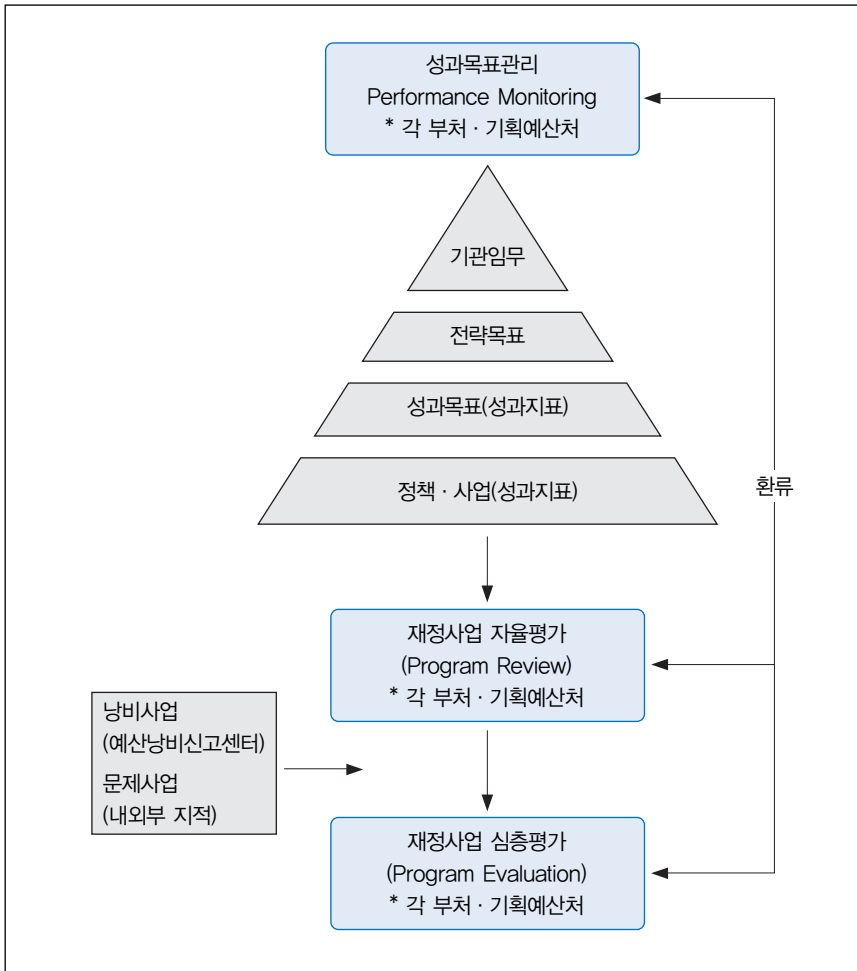
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틀을
구성하고 있다.

진된 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틀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크게 아래의 세 가지 제도가 주요한 틀을 이루고 있다. 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가 그 세 가지 틀이다. 전략 목표-성과목표-단위사업의 체계를 바탕으로 소수의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재정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서술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또는 내외부의 문제 지적이 있는 소수의 선택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심층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보완적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내외부의 지적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특징은 일선 부처에 사전적으로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이나 사업운영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의 성과관리제도를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 1]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현황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5년과 2006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통한 재정사업의 평가 결과의 변화 추이를 보면, “미흡”이라고 판정받은 사업의 비중이 2005년의 15.7%에서 2006년의 11.3%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정받은 사업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효과적” 또는 “다소 효과적”이라고 판정받은 사업의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림 1]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자료: 기획예산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특징은 일선 부처에 사전적으로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이나 사업운영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표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단위: 개, %)

		총 점	효과적	다소효과적	적 절	미 흡
2005 (A)	사업수 (비중)	555 (100.0)	28 (5.0)	100 (17.9)	340 (61.4)	87 (15.7)
2006 (B)	사업수 (비중)	557 (100.0)	30 (5.2)	94 (16.3)	388 (67.24)	65 (11.3)
(B-A)			0.2	-1.7	5.9	-4.4

자료: 기획예산처.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성과정보를 통한 사업의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계획, 성과계획, 집행 및 성과 측면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므로 각 부문별 점수 변화를 <표 2>에서 볼 수 있다. 사업의 총점 평균은 오히려 하락해서 0.2점이 낮아졌으나 큰 변화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사업계획과 성과계획을 포괄하는 계획부문의 경우는 평가대상 사업들의 평균 점수가 2006년에 낮아졌음을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성과계획 부문의 점수가 오히려 하락했음을 볼 수 있다. 성과계획부문에 해당하는 질문이 적절한 성과지표와 성과 목표치의 설정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성과정보 개발의 경험이 일선 부처에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정보의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성과정보의 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재정사업자율평가 부문별 결과

	총 점 (100)	계 획(30)			집 행 (20)	성 과 (50)
		계획부문		성과계획 (15)		
		총점(30)	사업계획 (15)			
2005(A)	60.1	23.1	13.8	9.3	15.1	21.9
2006(B)	59.9	22.9	14.3	8.6	14.7	22.2
(B-A)	-0.2	-0.2	0.5	-0.7	-0.4	0.3

자료: 기획예산처.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성과정보를 통한 사업의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다. 2006년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를 살펴보면, “미흡”이라고 판정받은 사업의 경우 52.8%의 예산이 감소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표 3> 참조). 물론 이러한 예산 감소는 전적으로 평가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업이 2007년에는 종결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종결됨으로써 발생하는 자연 감소분도 포함되어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는 것은 평가결과뿐 아니라 다양한 다른 요인들이 있으므로, 예산편성과 평가결과와의 연계를 보다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행해진 연구(Park, 2006)에 의하면, 부처의 특성, 재정사업의 유형, 그리고 전년도 예산 증가율 등을 고려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평가결과가 일선 부처의 예산요구, 기획예산처의 예산

편성, 그리고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성과평가결과의 활용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과연 이러한 변화가 정부예산 운용의 효율화로 이어졌는지는 엄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적어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점증주의는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이다.

성과관리제도를 통한 예산편성 과정의 합리성 향상은, 주요 예산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표 3〉 2006년 재정사업지출평가 결과와 예산의 연계

(단위 : 개, %)

2006 평가	사업수	2006년예산 (A)	2007년예산 (B)	(B-A)	(B-A)/A
총 계	577	35.1	34.0	-1.1	-3.1
효과적 + 다소효과적	124	4.2	4.4	0.2	5.8
적 절	388	29.7	29.0	-0.7	-2.4
미 흡	65	1.1	0.5	-0.6	-52.8

자료: 기획예산처.

Ⅲ.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지금부터는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자.

재정 성과관리제도가 가져오는 본격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이르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제한된 증거 내에서 그 동안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의 효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의문이 떠오르는 것은, 재정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당연한 대답은 예산편성 과정의 합리성을 높여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효과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질문이다. 예산편성 과정의 합리성 향상이 무엇인지부터가 어려운 질문이다. 성과관리제도를 통한 예산편성 과정의 합리성 향상은, 주요 예산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활용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개념화로서 성과정보의 역할을 “의사결정의 규칙(decision-



성과정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making rule)”과 “예산분석의 도구(analysis tool)”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사결정의 규칙으로서 성과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성과정보에 직접적으로 근거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것이고, 예산분석 도구로서의 성과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성과정보는 예산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지 예산편성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예산분석의 도구로서의 성과정보의 역할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통적인 투입과 산출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사업의 성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성과정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1. 성과정보 활용의 문제점

성과정보를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과정보는 중요한 하나의 정보일 뿐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들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표출되는 국민의 선호, 미래의 국가재정 운영 여건과 운영방향, 그리고 예산사업의 효과성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 성과정보가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성과정보가 가지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사후적인 성과에 대한 정보라는 점이 큰 한계이다. 즉 예산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새로운 재정 수요나 사업 수요를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 방식을 파악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중에서 효과적인 사업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업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성과정보만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활용하기는 어렵다.

둘째, 성과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외국의 경험이나 우리나라의 경험을 보면, 의미 있는 성과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단기간에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예산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의 불명확성과 데이터의 부재 때문에 적절한 성과지표의 선정과 성과평가 방법의 선택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성과관리제도 도입 초기에 의미가 약한 성과정보를 활용해서 예산편성에서의 의사결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

와 안정성에 문제가 흔히 발생한다. 제도 운영 초기에 성과정보의 수준이 낮고 하여 의사결정에 잘 반영되지 않으면, 부처에서 성과정보의 생산에 투자를 할 유인이 약하게 되어 의미 있는 성과정보의 생산이 지연되고 성과관리제도가 뿌리를 내리는 데 더욱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 연출될 위험이 크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성과관리제도가 행정부의 교체 시에 지속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성과정보의 효과적 생산과 활용 간에는 선순환 또는 악순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의미 있는 성과정보는 활용이 잘 될 것이고, 활용이 잘 되면 사업 담당자들이 더욱 의미 있는 성과정보를 생산할 것이다. 반면에 성과정보의 수준이 낮아서 잘 활용되지 않으면 사업담당자의 입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성과정보의 생산에 투자를 지속할 유인이 약화되어 성과정보의 수준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후자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전자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위 의사결정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성과정보의 생산과 개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성과정보의 생산과 활용 사이에 선순환이 형성될 것이다.

셋째, 성과정보의 생산과 해석 과정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평가과정에서 행정부의 가치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제기 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경우는 행정부 중심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해 외부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런 문제 제기 중 중요한 것이 행정부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다. 입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효율성 중심의 성과평가가 행정부의 편향된 가치판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평가과정에서의 가치 개입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심각하게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평가과정을 들여다보면, 행정부 내의 평가과정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정사업 자율평가 설문 문항 중 계획부분에서 사업의 근거, 재정지출의 필요성, 사업방식의 효율성 등에 대한 질문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예”라는 판정을 받고 있다. 2006년 경우에 15점 만점에 평균 14.3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질문들이 사업에 대한 가치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지만, 행정부 내의 평가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의 존재 근거, 사업방식 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문게 하고 있다³⁾. 지금까지는 입법부나 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성과정보의 효과적 생산과 활용 간에는 선순환 또는 악순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3) 물론 기존의 사업이 제대로 근거를 가지지 않은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점수를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던 부분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평가결과의 예산편성에의
반영과 관련하여서 보다
유용한 성과정보에 근거한
예산연계가 필요하다.**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과정보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첫해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미흡”이라고 판정받은 사업의 예산을 10% 삭감해서 예산을 요구할 것을 원칙적으로 명시했으며, 실제 부처도 예산 요구 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였고,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반영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반영의 긍정적인 측면은 부처들이 성과관리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성과정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은 과연 이러한 반영 과정 속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긍정적으로는, 적극적인 유인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처의 입장에서는 성과정보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성과정보의 질적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예산에 활용하다 보니, 실제 사업의 성과정보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관리체계의 개발 여부가 예산에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위험이 있다. 실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 때문에 2008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 개선 T/F에서 평가 결과와 예산의 연계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요약하면, 평가결과의 예산편성에의 반영과 관련하여서 보다 유용한 성과정보에 근거한 예산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흡”이라고 판정받은 사업의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흡”이라고 판정받은 이유는 사업 자체의 수요가 없다든지, 사업 자체의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어 성과가 없다든지, 또는 성과관리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미흡” 판정의 이유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2006년에는 권고사항을 개별 사업별로 도출하여 보다 유용한 성과정보를 생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다 내실 있는 성과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성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관리제도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은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인 반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성과관리제도가 실제 재정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본고의 수준에서 명시적인 대답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의 관행은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평가결과가 나쁜 사업의 예산 변화는 분명히 점

증주의적 관행에서 탈피하고 있으며, 부처 내부에서도 필요한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더욱 어려운 질문은 과연 이러한 점증주의에서의 탈피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금까지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 자체에 대한 논의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예산 당국과 일선부처의 역량 강화와 고위 의사결정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성과관리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출발점은 의미 있는 성과정보의 생산과 고위 의사결정자의 성과정보의 생산과 활용과정에서의 참여이다. 2005년과 2006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보여주듯이 성과정보의 수준은 아직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부터 재정성과관리제도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제도와 성과정보 생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과 정보생산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성과정보의 생산과 활용에 고위 의사결정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실무자와 담당자들이 외부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부처가 제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기보다는 외부의 요구에 맞추는 수준(compliance)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를 일선 부처의 내부 필요를 위해 운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평가단위와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선과 연구가 필요하다. 평가단위의 설정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여러 부처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별 부처 내의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게 되면 정부 전체 차원에서의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목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기존 제도로서는 재정사업 심층평가에서 일부 다부처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층평가 이전의 수준, 즉 모니터링 수준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는 영역을 선정하여 일차적인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부처에서 평가단위가 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도, 의미 있는 평가가 되도록 선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단위사업이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부처마다 평가단위가 일관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이질적인 사업들을 하나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예산 당국과 일선부처의 역량 강화와 고위 의사결정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에
의존하므로, 지속적인 노력과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 성과관리제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의 단위로 선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평가단위의 선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로 관찰되고 있다. 평가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른 사업과 통합해서 보이지 않게 하려는 시도도 있으며, 심지어는 사업 명을 바꾸어서 연속성 있게 모니터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평가단위의 선정에 대해서도 예산당국에서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한 평가체계하에서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정 성과관리제도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부처 평가의 일부로 활용됨에 따라 양 제도 사이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제도는 부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정책, 재정, 조직, 인사를 비롯하여 기존의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하여 부처를 평가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재정의 성과평가는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총량적 재정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각각 가중치를 주어 종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총량적 재정운영 실적은 세출구조조정 실적, 지출한도 준수 여부,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재정집행 실적과 경상경비 절감 실적이 주요한 평가 기준이다. 부처가 재정을 제대로 운영했는지를 총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러한 항목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⁴⁾. 재정사업자율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평가의 목적의 차이 때문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재정 성과관리제도는 부처 자체의 평가 목적이 아니라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 배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부처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이한 목적으로 인해 재정 성과관리제도가 국정평가기본법에 근거한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연계되면서 각 부처의 유인이 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좋은 평가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유인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 성과관리제도 중에서, 성과목표관리제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목적은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위해 효과적인 사업에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사업의 예산은 감소시켜나가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 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각 개별 재정사업을 평가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부처 전체 재정운영의 성적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는 이미 논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4) 예를 들어, 세출구조조정인 경우는 각 부처의 재량적 지출 중 10%를 전년도 예산과 다른 방식으로 배정하여 지출하였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재량적 지출의 적정한 범위가 부처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매년 세출구조조정을 10%씩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의 제정과 더불어 성과관리제도의 지속성이 강화되어 성과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국가재정법은 성과관리제도에 대해 정부 내에 존재하고 있던 회의론 또는 소극적 태도를 감소시키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도, 재정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에 의존하므로, 지속적인 노력과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 성과관리제도를 발전시킨다면, 재정 성과관리제도는 각 부처의 재정지출과 관련한 책무성을 강화시키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PF**

재정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Park, Nowook “Does More Information Improve Budget Allocation? Evidence and Lessons from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 Korea,” Working Paper presented at the 2006 IIPF Conference, Paphos, Cyprus, August 2006.



공무원 및 공적부문 임금 결정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jweon@kipf.re.kr)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보면,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다시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적
연봉제로 구분된다.

I. 서론

2007년 7월부터 건국 이래 최초로 공무원 노동조합과 정부가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처음으로 하는 단체교섭인 만큼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해 350조의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임금 현실화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보수를 공기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¹⁾” 라는 항목은, 근로조건 가운데 임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 하겠다.

위 요구조건은, 공무원 임금의 현실화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공무원의 임금을 공기업 수준에 맞추는 것이 현실화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는 현실화되지 못하였는가,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되어 왔는가 등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상의 질문 가운데 후자, 즉 지금까지의 보수체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왔는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우선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보면, 보수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다시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적 연봉제로 구분된다.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 등이 대상이며,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의 3급 이상 국장급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이 대상이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

1) 공무원 단체교섭 요구서 제85조
2) 공무원 임금의 '현실화'와 관련한 내용은 매우 다양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큰 주제이다. 따라서 본고의 범위에 담기는 무리라고 판단하여 다루지 않았으며, 결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를 지니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급여수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종업원 규모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체의 사무·관리직 임금과의 비교를 통하여³⁾ 공무원의 급여수준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의 급여는 중립적 인사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결정되어 왔으나,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면서 임금결정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임금체계 및 급여결정 방식이 중립적 인사기관이 계속하여 중심이 될 것인가, 아니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향후 급여결정의 중심이 될 것인가를 현재 단계에서 예측하기는 어렵다.

본고는 현재 OECD 주요국의 공무원 임금결정 유형을 통해, 중립적 인사기관형 임금결정과 단체교섭형 임금결정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립적 인사기관이 공무원의 급여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공무원의 임금이 어떻게 여타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그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의 급여는 중립적 인사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결정되어 왔으나,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면서 임금결정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II. 공무원 급여결정 방법의 유형

OECD 주요 국가의 공무원 임금결정 형태로부터, 공무원의 임금결정 유형은 크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가의 여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임금교섭권을 인정하는가와 임금결정 과정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가, 즉 중립적인 기관이 공무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가에 따라 <표 1>과 같이 네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⁴⁾.

<표 1> 공무원 급여결정 방식의 유형

		중립적 인사기관	
		있음	없음
노동기본권	완전보장	중립기관 주도형	직접교섭형
	보장되지 않음	인사기관 주도형	정부주도형

3) 민·관 간 보수 비교방법은 공무원과 민간과의 학력수준과 연령 등 근로자 구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격차지수를 산출하는 'Fisher 방식'에 따르고 있다. Fisher 방식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4) 임금을 포함한 OECD 각 국의 공무원 제도에 관해서는 OECD의 PUMA(Public Management Service)가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 임금결정 방식을 이와 같이 나눈 것은 서처(1995)의 방법을 따른 것임.



공무원 노동조합에
임금교섭권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수준은 민간의
임금결정권과 유사하게
공무원과 정부가 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공무원 노동조합에 임금교섭권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수준은 민간의 임금결정권과 유사하게 공무원과 정부가 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 사용자가 정부이므로 민간의 사용자보다 강력한 교섭력을 지니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혹은 공무원에 임금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약되어 있는 경우 중립적인 인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거나, 정부가 전적으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가. 중립기관 주도형

이 유형은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에 의한 급여결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중립기관의 권고나 조정·중재기관의 재정(裁定)이 교섭내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나, 법제상 혹은 관행상 정부를 구속하는 구조이다.

이 경우 공무원 급여정책은 노동정책을 축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재정정책으로부터의 자율성은 높다. 따라서 재정난을 겪을 때 이외에는 단체교섭의 결과가 존중되어, 안정된 많은 대우가 보장되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력적인 결정 유형이어서 ILO도 동 유형의 급여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 유형의 구체적 사례로는 호주와 네덜란드를 들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노사관계위원회 (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가 조정에 의해 도달한 합의사항에 대해 비준·승인 또는 중재재정을 행하고, 그것이 급여원칙 (wage principles)으로서 정부·조합 쌍방을 법적으로 구속한다⁵⁾. 네덜란드의 경우, 중앙협의위원회에서 급여를 포함한 폭넓은 내용이 협의·결정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종종 중앙협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시되곤 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조합측의 불만을 받아들여 1984년에 자문·중재위원회(Advisory and Arbitration Committee)가 설치되어, 강제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직접교섭형

이 유형은 가능한 한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에 의하지 않고,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직접 단체교섭을 통해 급여를 결정하는 구조로서 민간기업이 단체교섭

5) 호주의 경우 공무원의 쟁의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이다. 공무원 노조와 정부가 직접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직접교섭형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공무원 급여 결정제도로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무원의 경우 사용자가 정부이므로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의 사용자보다는 사용자의 교섭력이 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정난이 심각한 경우 정부가 재정우선을 강조하여 공무원 급여의 억제나 삭감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직접교섭형 국가의 공무원 급여는 공무원 급여로서는 안정성이 없는 편이며 대우가 보장된다는 점에서도 약하다.

즉, 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노동조합측에 대등한 입장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정비된 중앙단체교섭의 제도적 보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열세인 노동조합이 세력 만회를 위한 별다른 수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랑스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단체교섭권이 보장된 현재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급여개정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어 노사교섭 결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형태상으로는 직접교섭형에 속하나 뒤에서 설명할 정부중심형에 매우 근접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 인사기관형

이 유형은 중립적 인사기관이 중립적 입장에서 관민급여 비교 등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제출하는 권고가 급여결정의 중심이 되는 유형이다. 일본의 인사원 권고제도, 캐나다(Advisory Group on Executive Compensation)나 아일랜드의 상급직원에 대한 급여권고제도(Review Body on Higher Remuneration) 등이 이 유형에 속하나, 공무원 급여정책으로서는 소수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중립적인 인사기관의 권고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인사관리 정책을 축으로 한 것으로 재정과는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정당국과 알력도 크며, 정부나 국회가 반드시 받아들이기 쉬운 급여개정이 아닌 경우도 많다. 정부나 여론의 강한 반발로 인해 권고가 무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비상사태가 아닌 한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사기관형은
중립적 인사기관이
중립적 입장에서 관민급여
비교 등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제출하는 권고가
급여결정의 중심이 되는
유형이다.



정부중심형은
공무원의 급여정책이
노동정책이나
인사관리정책이라는
시점보다는
재정정책을 우선하여
실시되는 유형이다.

라. 정부중심형

정부중심형은 중립적 인사기관의 권고 유무에 상관없이, 정부가 급여개정에 강한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유형으로, 공무원의 급여정책이 노동정책이나 인사관리정책이라는 시점보다는 재정정책을 우선하여 실시되는 유형이라 하겠다. 따라서 재정난에 봉착한 많은 나라의 정부가 채택하고자 하는 급여결정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중심형이라고 하더라도, 독일 관리(Beamte)의 경우와 같이 법제 도상은 완전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급여개정을 위한 법률의 제안, 수정 단계에서 노동조합과 협의가 행해지며, 직원·노동자와의 교섭결과도 참고로 하고 있는 등 노동정책이나 인사관리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중심형 급여정책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의 공무원 급여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통령의 대리인(관리예산청 장관, 인사관리청 장관, 노동부 장관)이 급여에 관한 관민비교를 하여, 연방직원급여심의회(직원단체 대표자 5명으로 구성)에 의견을 구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 및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통령은 연방급여자문위원회(정부 외 전문가 3명으로 구성)를 설치하여 상기의 보고 및 권고를 심의하여 권고안을 작성하게 한다. 위의 두 가지 권고안에 근거하여 급여개정이 실시되나, 양 권고안의 내용이 다를 경우는 대통령이 어느 한 쪽을 선택한다.

한편,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또는 공공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상황으로 인해 이상의 통상의 급여개정 절차에 따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독자적 개정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의 개정안은 상·하원 중 어느 한 곳에서 불승인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급여개정이 행해진다.

Ⅲ. 일본 공무원 및 공적부문 임금결정

가. 공무원 임금결정

앞 절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 공무원의 임금은 중립적 인사기관인 인사원(人事院)에서 결정한다. 인사원은 내각 관할에 설치되며, 국가공무원

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중립적인 전문기관으로 인사관 3명으로 조직되는 합의제 기관이다. 인사관은 중의원 및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하며, 인사관 가운데 1명이 인사원을 대표하는 인사원 총재로 임명된다⁶⁾.

인사원의 공무원 임금결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본의 공무원 종류와 수를 살펴보면, 2006년 현재 일본의 총공무원 수는 약 393만 3천명이며, 이 가운데 국가공무원이 약 93만 5천명, 지방공무원이 약 299만 8천명이다. 국가공무원은 일반직(약 63만 3천명)과 특별직⁷⁾(약 30만 2천명)으로 나뉘며, 일반직은 다시 비현업직원(약 30만명), 일본우정공사직원(약 25만 7천명), 특정독립행정법인직원(약 6만 9천명), 검찰관(약 3천명), 국영기업(임야) 직원(약 5천명)으로 구분된다. 이상의 국가 공무원 가운데 인사원의 권고 대상은 비현업직원 약 30만명이다.

일본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2항에 공무원의 급여에 대해 “봉급표는 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인사원이 결정하는 적당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등급 또는 직급별로 명확한 봉급액의 폭을 정해야만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원은 매년 관·민급여 비교를 통해, 민간급여와의 격차를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사원의 급여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먼저 인사원은 민간급여 및 국가공무원의 급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 민간급여실태조사의 대상 기업은 종업원 규모로 파악한 기업 규모가 50인 이상이며 동시에 사업체 규모가 50인 이상인 사업체이다. 2006년 조사 대상은 약 10,200 사업체의 43만명이었으며, 일반행정직 평균연령(40.4세)에서 비교한 민·관 격차는 금액으로 18엔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까지는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을 조사하였으나, 100인 이상일 경우 민간기업의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비난이 많아, 2006년 조사부터 조사대상 기업을 50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공무원 급여는 신규 채용자를 제외한 약 29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급여를 조사한다.

이상과 같이 조사된 임금에 대해 민간과 공무(행정직)의 급여 비교는 일의 종류, 근무 지역, 학력, 연령, 직위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라스파이레스 방식⁸⁾에 의해 비교하여 그 차이를 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비교 방법은 [그림 2]와 같으며, 1999년 이후 인사원 급여 권고 실시 상황은 <표 2>와 같다.

인사원의 급여권고는, 일반직 비현업 국가공무원이 노동기본권의 제약을 받아 스스로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정되는 것으로, 재정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민간과의 격차만을 고려하여 작

일본의 인사원은 매년 관·민급여 비교를 통해, 민간급여와의 격차를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6) 인사원의 중립성을 위해 인사관에 대해서, '인사관 가운데 두 사람이 동일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대학 학부를 졸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7) 특별직 국가공무원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직(내각총리대신, 국회의원 등),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라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직(국무대신, 내각법제국장 등), 국회의 의결 혹은 동意的 필요한 직(인사관, 검사관 등),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내각의 감독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입법부, 사법부 각 부문의 직위(재판관, 재판소직원, 국회직원 등), 직무의 성질상 특별한 취급이 적절한 직(공내청 간부직원, 방위성 직원 등) 등이 포함된다. 이들 특별직 국가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조건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법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8) 라스파이레스 방식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인사원 권고는 대상 공무원 전체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배분 즉, 임금체계의 결정은 각 부처에 따른다.

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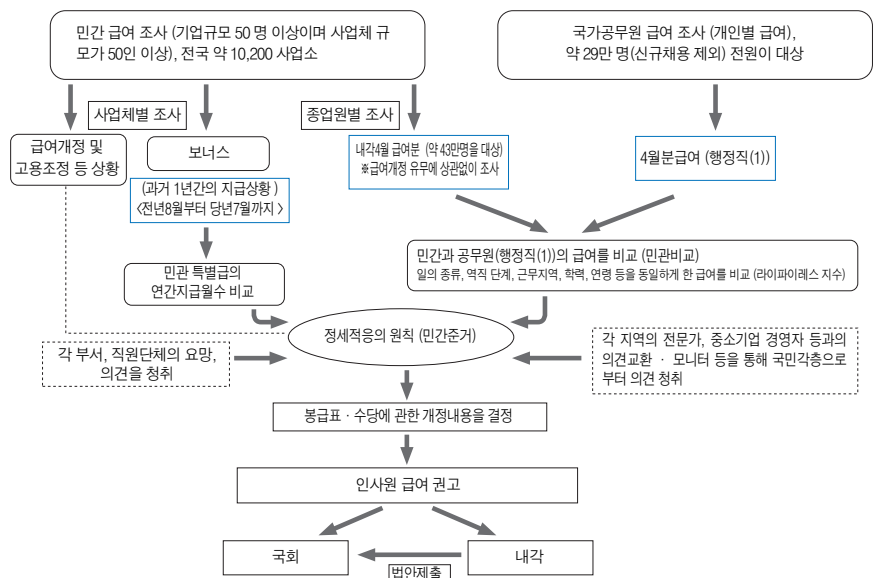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사원 권고는 대상 공무원 전체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배분 즉, 임금체계의 결정은 각 부처에 따른다는 점이다. 즉, 동일 직종 내에서 상하간의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인가, 다른 직종간의 임금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봉과 수당과의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부처가 각 부처의 직원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2〉 최근의 급여 권고 실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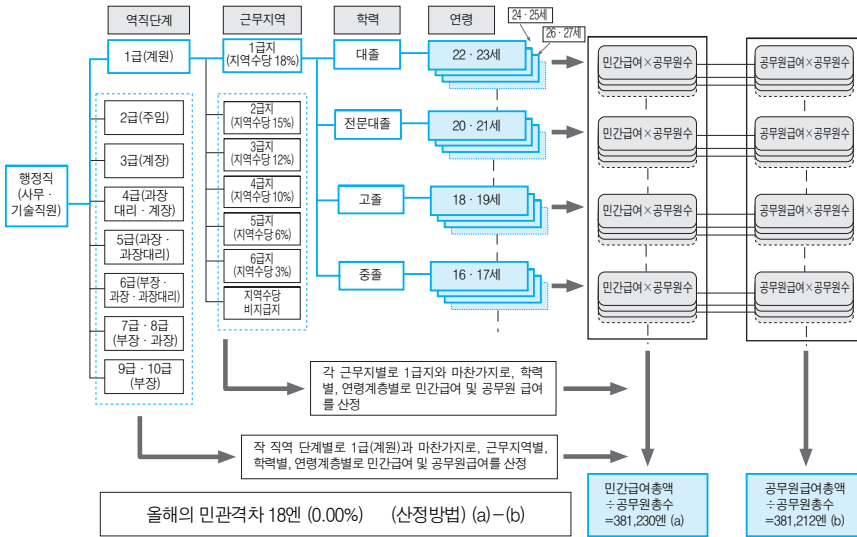
	월례급	특별급 (보너스)		행정직 직원의 평균연간급여	
	권고율	연간지급월수	전년도 대비 증감	증감액	율
1999년	0.28%	4.95월	△0.30월	△9.6	△1.5%
2000년	0.12%	4.75월	△0.20월	△7.0	△1.1%
2001년	0.08%	4.70월	△0.05월	△1.6	△0.2%
2002년	△2.03%	4.65월	△0.05월	△15.2	△2.3%
2003년	△1.07%	4.40월	△0.25월	△16.5	△2.6%
2004년		4.40월	-	-	-
2005년	△0.36%	4.45월	△0.25월	△0.4	△0.1%
2006년		4.45월	-	-	-

참고: 행정직 직원의 평균연간급여 632만 3천엔(2006년)

[그림 1] 공무원 급여 권고 절차



[그림 2] 민간과의 급여 비교 방법



인사원 급여권고의 대상은 비현업 국가공무원에 한정되지만 그 영향력은 비현업 국가공무원에 그치지 않고 지방공무원 급여수준 결정을 비롯하여, 여러 공공부문 근로자에게도 미치고 있다.

나. 공적부문 임금

인사원 급여권고의 대상은 비현업 국가공무원에 한정되지만 그 영향력은 비현업 국가공무원에 그치지 않고 지방공무원 급여수준 결정을 비롯하여, 여러 공공부문 근로자에게도 미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공무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인사원의 급여권고가 교섭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공무원 이외의 공적부문 임금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사원의 급여권고, 즉 공무원의 임금수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독립행정법인

독립행정법인은 각 부처의 행정활동에서 정책의 실시 부문 가운데 일정의 사무·사업을 분리하여 이를 담당할 기구에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여 업무의 질 향상이나 활성화, 효율성 향상, 자율적 경영,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독립행정법인 가운데 업무가 정체될 경우 국민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독립행정법인으로 지



독립행정법인은 기본적으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모든 독립행정법인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임금교섭도 실질적으로
예산의 제약을 받는다.

정하는데, 독립행정법인의 직원 신분이 민간인인 데 반해 특정독립행정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다.

독립행정법인은 기본적으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모든 독립행정
법인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임금교섭도 실질적으로 예산의
제약을 받는다. 독립행정법인의 운영에 관한 각의 결정 사항에 의하면, 독립행
정법인의 총임금 수준은 국가공무원 급여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
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단 예산을 통해 총임금액이 결정되면, 이를 어떻
게 분배할 것인가는 노사간 교섭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립행정법인의 임금은 공무원의 임금수준에 준하도록 권고를 하나, 권고는
해당 독립행정법인의 임금총액에 관한 것이며, 개인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규
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총액하에서 개인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하다.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달리 지불함으로써, 임금 총액이 예산에
의해 규정되고 있어도 임금은 여전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독립행정법인의 임금수준이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독립행정법인의
임금수준보다 높은 경우 예산당국으로부터 임금삭감의 압력(인건비 삭감)이 강
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노사간 임금교섭에서는 임금 총액보다도, 총액이 주어
진 상황하에서 임금의 배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금 총액이 국가공무원 급여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더하여, 각
독립행정법인은 임금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즉, 독립행정법인의 장
및 주무장관은 독립행정법인의 보수 및 퇴직수당과 직원의 급여수준을 국가공
무원과 비교 가능한 형태로 공표하여야 한다. 직원의 급여 공개에 관한 내용은
매년 각의결정을 통해 결정되며, 필자의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임금에
관한 공표가 임금수준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단, 임금수준의 공표는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개인을 특정화할 수 없도
록 각 직위·직급별 임금 수준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해당 직위
혹은 직급에 직원이 1명만 있어 개인을 특정화할 수 있는 경우는 공표하지 않아
도 된다.

독립행정법인의 급여에 관한 공표는 각의 결정 사항으로 구속력이 강하다.
그러나 이를 법률로 정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
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제를 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 단, 공표 및 그 내용에
대해 주무 장관이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표를 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공표를 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 상황에 따라 주무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특수법인

특수법인이란, 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질이 기업적 경영에 적합한 것이며, 이를 통상의 행정기관에 담당하게 하여도 각종 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해 능률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특별법에 의해 독립법인을 설치하고 국가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 감독을 하지만 나머지 면에서는 가능한 한 경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을 인정하여 능률적 경영을 하도록 하는 법인을 가리킨다⁹⁾.

1950년대 중반 이후 많은 특수법인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행정 요구(needs)의 다양화·고도화에 대응하여, 공공사업, 정책금융, 연구개발 등 폭넓은 분야에서 각 부처와의 긴밀한 연계하에 다양한 정책실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특수법인이 설립 당초의 사회적 요구를 대략 달성하였으며,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그 역할이 변질, 저하되거나, 민간사업자가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정부가 관여할 필요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각 방면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특수법인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어, 1997년 당시 163개였던 특수법인이 대폭 정리되어, 정부의 정책실시 기관 이외의 법인으로서 정리되어야 할 공제조합 45개 법인을 제외한 118개 법인 가운데 17개 법인이 폐지되었으며, 45개 법인은 민영화, 38개 법인이 36개의 독립행정법인화하였다.

특수법인의 임금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100% 출자를 한 기관, 예컨대 일본정책투자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임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임명권자의 봉급보다 낮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무차관의 급여 상당액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의 대상 법인은 2005년 현재 90개 법인이었으며, 90개 특수법인 모두가 임명권자의 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자의 대상법인은 2005년 현재 53개 법인으로, 모두 사무차관의 급여 상당액 범위 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특수법인 가운데 이미 폐지·민영화가 결정되어 있는 법인이나, 정부가 임원의 임명권을 지니고 있지 않는 법인의 임금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수법인의 임금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100% 출자를
한 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9) 특수법인의 신설, 목적 변경, 기타 해당 법률이 정하는 제도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심사는 총무성 행정관리국이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인사원 급여 권고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약의
대상으로,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민간과의 비교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있다.

IV. 요약 및 시사점

본고는 공공부문의 임금, 특히 공무원의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누가 어떠한 결정과정을 통해 공무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가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공무원 임금결정을 우리나라와 같이 중립적인 기관이 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공무원의 임금은 중립기관이 독립적으로 설정하는 경우와, 노사교섭을 통해 정하는 경우, 그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둘째, 일본의 인사원 급여 권고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약의 대상으로,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민간과의 비교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있다. 셋째, 일본 인사원의 급여 권고는 공무원 급여결정은 물론이거니와 공적부문 임금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일본의 공적부문 직원 임금은 유사직종의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공표를 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공개는 공적부문 종사자의 임금이 국가공무원의 임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현행 법률상, 철도, 체신 등 기능·고용직(현업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보장해 주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제한된 상태이다. 그리고 1999년 이후 중앙인사위원회가 중견 기업 이상의 민간기업 종사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여 왔다. 일본 인사원만큼 재정과 중립적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으나¹⁰⁾ 우리나라 역시 중립적인 인사기관을 통해 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12월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은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노동조합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2007년 7월 공무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건국 이래 최초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임금결정을 현재와 같이 중립적인 인사기관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단체교섭을 통해 할 것인가? 국가공무원의 임금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공무원의 임금이 공공부문 및 지방공무원의 임금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KIPF**

10) 공무원 보수규정(제3조의 2,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는 재정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Rexed, K. et al., “Governance of Decentralised Pay Setting in Selected OECD Countrie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OECD Publishing, 2007/3.

西村美香, 『日本の公務員給与政策』, 東京大學出版會, 1999.

日本人事行政研究所編, 『平成19年版 國家公務員の給与一與その仕組みと取扱い一』, (財)日本人事行政研究所, 2007.

【부록】 지수

1. (L) 라스파이레스(Laspeyres) 격차지수 =

$$\frac{(\sum \text{공무원의 학력} \cdot \text{연령별보수수준} \times \text{학력} \cdot \text{연령별 공무원수})}{(\sum \text{민간근로자의 학력} \cdot \text{연령별임금수준} \times \text{학력} \cdot \text{연령별 공무원수})} \times 100$$
2. (P) 파쎬(Passe) 격차지수 =

$$\frac{(\sum \text{공무원의 학력} \cdot \text{연령별보수수준} \times \text{학력} \cdot \text{연령별 근로자수})}{(\sum \text{민간근로자의 학력} \cdot \text{연령별임금수준} \times \text{학력} \cdot \text{연령별 근로자수})} \times 100$$
3. 피셔(Fisher) 지수 = $\sqrt{L \cdot P}$

특 집



2007 세계개편(안)

- 2007년 세계개편안의 방향 및 주요내용
김낙회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
- 2007년 세계개편안에 대한 평가(Ⅰ)
이철인 / 성균관대학교 교수
- 2007년 세계개편안에 대한 평가(Ⅱ)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2007 세계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정책담당자의 2007년 세계개편안의 방향 및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들로부터 들어 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2007년 세계개편안의 방향 및 주요내용



김낙희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

I. 2007년 세계개편안의 특징

금년도 세계개편안은 어느 해보다 폭넓은 시장 수요조사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다양한 T/F 운영과 공청회 개최 등 활발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역대 어느 세계개편보다도 국민과 함께 하는 '납세자 중심의 세계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파트너십 과세제도 T/F 등 전문가 T/F 회의 18회, 공청회 4회, 현장방문 등 많은 수요조사와 업계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최근 정부가 바뀐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세계개편 사례도 꼼꼼히 조사하였다.

아울러 수출호조와 내수확대 등 개선된 경제상황이 전체 계층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면서 일부 중산·서민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이 있어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300만명의 봉급생활자와 400만명의 자영업자, 27만 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II. 2007년 세계개편 여건 및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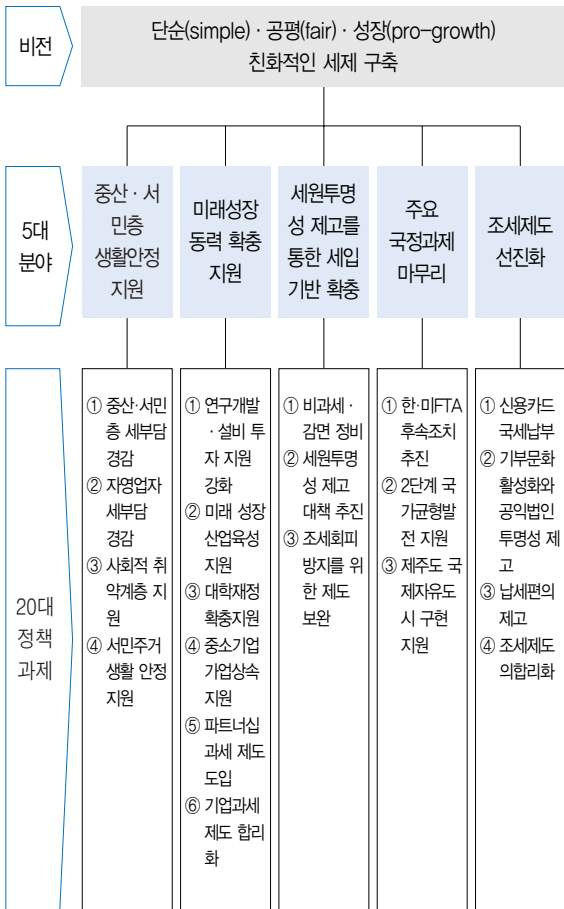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되는 등 각종 경기지표 측면에서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나 수출주도의 경기특성상 중산·서민층의 체감경기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현재 세입여건 측면에서는 경기회복,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등으로 세수가 호조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산·서민층 지원, 기업의 R&D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미 FTA 후속조치, 2단계 균형발전, 기업환경 개선·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등 하반기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각 과제에 포함된 세제지원 방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금년에는 「단순(simple)·공평(fair)·성장친화적(pro-growth)인 세제」라는 비전하에 5대 분야 20대 중점과제를 세계개편 과제에 포함시켰다. 5대 분야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지원, 미래성장동력 확

충지원,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 조세제도의 선진화이다. 본고에서는 주요한 과제만을 설명하겠다.

2007년도 세계개편(안)의 비전과 과제



Ⅲ. 세계개편의 세수효과

금년 세계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2008~2013년 기간중 총 △3.5조원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에 △1.6조원, 2009년에 △1.8조원, 2010년

~2013년 기간에 △0.1조원의 세금감면이 예상된다. 3.5조원의 세부담 경감액의 80%에 해당하는 2.8조원이 봉급생활자, 자영사업자, 농·어민,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게 된다.

2007년 세계개편효과와 귀착

(단위: 억원, %)

구 분	세수증	세수감	합 계	
1. 중산서민층	460	△28,890	△28,430	80.1
- 근로자	20	△10,580	△10,560	29.8
- 자영자	440	△9,290	△8,850	24.9
- 농어민 등	0	△4,430	△4,430	12.5
- 중소기업	0	△4,590	△4,590	12.9
2. 대기업	2,610	△3,740	△1,130	3.2
3. 기타*	2,850	△8,770	△5,920	16.7
합 계	5,920	△41,400	△35,480	100.0

* 기타: 이자·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세부담 귀착이 명확하지 않은 세목

Ⅳ. 2007년 세계개편(안) 주요 내용

1.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가.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

우선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을 아래 표와 같이 조정하였다. (소득법§55)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주: 근로소득자 과세표준 =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자영자의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중 일부 (기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등)

과표구간을 조정함에 있어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적용하여 낮은 소득구간은 20%, 중간소득 구간 15%, 높은 소득구간은 10% 높여 세부담 경감액과 경감비율에 있어 낮은 소득계층에게 많고 높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인한 세금경감규모는 1조 1천억원 수준이며 과표구간 1천만~4천만원 계층에게 경감액의 52%에 달하는 5,900억원, 4천만~8천만원 계층에게 26%인 2,900억원, 8천만원 초과 계층에게 22%인 2,400억원을 경감하는 혜택이 있다.

과세표준별 경감혜택 귀착

(단위: 억원)

총계	1~4천만원	4~8천만원	8천만원 초과
△11,300 (100%)	△5,920 (52%)	△2,938 (26%)	△2,442 (22%)

과세표준 구간별 경감률

(단위: 만원, %)

과세 표준	산출세액 (개정전 a)	산출세액 (개정후 b)	경감액 (a-b)	경감률 (a-b)/a
1,500	165	147	△18	△10.9
2,000	250	232	△18	△7.2
3,000	420	402	△18	△4.3
4,000	590	572	△18	△3.1
5,000	850	778	△72	△8.5
6,000	1,110	1,038	△72	△6.5
7,000	1,370	1,298	△72	△5.3
8,000	1,630	1,558	△72	△4.4
9,000	1,980	1,836	△144	△7.3
10,000	2,330	2,186	△144	△6.2
30,000	9,330	9,186	△144	△1.5

나.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현행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는 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나,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공제대

상 교육비에 추가하였다.

다.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자녀출산 당해연도에 출산비용 및 산후조리비용, 자녀양육 준비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는 점, 국내입양이 해외입양보다 적은 수준으로 국내입양가정에 대해 세제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하는 출산·입양공제제도를 마련하였다.

라. 성실자영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공제 허용

지금까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에는 소득공제에 있어 다소간의 불형평이 있어 왔다. 예컨대 근로자는 인적공제 외에 근로소득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다양한 특별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인적공제 외에 여타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구조이다.

현행 사업자와 근로자의 소득공제제도 비교

공제 항목	근로 소득 공제	인적 공제	표준 공제	연금보험료·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보험료, 신용카드, 혼인·이사·장례비
근로자	○	○	100만원	○	○	○
사업자	×	○	60만원	○	○	×

주: 성실사업자의 경우 표준공제 100만원

그러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등 정부의 지속적인 과표양성화 추진에 따라 최근 수년간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이 대폭 제고되었고 일부 성실 사업자의 과표는 거의 노출된 점을 감안

할 때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결과(2007년 6월) 자진납부세액이 3조원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의 소득공제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사업자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원투명성이 확보되는 성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부 특별공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성실 자영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을 통해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금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조특법§122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사업자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POS·ERP 도입사업자 등 ②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③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 실제 사용 ④ 전년 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⑤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⑥ 최근 3년간 조세법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다만, 이태 요건 발생시 추징하고 향후 3 과세기간 동안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과세기간에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20% 이상 - 당해 과세기간에 과다계상한 경비가 전체 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마.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였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험료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바. 등유 특별소비세율 인하

200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수송용 유류 간 상대가격비 조정을 위한 1·2차 에너지세제개편작업이 금년 7월에 마무리되었다. 이에 이어서 금년에는 등유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난방용 유류(등유/LNG) 간 불형평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등유 특별소비세율 인하 (특소세법§124, 영§2의2)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유 특별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유 : 181원/ℓ (탄력세율 : 134원/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유 특소세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 유 : 90원/ℓ

2.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가.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현재 대기업은 민간기업 R&D투자의 78.9% (14.6조원, 200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 전체 R&D투자(24.1조원)의 60.6%를 담당하고 있다. 대기업의 R&D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의 R&D투자 및 중소기업, 대학 등 기타 연구개발 주체의 R&D투자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기업의 R&D투자 촉진

을 위해 증가분 세액공제방식(당해연도 R&D지출액-직전4년 평균지출액×40%)과 당기분방식[지출한 R&D비용×(3%+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당기분방식의 공제율은 당기 R&D비용의 6%를 최고한도로 하여, 기본 3%에 더하여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중을 고려한 기업의 R&D 노력(+α)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벤처, 제약회사 등 R&D지출 비율이 높은 업종이나 기업에게 더 큰 혜택이 되도록 하였다.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10)

현 행	개 정 안
□ 대기업 ○ 증가분방식만 허용 ① 증가분방식 공제((ㄱ)+(ㄴ)) (ㄱ) 자체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 : (당해연도 R&D 지출액 - 직전 4년평균 R&D 지출액)×40% (ㄴ) 대학·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인력 개발비 : (당해연도 중소기업등에 위탁한 R&D비용 - 직전 4년평균 중소기업 등에 R&D위탁비용)×50%	□ 대기업 ○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중 선택 허용(Max ①, ②) ① 증가분 방식((ㄱ)+(ㄴ)) (ㄱ) 현행과 같음 (ㄴ) 현행과 같음 ② 당기분 방식 당해연도 R&D지출액×(3%+ α) * α: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0.5 (3% 한도) * 금년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율이 직전년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선택 허용

나. 개성공업지구에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앞으로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제제조업으로 판정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왔으나,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의제제조업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개성공업지구에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조특영§23, 조특규칙§2)

현 행	개 정 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 ※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 의제제조업으로 판정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 의제제조업: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 의제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

다. 금융산업·물류산업 지원

금융산업과 물류산업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 산업의 기조인프라라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산업임을 고려하여 국제

기준에 맞추어 금융허브 추진 등 금융산업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일부 세제를 정비하고 FEDEX, DHL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물류전문회사 육성을 목표로 자가·2차 물류의 제3자물류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가에서 제3자물류기업으로 위탁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일정한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라. 해외자원개발 지원

고유가의 지속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바이오 디젤 등 대체에너지산업의 육성과 해외자원 자주개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자원의 자주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발·생산 광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해외자원개발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자원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금번 세계개편안에 반영하였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104의1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지분투자 포함)시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국고보조금의 해외자원개발투자자 과세이연 (조특법§104의14)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 해외 자원개발의 경우 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허용

마.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창의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재원조달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세계개편안에서는 사립대학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두 가지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고 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였다.

먼저 사립대학이 대학설립운용규정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자산 중 수익률이 낮은 임야 등의 토지를 건물 등 고수익용 자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저수익용 자산 양도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즉시 과세하지 않고 3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이 대학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 재정확충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104의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학이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보유중인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1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 과세이연금액: ①×② ①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이월결손금 ② 신규자산 취득가액 / 기존자산 양도가액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함) ※ 일몰기한: 2010. 12. 31
〈신 설〉	□ 대학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이 수익을 대학에 출연하는 경우 전액 손금 산입 ※ 일몰기한: 2010. 12. 31

이외에도 대학의 민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이 BTO방식으로 기부채납받은 학교시설을 이용

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민자사업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추가 및 일몰 연장 (조특법§106)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O방식으로 기부채납받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추 가) ○ 일몰기한 : 2007. 12. 31 계약분 까지	□ 감면대상 추가 및 일몰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민자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 ○ 일몰기한 연장(2010. 12. 31)

바.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창업자의 사망으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경영 노하우의 전수 등 국민경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상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미국·독일 등 선진국 사례, 중소기업 실태 등을 감안하여 지원제도를 다양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첫째,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전제로 현행 1억원의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 1억원 ○ 사후관리(5년) : 상속세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처분재산가액 비율 상당액 추징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액 추징 (신 설)	○ 가업상속공제 한도확대 : Max(2억원 or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20%(30억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강화(10년) : 전액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용자산 10% 이상 처분 - (좌 동) - 상속인의 지분을 유지 - 종업원 수 10% 이상 감소

둘째, 실용성 있는 연부연납제도 운용을 위해 승계받은 기업의 경영을 통해 번 소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거치기간을 신설하고 납세자의 신청대로 연부연납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연부연납 신청기준금액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원 → 2천만원
□ 연부연납 기간(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경우 : 3년 * 납부기한내 1/4납부 후 매년 1/4씩 3년간 분할납부 ○ 가업상속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 : 15년 - 기타의 경우 : 5년 ⇒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형편을 감안 연부연납기간 결정	□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거치기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으로 연장 ○ 가업상속의 경우 거치기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거치후 최대 12년간 분납 - 2년 거치후 최대 5년간 분납 ⇒ 납세자의 신청대로 연부연납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매회 1천만원 이상 납부요건 신설

마지막으로, 현재 사전상속의 경우 창업자금(30억원 한도)에 대해서만 특례를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을 사전증여하는 경우에도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시 정산하는 특례를 허용할 것이다.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상속 특례제도 (2007. 12. 31 일몰) ○ 대상 :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 ○ 특례 : 5억원 공제후 10% 세율로 증여세 부과 후 상속시 정산 ○ 한도 : 3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상속 특례제도 일몰연장 (2010. 12. 31까지 3년 연장) ○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 18세 이상 - 부모 : 60세 이상 ○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도 특례적용* * 기업상속요건(단, 사업영위기간은 10년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주식을 증여받고 수증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적용 ○ (좌동) ○ (좌동)

사.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금번 세계개편안에서는 전문인력 중심의 소규모 인적회사에 적합한 과세체계 마련을 위해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개인 또는 법인이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 사업형태에 관계없이 조세부담이 동일하도록 과세상 취급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기술·자본의 용이한 결합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개개인이 각각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과세하는데 파트너십 자체는 도관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 단

계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조특법§100의14)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회사 성격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선택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명회사·합자회사 - 유한회사 중 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등 □ 과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단계에서 파트너의 소득으로 과세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통해 인적회사 성격의 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기업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우선 공동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공동광고선전비의 배분기준을 규정한 취지는 법인 간 자의적인 비용 분담에 의해 과세소득을 조절하거나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 간에는 공동광고의 사례나 공동광고를 통한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 간의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해 적용을 배제(법인간 약정에 따른 배분 인정)하여 법인의 자율적인 회계처리를 인정하였다.

아울러 법무법인·관세사법인의 유한회사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서비

(단위: 개)

스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법인·관세사법인 등의 조직변경시 세부담을 해소하였다. 즉, 의제배당 비과세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법무법인(합명)이 법무법인(유한)으로, 관세사법인(합명)이 관세사법인(유한)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구분	대 상	연장	축소	폐지
조특법	18(2.7조원)	7	3	8
관세법	4(0.14조원)	1	1	2
합 계	22(2.84조원)	8	4	10

주: ()안은 감면액

3.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가. 비과세·감면 정비

정부는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지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비과세·감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비과세·감면 정비에 있어 외국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경우,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등 존속 실효성이 낮아진 경우는 폐지·축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서도 성장동력 확충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일몰을 연장하기도 한다.

금년에 일몰도래되는 비과세 감면제도 22개 가운데 10개를 폐지(일몰 종료)하고, 4개는 축소, 8개는 연장할 것이다. 이 중 농어업용유류세 면제(1.6조원)는 2012년까지 5년간 연장조치하였으며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 17개 제도를 검토한바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정책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존속 실효성이 미약한 8개를 폐지(일몰종료)하고, 국산화율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 등 3개를 축소,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경우 등 6개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현금영수증제도는 세원포착이 어려운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입 이후 사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세제개편을 통해 현금영수증제도를 통한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5천원인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액을 폐지할 계획이다.

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 및 일몰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9월 도입 이래 세원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고, 현재도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세제지원제도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2009. 12. 31일까지 일몰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이 비교적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저사용금액기준을 총급여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되, 최저사용금액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최저사용금액 기준 이상으로 사용한 납세자에 대하여 종전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하였다.

라.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장할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현행 산출세액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키로 하였다.

마. 귀금속산업 세원투명성 제고

금지금(金地金)과 관련하여 일부 매출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 공급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부가세를 국고에 납부하는 방식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조특법§106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지금 및 금제품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금 전용계좌」를 통해 국고에 납부
〈신 설〉	□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른 매출자의 소득세·법인세 경감 ○ 직전 대비 증가분의 50%, 당기 이용분의 5% 세액공제 중 선택

아울러 금지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지금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금지금 거래내역 제출 (조특법§106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지금 제련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
〈신 설〉	□ 세관장은 금지금 수입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월 1회)

바.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농·어업용 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특소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1972년(농업:1986년)부터 도입하여 운영중이다. 그러나 일부 관리·감독 소홀과 납세

의식 결여 등으로 면세유 부정유통 사례가 빈발하므로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전면 확대실시하고 부정유통시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제재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4. 주요 국정과제 추진 지원

가. 한·미 FTA 후속조치 추진

한·미 FTA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 특별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통관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조정 (특소법§123)

현 행	개 정 안
□ 승용자동차 특소세율 ○ 2,000cc초과 : 10% ○ 2,000cc이하 : 5%	○ 2,000cc초과 : 5% (발효시 8%, 3년간 매년 1%p씩 인하)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 도입 (관세법§235)

현 행	개 정 안
□ 저작권에 대해서는 상표권과 달리 통관보류요청만 가능 ※ 상표권에만 적용되는 보호조치 ① 수출입금지, ② 세관신고제도, ③ 침해물품 수출입사실통보, ④ 직권통관보류	□ 저작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상표권과 동일하게 개선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불허 (관세법§235)

현 행	개 정 안
□ 통관보류된 지적권 침해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자가 담보 제공 후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통관 가능	□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아래의 경우는 통관 불가 ○ 위조 또는 유사상표 부착 물품 ○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물품

아울러 한·미 FTA 체결로 지원이 필요한 무역 조정기업·농업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서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 사업전환일부터 4년간 50%의 세액을 감면해 주고,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전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은 3년거치 3년분할로 익금으로 인정하며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지임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세율이 인하(60% → 9~36%)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지난 7월 25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의 후속조치로 금번 세제개편안에 세제지원내용을 포함하였다. 개편 내용은 기업과 사람에 초점을 두면서 이들의 지방이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였다.

첫째, 전국을 발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은 지역별로 법인세·소득세를 70, 50, 30% 감면하고, 대기업은 이전에 대해서는 15년간, 창업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수도권에 있는 구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셋째, 지방이전 목적으로

지방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복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다. 그 외에도 지방대학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특례적용대상 농어촌 주택 가격 상향 조정 등의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현 지원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로의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제주도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조특법§121의8)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 수도권 4등급지역 소재 대기업의 제주도 이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간 70%, 그후 5년간 35% 감면적용 ○ 대기업이 제주도에 사업장 신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간 70%, 그후 3년간 35% 감면적용 ○ 일몰: '12. 12. 31

아울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성하고 면세점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면세점의 연간 이용횟수를 늘리고 주류구매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간 이용횟수) 4회 → 6회, (주류구매한도) 1병 12만원 → 1병 40만원)

5. 조세제도의 선진화

가.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신용카드가 주요 결제수단으로 정착되고, 2000년 이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국세도 신용카드 납부 허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제도 도입 필요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납세자의 세금납부 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일시적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는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체납시 부담하는 (중)가산금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금번 세제개편에서는 납세자의 세금납부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일시적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는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체납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인적사항,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고 납부세액을 결제할 수 있다. 국세납부 대행기관은 국세청 홈택스·카드사·한국은행과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국세 수납 및 결제 매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대행기관은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로부터 납부서비스 제공 수수료를 수령하게 된다. 대행기관은 자금조달 비용, 연체·대손비용에 해당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한다.

나.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방향은 기부활동이 일반 생활속에 문화화·생활화된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법인기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은 준조세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기부를 중심으로 유인제도를 마련하며 기부방법, 활동의 다양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에 기부받는 단체의 투명성 부족도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하도록 하였다.

우선 개인 기부행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

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현행 10% → (2008) 15% → (2010) 20%)하고 본인 이외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방법에 의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수익을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펀드 및 개인이 사망하는 경우 공익신탁기금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생전에 가입한 신탁상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 및 박물관·미술관에 자연보존재산·문화유산 및 미술품 등을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도록 하였다.

투명성을 갖춘 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전용계좌 개설, 결산서 등 공시제도 이행, 외부감사 제도 도입 등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에 한해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 제한을 완화(동일기업 주식·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 20% 이내, 계열기업 주식:총자산가액의 30% → 50%)하였다.

이러한 기부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공익법인의 금융기관을 통한 고유목적사업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국세청에 신고된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기부금 수입·지출명세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도록 하며,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제도의 적용대상(자산총액 3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및 주기를 단축(매2년 → 1년)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하고, 자산총액 3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 세금신고·납부 등 절차 간소화

송달지연시 납부기한을 연장요건을 최소한 14일 보장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등 현행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9종에 주택자금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을 2종을 추가하였다.

라. 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

납세자가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이다. 금년에 개정하는 11개 세법 및 시행령 중 총 326개 조문에 대해 어려운 용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쉬운 우리 말로 고쳐 쓰고, 복잡한 문장 체계 정리 등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마.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채납자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과 질병·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우체국 보험금 및 환급금, 생명보험 등 소액 보장성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단인 점을 감안하여 채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추가하였다.

바. 재산과세제도의 합리화

재산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장기보유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재 보유기간 구간별로 계단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매년 3%씩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 (현행) 3~5년 보유 10%, 5~10년 보유 15%, 10년 이상 30%, 15년 이상 1세대주택 45%

(개정) 3~15년 보유시 매년 3%씩 공제(예:9년 보유 27%)

한편 양성평등 세제 구현을 위해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사. 비거주연예인(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현행 제도상으로는 외국연예법인이 연예인 등에게 대가 지급시 당해법인이 20% 원천징수해야 하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해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였다. 이를 개정하여 비과세 외국연예·체육법인에게 연예인, 체육인의 제공대가 지급시 조세조약상 비과세규정에 불구하고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특별소비세법 명칭 변경

특별소비세는 1977년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및 사치성물품의 소비억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소득수준 향상, 소비행태의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과세대상을 축소해 왔다.

* '99년 폐지 : 식음료제품, TV 등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21개 품목

* '04년 폐지 : 에어컨, 골프용품, 프로젝션·PDP TV 등 12개 품목

경제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특소세의 과세목적이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보다는 자동차, 유류, 과세(유형)장소 등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 등에 대한 교정세적 기능으로 운영(유류, 자동차 등 외부불경제 품목 비중이 99.2%로 대부분 차지)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세목의 명칭도 개별소비세로 변경하여 과세 명칭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완화하고자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이므로 일반소비세와 구분되는 개별소비세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특소세 명칭 변경에 맞추어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특소세 과세범위를 종합 검토하여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IV. 향후 추진일정

금번 세제개편안은 8월 22일 세제발전심의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계·학계·언론계·전문가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향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하순경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국회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다. 끝으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KIPF**

2007년 세계개편안에 대한 평가(I)



이철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I. 세계개편안의 주요 내용

먼저 2007년 세계개편안 중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이번 개편안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산·서민층,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범위를 확대하며, 출산·입양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사항은 1996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소득세 과표구간이 11년 만에 조정되는 것인데, 내년부터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상향조정됨으로써 세부담의 전반적 경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상 소득세제는 4개의 과표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다단계 누진세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저 세율 8%가 적용되는 구간은 현재 1,000만원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세율 17%가 적용되는 구간은 올해 1,000만~4,000만원에서 내년 1,200만~4,600만원으로 바뀌고, 2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올해 4,000만~8,000만원에서 내년

4,600만~8,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고 세율 35%가 적용되는 구간은 현재 8,000만원 초과분에서 8,800만원 초과분으로 개편된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연급여 4,000만~6,000만원의 4인가구는 각종 공제를 감안하였을 시에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줄어들고, 7,000만원인 가구는 42만원, 8,000만~1억원 가구는 72만원 감소하게 되고 연급여 1억 5천만원 이상 가구는 최고 144만원까지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득세 부담에는 10%의 주민세가 더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액은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둘째, 한·미 FTA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자동차 특별소비세제를 개편하고,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확대 및 지방이전 기업 근로자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연장하며,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구현을 위해 법인·소득세 감면을 실시하는 등의 국정 현안과제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조세개편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항목

을 줄여나가는 작업과 함께, 영세·성실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면서 몇 가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였다.

넷째, 조세제도의 선진화 취지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소비지출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계속 해서 유지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도 추진 하며, 동시에 민간에 의한 자발적 공공재 확충의 취 지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부동산관련 세제에서 과거에 도입한 바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다시 추진하여 재산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섯째, 미래성장동력 확충지원이다.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지원을 늘리고 미래성장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늘리며, 대학의 재정확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업상속을 지원하고,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기업활동 관련 부분적 개편이 포함되어 있다.

II. 평가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 들어 네 번째 마련된 개편안으로서 시기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을 반년 정도 남긴 시점에서 추진하는 개편에 해당한다. 개편의 항목 수가 130개 가량이 될 정도로 큰 규모이고 감세의 폭도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분배기능의 확대에 수반되는 재정지출 증가를 뒷받침할 만한 세수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증세기조에서 벗어나는 개편에 해당하는바, 시각에 따라 찬반이 엇갈릴 수

도 있다고 본다. 즉, 그 동안의 세부담 증가를 통한 재분배정책기조와 일치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사회지출을 선호하는 시각을 가진 이들에서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개편안이겠지만, 반대로 최근의 조세부담 인상의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 이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환영할 만한 개편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이한 가치체계에 기초한 시각차와 무관하게, 과연 보다 가치중립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및 미래까지 고려한 최적의 조세제도가 무엇인가에 관한 시각에서 본 개편안을 조명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먼저 과연 본 개편안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재정정책의 속성상 다양한 경제활동 간의 인센티브 체계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재정지출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면서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예: 적정 소득분배) 등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가. 정책효과가 보다 가시화될 수 있는 조세제도 정립 필요

첫째, 사회후생 증진을 위한 세제개편을 시도하고 있는데, 향후 의도한 정책효과가 보다 가시화될 수 있는 조세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서민, 중산층을 위주로 하는 감세정책이 적어도 일시적으로만 시도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대로 세수여건이 호전되어 향후 재정적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분명 저소득층의 후생을 증진시켜주는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게끔 하는 필요한 개편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과세표준 구간의 소폭 조정으로써 근로를 하지 않던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이 근로 행위에 참가할 만큼 큰 것이라고 과장해서는 곤란하지만, 적어도 잘 정립된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에다가 합리적인 누진도를 지닌 과세구간의 적절한 조합은 분명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활동 참가와 비참가의 한계선상에 있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각종 지출정책이 집중되고 있는바, 이들 계층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단, 한 가지 의문점은 세계개편안에서 표방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세율구간 조정이나 각종 소득공제 개편으로 서민층의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 서민들에게 더 줄여줄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비록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부가가치세, 특소세, 그리고 유류세 등 간접세는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에 각종 부담금까지 합하면 서민들의 부담은 상당하다.

그런데 이번 세계개편안의 130개 항목 안에는 이들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조치는 표방된 것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서민들의 조세경감이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항상 좋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체계가 구조상 소득세제를 통해 세부담에서의 세밀한 누진성을 추구할 만큼 잘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도한 세부담 경감효과가 서민·중산층에 귀속되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향후 비근로·근로 그리고 근로시간 및 소득수준별로 근로인센티브 및 후생증가

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세계개편안이 도출되도록 하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물가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에 대한 체계적 보완책 필요

둘째, 첫 번째 논점과 관련하여 소득세 경감에 앞서 물가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보였다. 점에서 그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지난 11년 동안 유지했던 세율구간에 대해 이제라도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세부담을 조정하려는 노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보자면,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비과세되는 구조에다가 지난 10년간 소득증가율보다 세금증가율이 2배에 달할 정도로 방치해둠으로써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소득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소득점 이상에서부터 급속히 증가하는 세제가 되었다. 이러한 세제는 결국 비효율적 경제활동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납세 경험에 따라 자연스럽게 납세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형성할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며 대신 타인 또는 상위층 소득자의 탈세행위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납세문화를 만들 소지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의 한 극단으로서 일부 후진적 남미국가들의 경우, 대규모의 재정적자 누적에 의한 국가채무 문제를 인플레이션을 이용하여 채무의 실질가치를 낮추는 방식(즉, 소위 “인플레이션 조세”)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는데, 채권의 소유자가 고소득층이므로 이러한 정책이 비록 재분배에 일부 기여할지라도 윤리적으로 결코 정당화할 수 없으며 동시에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는 사회구성원 일부가

아닌 모두의 납세의무에 대해 언급할 시기가 온 것 같다.

차제에 보다 본격적으로 세율구간 조정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마도 이번 세율구간 조정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므로,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이 왜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과표구간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실 물가상승 이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려면 '물가연동 소득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물가상승만큼 매년 세율구간과 각종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해주는 물가연동 소득세를 도입하면 명목적 가치체계를 실질적 가치체계에 보다 근접시킬 수 있게 된다. 물가연동 소득세는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선진국이 오래 전에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국내에서도 소수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고 있으므로 향후 조세제도의 선진화 과제로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계개편 접근 필요

셋째, 세계개편에 대한 시각을 이제는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면 한다. 우리 경제가 거의 선진국에 진입할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안정적 장기균형상태(long-run steady state)에 도달하지 못하여 거시경제 변수들 간에 안정적 관계가 차츰 흐트러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개입 및 조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때 시점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방향과 정책기조를 바꾸는 조세개혁안을 매년 제시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제활동을 미래보다는 지나치게 현재에 편향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분배를 강조하든, 또는 성장을 우선시하든 간에 사회후생을 제고하는 데 있어 법제화된 방식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조세제도이다. 그런데, 현행 조세개편방식은 기본방향에서 그 의의가 있을지라도 제도로서 보자면 아직도 엄밀성과 체계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고 다소 거칠거나 즉흥적인 감이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조정 의 경우 조정의 이유가 보다 명확한 방식으로 실질 세부담을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물가연동제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아마도 금번 조정의 보다 근본적 이유는 세계개편안에 따르면 “중산·서민층,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으로서, 단순히 감세정책으로 추진된 것이라기보다는 지출정책을 통한 분배에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통하여 중산·서민층,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표구간이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 같다.

이처럼 명분과 실질 간의 괴리가 발생하다보면, 쉽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이를 교정하기 위해 후속 개편안이 등장하는 것이 정례화되어 마치 금융정책이 미세조정을 하듯이 조세제도 또한 자주 개편을 하게 되는데,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들의 후생, 행위의 변화는 적어도 과거와 같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는 상황하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는, 사회·경제적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인 과도한 자영업 종사인구, 그리

고 쉽게 증가하지 못하는 고용 및 취업자 수, 여기에서 파생된 서비스부문의 낮은 생산성 및 이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 저하, 공공부문의 고임금 실태에 따른 민간부문의 고급인력난 해소,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를 통한 고용창출, 금융부분의 경쟁력 제고 등을 이뤄낼 만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와 부합하는 조세개편으로서 한시적으로 이들 부문에 대해 과감히 실시하는 조세감면 정책 등을 순차적으로 개별 연도 세계개편안에서 추진한다면 충분히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이러한 근본적 문제들을 계속 도외시하고 차선책으로서 매년 세계개편을 단행하는 것은, 달리 보자면 기존의 정책이 급조되었거나 중심적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천명하는 셈이 된다. 이제, 4대사회보험제도 및 공적부조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도 상당히 진전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EITC를 포함한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한 재분배의 틀도 거의 갖추어가고 있다. 이제 소득재분배 기능의 한 축을 사회안전망 제도에 의해 해결함에 따라, 어찌 보면 과거와 비교하여 경제이론과 우리나라 실태를 고려하여 조세정책을 실시하기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는 선진국들에서 1980년대 이후 경험하고 있는 “근본적 조세개혁(fundamental tax reform)”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정책입안자 및 재정학자들은 현재의 차선의 정책과 이를 보완하는 부분개혁(piecemeal reform)과 함께 이제는 보다 근본적 개혁에 대한 자세한 청사진을 준비해 놓아야 하고 이의 시행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단순히 선진국들에서 실시된 누진도의 조정 및 세원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 비효

율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예컨대 과도한 자영업 인구의 완화,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 자본축적을 보다 장려하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추세와 부합하는 조세제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조세제도를 형평성 위주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보다는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미세조정이 마치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전체 경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이로부터 굵직한 왜곡 및 비효율성을 찾아내고 이에 따라 개선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본다.

라. 조세행정 기능 강화에 집중

넷째, 유사한 맥락에서 조세행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조세감면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과도하게 고착화되는 감이 없지 않다. 정부가 성실하게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달리 보자면 이는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를 경감시켜줄 정도로 포상해주는 것이 한시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한번쯤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표가 보다 투명한 업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가산세 및 세무조사의 강화도 함께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후자를 중심으로 세무행정을 운영하는 청사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 재정지출 측면 감안한 세밀한 조세정책 필요

다섯째, 조세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적합한 재분배의 추구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제는 지출 측면에서의 급속한 변화를 염두에 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조세제도(감면제도 포함)에서의 누진성을 이용한 소득재분배 효과와 각종 지

출제도에 의한 재분배 효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바, 세심한 고려 없이 양자가 함께 팽창할 경우 이전(transfer) 총액의 수준 증가에 대한 합리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참가 여부, 근로시간의 결정 여부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Ⅲ. 맺음말

2007년도 세계개편안에서는 과표구간의 물가연동에 관한 시발점을 내딛고 있으며, 한미 FTA 후속 조치, 세원투명성 제고 조치 및 조세선진화 조치,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등에 관해 광범위한 세계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나 개혁의 내용 면에서나 예상을 넘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할 만한 개편에 해당한다.

이제 여러모로 보아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은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였고, 또한 그동안 취약한 분야였던 4대사회보험제도 및 공적부조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도 상당히 진전되어 있으며 복지제도와 조세제도의 연계정책인 EITC를 추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분배의 틀을 거의 갖추어가고 있다. 앞으로의 조세체계는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여러 가지 가치 및 개념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임시적인 차선책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완결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의도한 정책효과가 보다 가시화될 수 있는 조세제도를 정립할 것, 물가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에 대한 체계적 보완책 강구,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계개편에 대해 접근할 것, 보다 직접적으로 조세행정의 기능 강화에 집중할 것, 마지막으로 재정지출 측면에서의 급속한 변화를 염두에 둔 세밀한 조세정책이 필요함에 대해 언급하

였다. 종합적으로 보아 현재의 경제여건 및 조세제도를 고려하면, 정책입안자 및 재정학자들은 현재의 차선의 정책과 이를 보완하는 부분개혁과 함께 이제는 보다 근본적 개혁에 대한 자세한 청사진을 준비해 놓아야 하고 이의 시행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는 단순히 선진국들에서 실시된 조세 누진도의 조정 및 세원확대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 비효율 구조인 과도한 자영업부문의 해결,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증대, 자본축적을 보다 장려하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추세와 부합하는 조세제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조세제도를 형평성 위주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보다는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미세조정이 마치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전체 경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이로부터 왜곡 및 비효율성을 찾아내고 이에 따라 개선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본다.

그 다음 정책목표로 선정된 분야에 집중적인 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사회·경제정책으로서의 효과적인 조세정책이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많은 조세인센티브를 매년 변경하면서 추구할 경우 장기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며, 경제활동에 있어서 중장기보다는 단기에 초점을 두고 개별 경제주체 및 정부의 행위가 결정됨에 따라 경제 안정화에도 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그 하나하나에 대해 말 그대로 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쉽게 바뀌지 않는 조세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KIPF

2007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II)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 2007년 세제개편안의 특징

총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하게 될 2007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2006년 세제개편안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원확보라는 점이 상당히 고려된 것이라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부담 축소를 통한 경기진작의 측면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고령화, 복지제도의 확충 등으로 인해 그 동안 국가재정수지가 악화되어, 세부담 축소는 재정당국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부담 인하를 단행하였다. 세제개편안의 영향은 향후 2013년까지 나타날 것이나 세부담 경감은 주로 초기연도에 집중되어 2008년 1.6조원, 2009년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부담 경감의 주된 혜택은 중산서민층에게 돌아가는데 총 2.8조원에 이르고 그 중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약 1.1조원, 자영업자 0.9조원, 농어민 0.4조원 수준이다.

국민들의 세부담에 직접적이고 큰 효과를 보일 것은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의 상향조정이다. 1996년 조정 이후 유지되어온 과표구간은 물가상승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소득의 인상에도 세부담을 증가시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과표구간의 조정은 소득구간에 따라 10~20% 상향되었다. 낮은 소득기준(1천만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20%), 높은 소득기준(8천만원)에는 낮은 인상률(10%)이 적용되어 소득재분배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었다. 이로 인한 세부담 경감 효과는 1조 1천억원 수준으로 근로소득자들의 세후 소득을 상당부분 증가시켜 줄 것이다. 성실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게는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의 소득과약률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에게 많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로 인해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소득자는 세부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와 등유세율 인하도 소비자들의 세부담 경감에 기여할 정책이다. 자동차 특소세 인하는 한·미 FTA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과거 고가 사치재의 성격에서 보통재화로 변화한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0cc 이상의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기존의 10%

에서 FTA 발효시 8%로, 이후 3년 내에 5%까지 2000cc 이하 규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기준을 완화하여 자동차관리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차보급 확대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한다. 유류세의 경우에는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인하를 통해서 거주자와 농어촌 거주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즉 도시 거주자가 사용하는 LNG와 배관망이 확충되지 않은 농어촌의 사용연료인 등유가 동일하게 난방용으로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세금 차이로 인해 최종소비자의 부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등유의 특소세율 인하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거주자의 부담을 낮추어 주게 될 것이다.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와 등유세율 인하로 인한 세부담 감소는 각각 0.7조원, 0.3조원에 달하는 큰 규모이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중소기업의 기업상속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위해서 기존의 과거 평균 대비 증가분방식에서 당기증가분 방식을 추가로 허용하였다. 이는 기존방식이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하는 호황기에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 그렇지 않는 경기위축기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는 측면을 고려하였다. 오히려 연구개발 세제지원이 불황기의 지출을 더욱 줄여 경기진폭을 확대하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상속공제 확대는 원활한 기업상속을 통해 기업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고용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유지의무를 추가하여 기업상속이 가질 수 있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라는 부정적 여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납세

자들에게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고 일시적인 자금흐름 이상에도 국세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의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개인기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10%에서 201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기부패턴에서 개인의 비중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개인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 출산·입양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범위 및 비율의 조정, 불황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 인상 등이 제시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확대하였으며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지원도 추가하였다. 또한 세계개편안에서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도 소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2. 개편안에 대한 평가

가. 총평

금번 세계개편안은 약 3.5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세금감면을 통해 가계부문의 소비활동을 진작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지난 수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았고 대외교역에 따른 효과를 감안한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은 낮았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세출 측면에서 증세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조세수입 증가율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도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계부문의 세후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활성화

화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조세지원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중산층이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하였다. 소득세 과표구간의 조정, 출산·입양에 대한 특별공제, 교육비 공제범위의 확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등은 가계부문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조치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부문에 대한 정책 중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진폭을 효과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지원방법이 제시되어 불황기 연구개발투자의 급격한 하락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약 1조원의 세액감면 효과가 있는 국가균형발전 지원방안의 경우, 내국법인들의 지방 혹은 제주도 이전효과뿐만 아니라 해외자본의 유치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 균형발전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조세제도를 합리화하여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들이 포함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한도 증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편리하고 간단한 조세납부는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방안이며 기부문화의 활성화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공공재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개인기부에 대한 조세지원과 함께 이를 이용하는 공익단체의 투명성 향상 조치들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조세제도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려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22개 중 10개를 폐지하여 과세기반 확충에 노력하였으나 출산·입양 소득공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신규

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폭은 세원투명화가 진행됨에 따라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소득공제율을 증가시킨 것은 공제제도 도입목적과도 맞지 않다.

전반적으로 2007년 세제개편안은 세부담 축소를 통한 민간부문의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의 조정과 자동차 및 등유 특소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가계부문의 생활향상 및 소비여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부문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지원 강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제시되어 장기적인 성장기반 확충에 대한 노력도 포함하고 있다.

나. 세부담 경감

세부담 경감에 있어 가장 큰 효과를 보일 것은 소득세 과표구간의 상향조정으로 1996년 이후 12년만의 조정이다. 비록 물가상승의 영향을 그 동안 공제제도 등을 통해 조정하여 왔지만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중하위소득층에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근로소득자의 경우 평균실효소득세율은 1996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지만 면세자규모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면세자규모의 증가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평균적인 세부담 증가를 야기하여 동 계층에 대한 세금감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명목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증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이를 교정하는 수단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다만 세제의 다양한 역할을 고려할 때 중립성에 대한 일정부 분 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다. 소득재분배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세제개편안에 제시된 과표구간 조정은 어느 정도 제도의 누진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중립에 접근한 긍정적 조치라 평가할 수 있다.

성실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특별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의 소득과약률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오히려 세부담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에서는 소득신고의 성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6가지 조건을 전제로 특별공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 중 전년 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및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조건은 성장하는 업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한계도 있다.

다. 기업부문의 활성화

투자 등 기업부문의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개선, 가업상속공제의 확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입된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제도, 법인공장 본사·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등이 제시되었다. 그 중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방식의 개선은 불황기에 대한 세제지원효과를 강화함으로써 기존방식이 제공할 수 없는 경기진폭 완화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경기 조절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부문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는 기업유지를 위한 상속의 경우 고용 및 경제기여효과를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다. 과거에는 가업상속을 부의 세습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다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활동의 유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상대적

으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을 유지하는 경우 상속에 따른 세부담이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용 및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사료된다.

라. 기타 부문

그 외 다양한 세제개편방안 중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는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편의성과 함께 일시적 자금흐름의 어려움이 있을 때 국세납부에 유연성을 높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납세자에게 부담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거래유형과 차이가 있어 납세자의 반발이 야기될 수 있다. 즉 일반거래의 경우 공급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케 하면서 정부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케 하는 논리적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납세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정책추진의 중요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에 대한 국세납부 허용이 별도의 국세수납대행기관의 설립을 통해 추진되는바, 이러한 방안이 공공부문의 확장 혹은 비용 증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범위 축소와 요율인상은 공제혜택의 수준은 일정수준 유지하면서 그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제도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을 범위축소로 반영하고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율은 인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거래투명성 증가에 대한 기여는 제한적인 반면, 공제대상인 거래수단을 더욱 더 이용하는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근로자

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면 보다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거래 투명성 확보 추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외 유류비 비중이 높거나 불황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 인하는 영세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불황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오히려 경비율은 실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구조조정되는 사업자들의 전직 혹은 업종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낮은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증가로 위축된 가계부문을 세부담 축소를 통해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세출 측면에서 증세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조세 수입 증가율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도 장기적인 세원확보 및 재정건전성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의 조정 등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조세감면은 가계부문의 생활향상 및 소비여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제지원이 적극적 기업활동으로 연결되어 국내경기 활성화와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IPF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정책 ·

日, 소비세 1%P 인상 추진... 연금재원 확보 위해

일본 정부는 연금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포인트 정도 더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재무상은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초연금의 국고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추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계산상 1%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일 보도했다. 요사노 가오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후지 TV의 보도2001에 출연해 “세출 삭감만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5년, 10년 후에는 세출 삭감만으로는 안 되고 슬슬 (소비세 인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기초연금의 3분의 1을 국고에서 충당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는 국고 부담이 2분의 1로 늘어난다.

이는 2조 5,000억엔(약 2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소비세 1% 상승분에 해당한다.

누카가 재무상은 또 “기초연금의 국고 부담률 인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소비세 인상이 연금 재원 확보

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매일경제 2007-09-04]

미국 가족형 비영리재단 크게 늘어

- 상속세 줄이고...자선도 하고...
- 18년 새 3배 늘어 6만여개로
- 기부문화 보통사람에게도 퍼져

미국에서 가족들이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미국인들 사이에 생전에 유산을 자손이나 친척들에게 물려주는 관행이 확산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상속·증여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후손들이 뜻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참여하는 비영리재단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유에스에이투데이>와 <에이비시>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뉴욕 파운데이션센터의 조사를 보면, 1987년 2만 5,094개이던 등록 재단 수가 2005년 6만 3,059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90%가 가족형 재단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같은 엄청난 부자들만 설립하는 게 아니다. 이들 재단 가운데 상근자를 한 명 이상 둔 큰 재단은 3천여개에 불과하다.

한 전문 변호사는 “50만달러만 있으면 자선재단을 설립할 수 있고, 자식들에게 재단 운영으로 월급을 받게 하거나, 이사직으로 봉사해 수입을 얻게 할 수 있다”며 “소규모 재단 설립에 2,500~5,000달러, 대규모에는 5만달러의 비용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호화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는 것보다 자선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유한 가정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부자들의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쓰이던 재단 설립이 자선 또는 기부 확대와 맞물려 보통 사람들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이와 함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세 면제 한도인 연간 1만 2천달러씩 매년 증여하는 방법이나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을 선납하는 방법 △부동산을 신탁하는 방법 등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관리사(FP)나 부동산관리사 등 재산관리 전문가들은 유산 상속의 70%가 초기 3년 안에 소모되는 경향이 있다며, 생전에 증여세를 내지 않고 후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부동산재벌이나 루퍼트 머독 같은 언론재벌은 자식들을 일찌감치 가족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전통적 방법을 쓰고 있다.

〈유에스에이투데이〉와 갤럽이 1,02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2%는 살아있는 부모나 친척들로부터 유산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전미퇴직자협회(AARP)는 미국인 가운데 상속을 받는 사람은 4분의 1도 안 되고, 그 대부분도 자산 45만 달러(약 4억 4천만원) 이상의 부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2007-08-27]

佛정부, 주택담보대출 세금인하 방안 발표

프랑스 정부가 24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집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새로운 정책을 공개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헌법위원회가 이달 초 주택대출 이자 소득세 감면 방안에 대해 일부 납세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이 발표한 새로운 세제 혜택 방안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선출된 5월 6일 이후에 집을 구매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첫해에는 현재의 20%에서 40%로 2배 가량 늘어나게 됐으며 나머지 4년 간에는 이자의 20%를 공제받게 된다.

라가르드 장관은 이번 조치로 인한 세제혜택 규모는 매년 8억 4천만유로(11억달러) 가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2007-08-25]

독일 환경정책, 후퇴 조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나라 중 하나인 독일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2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베를린 외각의 메제베르크에서 열린 연방 내각 회의에서 “2020년까지 40%나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환경부의 계획은 소비자와 기업에 700억유로(약 89조 1,800억원)의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경제부 대변인은 “베르켈 총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고 찬반 양론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쟁을 주도한 기독교사회의 미카엘 글로스 경제장관은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독일의 강력한 온실가스 정책을 주도한 지그마르 가브리엘(사회민주당) 환경장관의 계획에 반대해 왔다.

가브리엘 장관이 이번 내각회의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30가지 제안’이란 보고서는 주로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세제를 도입하는 것과, 오래된 축열식 보일러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열병합 발전 시설 보급을 확대하는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독일 부동산산업 연합회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건물의 창문과 난방시스템을 교체한다는 환경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12억유로(약 14조 2,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홈페이지에 올려, 글로스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글로스 장관은 더 나아가 엄격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머니투데이 2007-08-23]

日-아세안, 90% 품목 이상 관세철폐

아시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에 대해 광공업품, 농산품 등을 수입액 기준으로 90% 이상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 경제연대협정(EPA) 협상안을 확정했다. 인도와도 EPA를 맺기로 방침을 정하고 교섭중이다.

일본 정부는 아세안과의 EPA 합의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으며 오는 25일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일본·아세안 경제각료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제출해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지사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은 아세안에서 원유 등 원자재, 전자기기, 일반기계, 컴퓨터 주변기기 및 과일 등 농산물을 연간 8조엔 가량 수입하고 있다. 관세철폐 품목은 조율 중이지만 섬유 제품을 포함한 거의 모든 광공업 제품과 열대과일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수 백%의 수입관세를 매기고 있는 쌀과 설탕 등 이른바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도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철폐 대상 제외 품목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일본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엄청난 게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다. 아베 신조 총리는 22일 인도를 공식 방문해 내년부터 5년 동안 50억달러가 소요될 인도의 고속화물전용철도 건설에 4,000억엔의 차관을 제공할 의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했던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약속했던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공동 성명’의 구체적인 실천의 일환이다. 일본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 외국자본 기업에 대한 출자제한, 인허가 규제 완화 등을 인도 측에 요구했다. 반면 인도는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건축사 기술인력 교류 확대 등을 주장했다. 호주도 인도와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호주 외무성이 만든 인도와 FTA 체결 법안은 이미 내각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매일경제 2007-08-22]

美, “외국기업 세금 회피 꼼작마”

- 하원, 英 등 조세피난처 거쳐 송금해도 과세하는 ‘도젯 법안’ 통과

미 의회가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20일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삼성과 닛산 등 다국적 기업들의 미국 법인이 조세피난처인 제3국을 거쳐 본국으로 이익을 송금할 경우 면세 혜택을 주지 않는 이른바 ‘도젯(Doggett) 법안’이 최근 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내달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미국에서 송금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에 금융부문만 전담하는 법인을 갖고 있다.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곳을 거쳐 본국으로 송금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는 삼성 그룹에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 “삼성의 미국법인도 영국에 세운 금융지사를 거쳐 한국에 이익을 송금,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만약 도젯 법안이 통과하면 삼성의 미국 법인이 한국으로 직접 송금할 때 적용되는 15%의 세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일본의 자동차 업체에도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일본과 미국은 조세 협약을 맺고 있어 미국의 일본법인이 일본에 이익을 송금할 경우 10%의 비교적 낮은 세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닛산은 네덜란드에 위치한 ‘닛산 인터내셔널 파이낸스’를 통해 이익금을 우회 송금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단기간에 엄청난 이익 손실을 예상해야 하는 다국적법인들은 상원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 의회 로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최악의 경우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조지 W 부시 대

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자국 대사관을 통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제투자협회의 토드 말란 회장은 “이 법은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해외기업들에 대한 차별이며, 정당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일보 2007-08-20]

日, 신용카드 공공요금 낸다

일본 지자체 가운데 지방세와 공공요금 등을 신용카드로 받는 곳이 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인구 1만 5,000명인 미에현은 지난 4월부터 주민세, 고정자산세, 국민건강보험료 등 12종류의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다. 7월까지 712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했다.

미에현 관계자는 “현재 납세자 중 73%가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있지만 깜빡 잊고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이체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면 잊어버릴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로 공공요금을 거둘 경우 카드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지방세 체납자를 독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오사카부는 지난 4월부터 조리사 면허신청 등 33종류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다. 효고현의 몇몇 지자체도 수도요금을 카드로 받고 있으며 도쿄도와 요코하마시도 올해 안으로 수도요금을 카드로 받을 예정이다.

가나가와현 후지사와는 지난해 가을 시험적으로



경승용차 세금을 카드로 내도록 했다. 납부실적은 지난해 2,200건에서 올 들어 약 4,000건으로 늘었다. 기한 내 납부율도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 72.6%에서 3.3%포인트가량 더 높아졌다.

[매일경제 2007-08-20]

금연에는 담배세 인상이 최고(?)...美, 효과 만점

미 의회가 담배세를 대폭 인상하자 담배 소비와 흡연율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USA 투데이가 자체 분석 결과를 인용, 13일 보도했다.

USA 투데이는 이날 담배세 인상이 흡연율의 감소를 부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USA 투데이의 분석에 따르면 노스 캐롤라이나주는 담배세를 한 갑당 5센트에서 35센트로 두 단계에 걸쳐 인상한 후 담배 판매가 18% 감소했다.

코네티컷주의 경우 2002년부터 담배세를 한 갑당 50센트에서 1달러 51센트로 대폭 인상하자 담배 소비율이 37%나 감소했고, 뉴저지주도 같은 해 담배 한 갑당 80센트에서 2달러 40센트로 담배세를 인상하자 흡연율이 35%나 하락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1999년 한 갑당 87센트의 세금을 부과하자 흡연률이 18% 감소했다.

이와 달리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1977년부터 담배세를 미국 내 최저인 7센트로 유지했는데 이곳에서는 2000년 이후로 담배 소비율이 고작 5% 감소하는데 그쳤다.

미 의회는 현재 담배세를 한 갑당 1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보건 전문가와 경제학자들은 그럴 경우 미국의 흡연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담배세 인상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일리노이 대학의 경제학 교수 프랭크 찰롭

카는 “흡연율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담배 한 갑당 세금을 39센트에서 1달러로 61센트 인상할 경우 미국 내 흡연율이 6%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은 지난주 어린이 건강보험 정부보조 확대를 위해 담배세를 한 갑당 1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하원은 45센트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담배세 인상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매년 보고되는 “담배세 징수” 보고서에 따르면 1976년 1인당 최고 2,095개피에 달했던 미국인들의 담배 소비는 지난해 1,293개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조사 결과 이 같은 흡연을 저하는 건강에 대한 우려, 담배세 인상, 높은 소매 가격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담배세를 10% 인상할 때마다 흡연율이 2.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담배판매협회의 토마스 브라이언트 사무총장은 담배 한 갑당 1달러로 세금을 인상할 경우 담배소비가 약 6% 정도 하락한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이 같이 높은 세금은 주 정부의 급격한 수입 감소, 담배 암거래 및 절도 기승 등의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2007-08-12]

재정정책 ·

美, '서브프라임 재발 방지' 입안 움직임

신용 경색 우려가 잠잠해진 가운데 서브프라임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조성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바니 프랭크 의장은 정부가 서브프라임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랭크 의원은 이날 관련 청문회에서 “금융의 발전 속도가 규제를 능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며 “시대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땅에 떨어진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상원 금융위원회의 크리스토퍼 다드 의장은 프라임론(우량대출) 신청 자격의 차입자를 서브프라임론으로 내모는 일부 모기지 업체들의 악덕 행위를 금지하고 모기지를 신청자들을 포함한 주택 보유자들의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다.

다드 의원이 소개한 법안에 따르면 모기지 업체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모기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부과되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금지하고 세금과 보험 등에 있어 에스스로 계정 도입을 의무화했다.

다드 의원은 “모든 조치는 주택 소유자를 돕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신용 경색 등의 사태에 당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용 경색은 일단락됐다’는 세간의 인식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로버트 스틸 재무부 차관은 “서브프라임으로 야기된 신용 경색은 결코 끝난 게 아니다”고 주의를 환기

시켰다.

스티 차관은 “추가 사례가 공개되면 급격한 변동성이 다시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들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며 “주택업자와 투자자의 ‘구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머니투데이 2007-09-06]

日, 국가부채 최고...6월말 836조엔

일본의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무성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일본 국가부채가 3월말보다 0.3% 증가한 836조 5,213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일본 국민 1인당 655만엔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가부채는 장기국채와 금융기관 차입금, 일시적인 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 단기증권 잔액고등을 합친 금액인데 최근 5년 동안 국가부채 증가액만 209조엔에 달한다.

재무성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2005년 ‘국가 재무서류’에 따르면 부채가 자산보다 289조 2,000억엔 많다. 부채 초과액은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일본 재정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 규모는 커졌지만 각종 선거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지출을 하락을 우려해 세금 인상에 소극적이어서 국가부채가 많아진 측면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연내에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민보다는 기업을 위한 개편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최종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야당과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인 소비세 인상에 대해 “올해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도 높다.

[매일경제 2007-08-26]

독일 통일 뒤 첫 상반기 재정흑자

독일이 올 상반기(1~6월)에 12억유로(약 1조 5,330억원) 규모의 재정흑자를 내는 데 성공했다.

독일이 상반기 재정흑자를 기록한 것은 1990년 동독과의 통일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유로권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독일이 올 상반기에 재정흑자를 달성함에 따라 균형예산을 맞추려는 노력이 유럽 각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23일 올 상반기에 예산 흑자 규모가 12억유로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1%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230억유로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2000년 하반기(7~12월)에 3세대 이동통신 사업허가권 매각 덕분에 흑자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상반기에 흑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다. 독일은 통일 이전인 1973~1989년 2차례의 반기 흑자를 낸 바 있다.

연방통계청은 이날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실업률은 떨어진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각각

29.8%, 11.9% 늘어난 것이 상반기 재정흑자의 원인”이라면서 “그러나 하반기에 교육과 기후변화 부문 투자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GDP의 0.5% 규모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 예정된 법인세 감면법안이 발효되면, 253억유로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라고 연방통계청은 이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에 대해 이날 베를린 근교의 메세베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드디어 이뤄졌다”면서 “독일은 이 영광에 머물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23일 전했다.

독일 재무부 대변인도 이날 AFP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이며, 앞으로도 균형예산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세금감면 정책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독일 상반기 재정흑자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AFP도 “2005년 집권한 메르켈 총리가 통일비용을 청산하고, 재정흑자를 이룩하겠다고 밝힌 목표에 부합하는 중간성적표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강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문화일보 2007-08-24]

美, 몰락 직전 로마와 닮았다

미국 회계감사원장이 “현재의 미국은 로마의 몰락기와 흡사한 상황”이라고 경고,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는 인물이 직접 이런 주장을 펼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데이비드 워커 미 회계감사원장은 '가슴 서늘하게 만드는 장기 시물레이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현재 '불타는 갑판' 위에 올라앉은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 만성적인 의료보험 재정 부족, 이민자 문제, 위기를 증폭시키는 이라크 전쟁 등 해외 군사작전 등과 관련해 일관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하루 빨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재정적자는 2,480억달러로 전년(3,180억달러)보다 줄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여전히 많다고 주장한다. 국가 채무도 8조 9,300억달러(7월말 기준, 2006년 국내총생산 대비 67.7%)에 달한다.

이민자는 전 인구의 12%인 3,520여만명(2005년 기준). 이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불법 체류자의 합법화 문제 등이 사회적 논란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워커 원장은 또 세금 폭등, 공공 서비스 위축, 외국 정부의 미국 국채 대량 매도 등의 문제에도 봉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미국에서 도덕적 가치와 교양 있는 정치문화가 사라지고 군사행동이 너무도 자신만만하게 해외 멀리까지 뻗친다는 점을 들어 멸망해가던 로마와 미국의 현 상황이 매우 닮았다고 주장했다.

워커 원장은 특히 재정적자와 관련, "국가 채무가 폭발할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대거 늘어나고 의료보험 비용도 급증하는데 저축률은 곤두박질치다 보니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선 고속도로 공항 등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니애폴리스 교량 붕괴는 이런 수요가 막대함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워커 원장은 인터뷰 말미에서 내년 봄 대통령 후보

들 앞에서 브리핑을 할 생각이라며 이들이 재정문제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불거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FT는 워커 원장이 미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사 기능을 충지휘하는 데다 어떤 당적도 갖고 있지 않은 인물이란 점에서 그의 지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워커 원장은 예전에도 이런 이슈들을 언급해 왔지만 "이제 불륨을 높일 때라 생각했다"며 보고서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제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할 때라 생각한다"며 "미국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낸 최초의 국가가 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법인 PwC 출신인 워커 원장은 클린턴 정부 시절 감사원장에 임명돼 15년째 재직하고 있다.

[한국경제 2007-08-14]

중 투자증가율 26.6%...추가건축 시간 문제

CPI 5.6%..10년래 최대

중국이 추가건축을 발동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국가통계국은 1~7월 중국의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6%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6월 증가율에 비해서는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또 7월만 보더라도 26.2%로 6월의 28.5%에 비해 확실히 둔화된 것이지만 국가발전개혁위 마카이(馬



凱) 주임이 양회기간에 밝힌 24% 억제 목표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골드만삭스의 최신 보고서는 7월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것은 열악한 기후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면서 신규대출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른 점을 감안하면 투자증가율이 주춤한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기업들의 자기자금 사용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외자이용도 비교적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증가율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0년래 최대폭인 5.6%의 상승률을 보였고 무역흑자 규모가 월간기준으로 두번째로 높은 243억 6천만달러에 이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차타드은행의 경제분석사인 쉬창타이(許長泰)는 현재의 투자증가율과 물가를 고려할 경우 중앙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추가인상하거나 지급준비율을 다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만간 중국 정부가 발행예정인 특별국채도 과열경기를 식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국판 테마섹'인 국가외환투자공사의 자본금으로 전입되는 1조 5,500억위안(186조원) 가운데 6천억위안의 국채를 조만간 발행할 예정이다.

화폐정책 외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에너지 소모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행정 제재를 가하거나 자원세 징수 등 재정정책을 동원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연합뉴스 2007-08-17]

| 정책 흐름 |



- 2007년 세제개편(안)
- 금년도 국세징수 실적 호조
- 세수추계 오차 발생원인과 개선방안

2007년 세제개편(안)

* 이 자료는 2007년 8월 22일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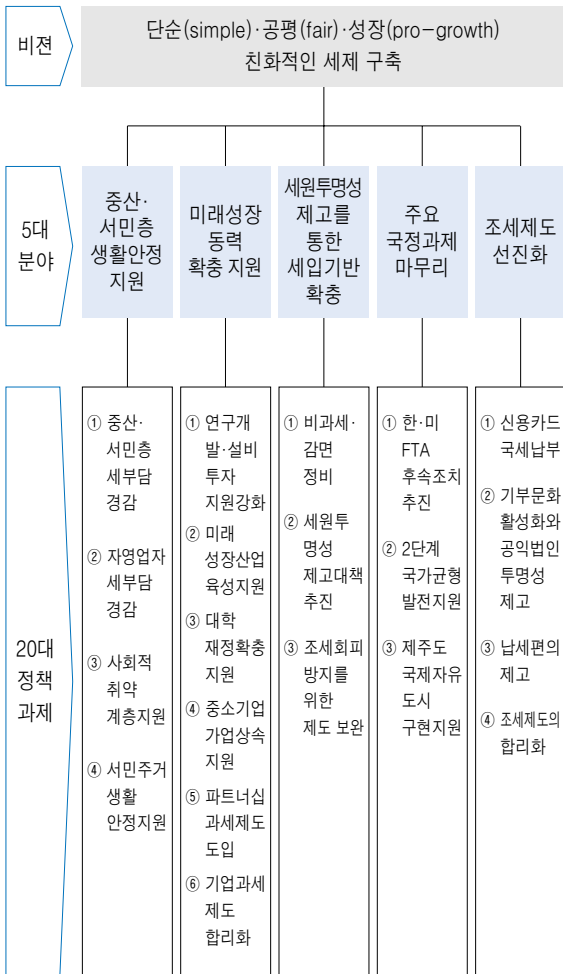
I. 세제개편 여건 및 기본방향

1. 세제개편 여건

- **거시경제 여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증가세 지속, 내수부문의 점진적인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국면으로 진입
 - 유가·환율 등 대외 여건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최근의 내수회복세가 이어진다면 4%대 중반의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그간 추진해온 경제안정 및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재정 여건** 금년 들어 재정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세출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이 호조를 보이면서 재정운용에 여유가 있는 상황
 - 이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
 - * '07년 적자국채 예산 8,0조원 중 6,7조원만 발행('07. 8월 현재)
 -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위한 지출요소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
- **세법개정 수요**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의·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세제개편 요구 제기
 - 정부도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가 T/F 회의 개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등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근로의욕 고취, 세계의 선진화 등을 위해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장에서 제기된 요구와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세제개편안에 반영
- **주요 국정과제 마무리** 그동안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와 투명화, 대외개방 및 협력 강화, 미래에의 대비 등을 위해 노력 경주
 - 금년 하반기에 세제측면에서 마무리지를 과제는 한·미 FTA 후속조치, 2단계 국가균형발전, 기업환경 개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 *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07. 6),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7. 7),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07.

- 7,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07. 4) 등
- 대선 등으로 금년 정기국회 일정이 유동적인 점을 감안하여 상기 과제 외에 금년에 마무리지을 과제를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

2. 기본방향



◇ 금년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 제출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특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II. 세수효과

① '07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총 세수효과는 '08~'13년 기간중 총 △3.5조원 수준

- 연도별로는 '08년에 △1.6조원, '09년에 △1.8조원, '10~'13년에 △0.1조원의 세금감면 예상
- 소득세 과표구간 20~10% 상향조정(△1.1조원),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1.0조원),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0.7조원), 등유세율 인하(△0.3조원) 등에 주로 기인

② '07년 세제개편 효과의 귀착

(단위: 억원, %)

구분	세수증	세수감	합계	
1. 중산서민층	460	△28,890	△28,430	80.1
- 근로자	20	△10,580	△10,560	29.8
- 자영업자	440	△9,290	△8,850	24.9
- 농어민 등	0	△4,430	△4,430	12.5
- 중소기업	0	△4,590	△4,590	12.9
2. 대기업	2,610	△3,740	△1,130	3.2
3. 기타	2,850	△8,770	△5,920	16.7
합계	5,920	△41,400	△35,480	100.0

* 기타 : 이자·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세부담 귀착이 명확하지 않은 세목

Ⅲ.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①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1]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소득법 §55)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7%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 조정
(20% - 15% - 10%)

개정이유 근로자, 자영업사업자 등 중산 서민층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소득법 §52)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 공제한도 : 200만원 • 공제대상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추가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경감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소득법 §51)

현 행	개 정 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입양공제 신설 •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개정이유 저출산대책의 일환

적용시기 '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영세·성실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①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허용 (소득법 §122의3)

현 행	개 정 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허용 • 대상 사업자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POS·ERP 도입사업자 등 ②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③ 사업용 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 실제 사용 ④ 전년 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⑤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⑥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다만, 아래 요건 발생시 추정하고 향후 3과세기간 동안 적용 배제 • 당해 과세기간에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 '08~'09년중 시행(일몰기간 2년)하고 시행성과를 보아 공제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개정이유 근로자와 자영업사업자 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유도

적용시기 '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소매업 등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 연장
(부가영§74의3④)

현행	개정안
<p>■ 업종별 부가가치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 : 20%(소매업은 '07.12월까지 15%)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 30% 음식, 숙박, 운수, 통신업 : 40%(음식·숙박업은 '07.12월까지 30%) * 부가가치율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규정 	<p>■ 소매업, 음식·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일몰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매업 : 15%('09.12월까지) (현행과 동일) 음식·숙박업 : 30%('09.12월까지)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③ 소득금액 상한배율제도 적용기간 연장
(소득영§143③)

현행	개정안
<p>■ 추계결정 소득금액의 상한선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 배율* 범위 한도에서 결정 * '06귀속분 : 복식부기 2.0배, 간편장부 1.8배 '07년 귀속 소득분까지 적용 	<p>■ 적용기간 2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09년 귀속분까지 적용

* 소득상한배율 : (02귀속) 1.2배 (03) 1.4배 (04) 1.5배 (05) 1.7배

개정이유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일시에 크게 늘어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 불황업종을 대상으로 단순경비율 인상

현행	개정안
<p>■ 단순경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개인서비스업 : 36백만원 미만 제조·음식 : 48백만원 미만 도소매 : 72백만원 미만 * 연간수입금액 기준 소득금액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p>■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 불황업종*을 대상으로 단순경비율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 구체적인 단순경비율 수준은 내년 3월 국제청 기준경비율 심의위원회에서 업종실태를 감안하여 결정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유류비 부담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1-3-1)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필요경비 허용
(소득법§52)

현행	개정안
<p>■ 보험료 공제 (전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p>■ 보험료 공제 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p>■ 필요경비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포함) 	<p>■ 필요경비 항목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 보험료(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액의 0.2%씩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08. 7. 1. 시행) 운용 뒷받침

적용시기 '08. 7.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허용 (소득법§50)

현 행	개 정 안
<p>■ 기본공제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남60세, 여55세 이상)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직계비속(20세 이하) <p><추가></p>	<p>■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배우자

개정이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

1-3-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85의6)

현 행	개 정 안
<신설>	<p>■ 사회적 기업*인증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p> <p>*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p>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사회서비스 강화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3) 근로장려세제(EITC) 본격 시행 대비

①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조정 (조특법§100조의3②1)

현 행	개 정 안
<p>■ 다음의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한 자 • 외국인, 다른 거주자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이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수급한 자” •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근로장려금의 지급조건 완화 (조특영§100조의7②)

현 행	개 정 안
<p>■ 근로장려금은 다음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예외)급여수령통장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가 휴·폐업한 경우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고용주가 휴·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거자료로 인정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판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소지 축소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서민주거생활 안정 지원

①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 (특소세법§1②4, 영§2의2)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유 특별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유 : 181원/ℓ (탄력세율 : 134원/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유 특소세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 유 : 90원/ℓ

개정이유 농어촌 주거 서민의 난방용 유류비 경감, 도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난방용 에너지인 LNG와의 가격 차이로 인한 소득 역진성 완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

②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소득법§52, 소득영§112)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대상 대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마련저축을 한 가입자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당해 저축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도 공제를 허용 •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 이후부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차입금이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

개정이유 대출금융기관 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금융기관 선택 폭 확대

적용시기 '08. 1. 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소득법§52③)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 2주택자 공제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과세기간중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제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설정 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당해 저축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도 공제를 허용 *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등 ** 다음연도 4. 30. 공시 •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 허용

개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보완

적용시기 '08. 1. 1. 이후 상환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기준시가 요건보완은 '08. 1. 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④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 보완 (소득법§52)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에 1주택 세대주이고, 당해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요건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었던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것 * 다음연도 4월 30일 공시 -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개정이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 미비점 보완
적용시기 '08. 1. 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보완 (조특법§87)

현행	개정안
<p>■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또는 3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 - 세대원을 포함하지 않고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감면세액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일부터 7년 이내 해지시 감면세액 추정 • 가입요건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 징구 -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사후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요건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가입 7년 후, 이후 3년 마다 저축 가입요건 재검증 · 요건 미충족 가입자는 법정정지 처리 - 세대원을 포함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감면세액 추정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일로부터 7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도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 해지시 감면세액 추정적용 배제 • 검증시스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즉시 국세청이 저축가입자의 가입요건(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비여부 검증

개정이유 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적용시기 '08. 1. 1. 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

- 요건 재검증 규정은 '08. 1. 1. 이후 가입 또는 만기 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08. 1. 1.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 적용
- 감면세액 추정적용 배제조항은 '08. 1. 1. 이후 주택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2-1]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①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10)

가.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선택 허용

현행	개정안
<p>■ 대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분 방식만 허용 ① 증가분 방식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사용한 연구인력 개발비: (당해연도 R&D 지출액 - 직전 4년 평균 R&D 지출액) × 40% ㉡ 대학·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 (당해연도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R&D 비용 - 직전 4년 평균 중소기업 등에 R&D 위탁비용) × 50% 	<p>■ 대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선택 허용(Max ①, ②) ① 증가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② 당기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연도 R&D 지출액 × (3% + α) * α: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율 × 0.5 (3% 한도) * 금년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율이 직전연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선택 허용

개정이유 대기업 연구개발비 지출확대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

나. 50% 세액공제받는 위탁 R&D 지출범위 확대

현행	개정안
<p>■ 대기업</p> <p>① 증가분 방식 공제(㉠+㉡)</p> <p>㉠ 자체 사용한 연구인력 개발비 : (당해연도 R&D 지출액-직전 4년 평균 R&D 지출액) × 40%</p> <p>㉡ 대학·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 : (당해연도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R&D 비용 - 직전 4년 평균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R&D 비용) × 50%</p> <p>• 대상비용 :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p> <p>• 대상기관 :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p> <p>-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p> <p>-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p>	<p>■ 대기업</p> <p>• 공제율 : 좌동</p> <p>• 대상비용 추가 :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 훈련비 및 기술개발지원용역비 추가</p> <p>•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업+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p>

개정이유 대기업과 대학 간의 산학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R&D 지원 확대

적용시기 '08.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법§24)

현행	개정안
<p>■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p> <p>• 공제대상 자산</p> <p>-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p> <p>→ 컴퓨터 및 제어설비</p> <p>→ 설계자동화를 위한 설비 등</p> <p>- 전자적 기업자원관리 설비</p> <p>- 전자상거래 설비</p> <p>•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 7%)</p>	<p>-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추가</p> <p>→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시스템 설비 추가</p> <p>→ RF DONGLE(모바일 터치 카드결제 단말기)</p> <p>→ 서비스로봇</p>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활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③ 개성공업지구에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조특영§23, 조특규칙§2)

현행	개정안
<p>■ 임시투자세액공제</p> <p>•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p> <p>- 투자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p> <p>*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p> <p>■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p> <p>•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p> <p>- 의제제조업으로 판정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p> <p>* 의제제조업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p>	<p>■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p> <p>•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p> <p>■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p> <p>•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 의제제조업 범위에 포함 되도록 규정</p>

개정이유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장려

적용시기 '08.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조특법§25)

현행	개정안
<p>■ 환경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p> <p>• 공제율 : 투자금액의 3%</p> <p>• 일몰기간 : '09. 12. 31</p>	<p>• 공제율 : 상향조정 - 3% → 7%</p>

개정이유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08.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2]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원

2-2-1)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조특법§6)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감면 • 감면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 중소기업 • 감면업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 21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벤처기업 확인 기간 연장 •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 중소기업

개정이유 창업 초기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확인기간 연장

* 벤처투자기관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금액이 최소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 등

적용시기 '08. 1. 1. 이후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 (조특법§8)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소유용 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시 특례인정 • 기증자(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증한 설비가액을 손금산입 • 수증자(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익금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인정

개정이유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법§7의2)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론을 통하여 구매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 구매자 : 대기업, 중소기업 • 판매자 : 중소기업 •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 - 금융기관은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판매기업에 대출 - 구매기업이 추후 상환 • 세액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이내 : 0.4% - 31~60일 이내 : 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기업의 추천 요건 삭제

개정이유 네트워크론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08. 1. 1.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2-2-2) 금융산업 지원

①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 (법인영§42③)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대비 손금불산입 • 접대비 :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법 §25⑤) -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급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 (일명 "모집권유비") 	<p><삭제></p>

개정이유 금융기관 모집권유비를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

적용시기 '08.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지출 분부터 적용

② 금융지주회사 주식양도차익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특법§52의2)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2007년 말까지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말까지 3년 일몰 연장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최초로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2-3) 물류산업 지원

①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104의13)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에서 제3자물류기업*으로 위탁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 화주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기업 •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당해연도 지출 위탁물류비-전년도 지출한 위탁물류비) × 3% - 다만, 제3자 위탁물류비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경우에는 적용배제 ② 최초로 적용하는 때에는 제3자 위탁물류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3% 세액공제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 	

개정이유 자가·2자 물류를 제3자물류로의 전환 촉진

적용시기 '08.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허용
(조특법§24)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추가> • 공제율: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관리 정보시스템* 설비 * 창고관리, 운송관리 등을 지원하는 물류솔루션

개정이유 물류전문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2-4) 해외자원개발 지원

①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104의14)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자원개발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지분투자 포함)시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개정이유 해외자원 개발사업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국고보조금의 해외자원개발투자시 과세이연
(조특법§104의14)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이 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 해외 자원개발의 경우 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허용

개정이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외자원개발투자와 관련된 지분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적용시기 '08. 1. 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보조금부터 적용

2-2-5) 환경·에너지산업 지원

① 바이오디젤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일몰연장 (조특법 §111②)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디젤(BD) 원액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비과세 • 세 율 : 528원/ℓ • 일몰기한 : '07.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 '10. 12. 31

개정이유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일몰 연장 (관세규칙 §46)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 방지물품 수입시 관세감면 • 일몰기한 : '07. 12. 31 * 감면율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 '09. 12. 31

개정이유 기업의 환경설비투자부담 완화 및 폐기물 처리·재활용 선진기술 확보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

③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 연장 (조특법 §118)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 일몰기한 : '07. 12. 31 * 감면율 :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 '10. 12. 31 * 단, 감면율은 환경오염 방지 물품 관세감면율에 맞추어 조정 (65% → 50%)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

[2-3] 대학재정 확충 등 인적자원 양성기반 구축

2-3-1)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

① 대학 재정확충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104의15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보유중인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1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 과세이연금액 : ① × ② ①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이월결손금 ② 신규자산 취득가액/기존 자산 양도가액(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함) * 일몰기한 : '10. 12. 31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인 수익을 대학에 출연하는 경우 전액 손금 산입 * 일몰기한 : '10. 12. 31

개정이유 대학 재정확충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적용

② 대학 민자사업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추가 및 일몰 연장 (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 BTO방식으로 기부채납받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추가> • 일몰기한 : '07. 12. 31 계약분까지	■ 감면대상 추가 및 일몰 연장 • 대학이 민자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 • 일몰기한 : '10. 12. 31

개정이유 대학의 민자유치사업 지원, 기숙사비 등 학생부담 완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

2-3-2) 산학협력단 활성화 지원

①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 기타소득 비과세 • 사용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추가>	•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개정이유 산학협력단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조정 (법인법 §18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 출자비율 80(40)%이하 80(40)%초과 70% 90% • 일반법인 출자비율 50(30)%이하 50(30)%초과 30% 50% * ()는 자회사가 상장법인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을 일반법인수준에서 지주회사수준으로 상향조정

개정이유 대학기술의 산업화·상용화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소유한도(5%) 예외 인정 (상증법 §16)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이 동일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일정요건*을 갖춘 산학협력단의 경우 예외 인정 *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대학기술의 산업화·상용화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출연·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4]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① 가업상속 요건 보완 (상증영 §1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한 개인 사업 또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하여 50% 이상인 경우 적용 <신설> • 업종 요건 : 다음 업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소세 과세대상 숙박 및 음식점업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 부동산 임대·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등 ■ 상속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의 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연장 : 5년 → 15년 •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기업은 40% 초과 - 비상장기업은 50% 초과 •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중 80% 이상 대표이사일 것 • 조특법상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업종은 시행령 개정시 결정 ■ 상속인 요건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 (좌동) • 상속세 신고기한 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개정이유 원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상증법 §18②)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 1억원 • 사후관리(5년) : 상속세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처분재산가액 비율 상당액 추징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액 추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 Max[2억원 or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 • 사후관리 강화(10년) : 전액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용자산 10% 이상 처분 - (좌동) - 상속인의 지분을 유지 - 종업원 수 10% 이상 감소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상응하여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③ 연부연납제도 개선 (상증법 §71②)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연부연납 기간(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경우 :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내 1/4납부 후 매년 1/4씩 3년간 분할납부 • 가업상속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 : 15년 - 기타의 경우 :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부연납 신청기준금액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원 → 2천만원 ■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거처기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으로 연장 • 가업상속의 경우 거처기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거처 후 최대 12년간 분납 - 2년 거처 후 최대 5년간 분납
⇒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형편을 감안 연부연납기간 결정	⇒ 납세자의 신청대로 연부연납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매회 1천만원 이상 납부요건 신설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를 위한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④ 사전상속 특례제도 보완 및 일몰연장
(조특법 §30의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상속 특례제도 ('07. 12. 31 일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 • 특례 : 5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증여세 부과 후 상속시 정산 • 한도 : 30억원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10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상속 특례제도 일몰연장 ('10. 12. 31까지 3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 18세 이상 - 부모 : 60세 이상 •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도 특례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상속요건(단, 사업영위기간은 10년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고 수증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적용 • (좌동) • (좌동) ■ 사후관리(10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지분율 유지, 가업유지 요건 충족

개정이유 창업자 생존시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2-5]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①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조특법§100의14)

현행	개정안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회사 성격이 있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명회사·합자회사 - 유한회사 중 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등 ■ 과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단계에서 파트너의 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를 통한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적용시기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6]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①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제외 (부가영§1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간주공급) 부가가치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는 제외

개정이유 매입세액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중복과세 문제 해소

적용시기 '0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요건 완화
(법인법§18의3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배당금에 대해 출자비에 따라 일부를 익금불산입 출자비율 50(30)%이하 50(30)%초과 익금불산입률 30% 50% * ()는 자회사가 상장법인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시 적용 배제 <단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당받은 법인, 배당금 지급법인, 배당금 지급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에만 배제

개정이유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요건 완화 등 (법인법§36)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이 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 취득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사업용 자산 취득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추가> 국고보조금 대상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당해 사유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 허가·인가 등의 지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보조금부터 적용

④ 신용카드매출거부 가산세제도 보완
(법인법§76,소득법§162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대상 : 모든 신용카드가맹점 국세청장은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 금지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은 자는 과세당국에 신고 * 신고자에게는 1인당 5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 가산세 부과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장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한 신용카드가맹점 * 소매·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거부보 보지 않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전문금융업법도 개정 예정

개정이유 신용카드 거부시 부과되는 가산세 제도 보완

적용시기 공포일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보완 (법인영 §63①②)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 손금산입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잔액의 1% • 대상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자금 - 기술신용보증자금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금산입한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잔액 × Min [1%, 구상채권발생률 (= 당해 사업연도 구상채권발생액 / 직전연도 보증잔액)] * 기존대상법인이어서 손금산입한도가 줄어드는 법인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 • 대상 법인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 - 자본재 공제조합

- 개정이유**
- 실제 구상채권발생률 이상으로 손금산입되지 않도록 손금산입한도를 조정하고
 - 건설공제조합 등도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한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대상 법인에 추가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공동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제도 개선 (법인영 §48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광고선전비 배분기준 •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영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액 비율 • 기타의 경우 다음 기준 중 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출액 비율 ② 매출원가 비율 ③ 인건비 비율 * ②, ③의 경우 한번 적용한 기준은 최소 5년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 간에는 약정에 따른 배분을 인정 • 매출원가비율, 인건비 비율 기준 삭제

개정이유

-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 간에는 공동광고의 사례나 공동광고를 통한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법무법인·관세사법인 등의 조직변경시 세부담 해소 (소득법 §17②, 법인영 §120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변경시 의제배당 비과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 비과세 *인적회사(합명·합자) 간 또는 물적회사(주식·유한) 간의 조직변경 <추가> ■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비과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 • 내국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배당 비과세 특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 • 법무법인(합명)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 관세사법인(합명)이 관세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 관세사법인(합명)이 관세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개정이유

- 법무법인·관세사법인의 유한회사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③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총괄〉

1. 금년 일몰도래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22개

- 이 가운데 10개를 폐지(일몰종료)하고, 4개 축소, 8개 연장

(단위: 개)

구분	대 상	연장	축소	폐지
조특법	18(2.7조원)	7	3	8
관세법	4(0.14조원)	1	1	2
합 계	22(2.84조원)	8	4	10

* ()안은 감면액

2. 비과세·감면 정비 원칙

[일몰 연장 기준]

- 성장동력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

[폐지·축소 기준]

- 외국사세가 없거나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경우
-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등 존속 실효성이 낮은 것

[일몰 신설 기준]

- 일몰 없는 제도에 대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상시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5년의 범위 내에서 일몰 신설

[3-1]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정비

3-1-1) '07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는 18개 (2.7조원, 전체 감면액 21.2조원의 12.7%)

- 농어업용 유류세 면제(2조원)는 4월 임시국회에서 5년 연장
-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등 나머지 17개 제도중 8개를 폐지(일몰종료)하고, 3개를 축소, 6개를

연장

- 이용실적 미미, 외국사세가 없는 등 존속 실효성이 미약한 경우 → 폐지 8개
- 국산화율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 등 → 축소 3개
-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경우 → 연장 6개

3-1-2) 감면정비(안)

① 폐지(일몰종료) (8개)

조세지원 내용	이유
1. 중소기업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쿠폰을 07년 말까지 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구매한 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의 일정부분 정부가 지원하고, 조세지원 효과 미미
2. 중소기업의 금융채무 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고, 탕감받은 채무변제 ① 채무면제액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② 상환목적 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적결손금과 상계되어 지원효과 미미
3.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특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이행에 의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① 수증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② 법인에게 증여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채출연에 따른 구조조정 거의 없음 누적결손금과 상계되어 지원 효과 미미
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정책방향과 상치되어 '06년 말 일몰 신설
5. 공동전산망 이용 화물운송위탁운송비 세액공제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송비의 0.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물류전환을 위한 제도 신설에 따라 존치 실적 미미

<p>6. 금융지주회사설립시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실효성 미미
<p>7.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의 100%를 당년도에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제도 통합 운영
<p>8.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세제지원</p> <p>① 거주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관투자가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 비과세 → 폐지</p> <p>②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 폐지</p> <p>③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 2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목적 달성

② 축소 (3개)

조세지원 내용	이유
<p>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촉진하여 세원 투명화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하고 일몰 연장
<p>2.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관세 경감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65%를 경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화율을 높이고, 관세감면을 줄이기 위해 50%로 인하
<p>3. 도시철도 등 건설용품 관세 경감 도시철도·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대하여 관세의 85%를 경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고속철도건설용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50%로 인하

③ 연장 (6개)

조세지원 내용	이유
<p>1. 기관투자자의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기관투자자(연기금·공제사업법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통하여 창업자·벤처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및 벤처투자활성화
<p>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로부터 30억원의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경우 낮은 세율인10퍼센트로 과세하고,추후 상속세로 정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 조기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증진
<p>3.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관한 특례 합병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을 합병등기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는경우 대체자산 취득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투자촉진 유도
<p>4.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그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이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p>5. 사립대 민자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BTO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주로 기숙사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p>6.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귀금속 원재료용으로 공급하는 금지금, 금용기관 등에 의한 금선물 또는 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거래되는 금지금 등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수방지 및 금지금 거래 투명성 지원

[3-2] 관세법상 비과세·감면 정비

3-2-1) '07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는 4개 (1,378억원, 전체 감면액 6,133억원의 22%)

- 방위산업물품 관세감면 등 2개를 폐지(일몰종료)하고, 1개를 축소, 1개를 연장
- 특정업체 또는 산업에 감면이 집중되는 경우 → 폐지 2개
- 도입 취지가 퇴색된 경우 → 축소 1개(단계적 폐지)
-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경우 → 연장 1개

2-3-2) 감면정비안

① 폐지(일몰종료) (2개)

조세지원 내용	이유
1. 항공기 발착·항행안전용품 관세면제 항공기의 출발·도착과 항공 운행의 안전 및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관세 100% 면제	• 특정업체에 혜택이 집중되며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미미
2. 방위산업용품 관세감면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설비 및 방위산업물품의 제조용 원재료 및 부분품에 대하여 관세액의 40% 경감	• 예산을 통한 지원으로 전환

② 축소 (1개)

조세지원 내용	이유
1.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인건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동화 기계에 대하여 관세액의 30%(중소제조업체는 50%)를 경감	• 감면혜택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며 인건비 절감이라는 도입 취지 퇴색 • 총격완화를 위해 단계적 폐지 (대기업 3년, 중소기업 5년) → '08년: 20%(중소기업 40%)

③ 연장 (1개)

조세지원 내용	이유
1.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방지와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장비에 대하여 관세액의 50%를 경감	• 환경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환경설비 투자부담 완화

[3-3] 세원투명성 제고대책 추진

3-3-1) 거래투명성 제고

①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소득영§210의3 등)

현행	개정안
■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 5,000원	• 최저금액기준 폐지 - 다만 가산세, 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천원 유지

개정이유 소액현금거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8. 7. 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126의6)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현금영수증 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개인사업자) * 단말기에 연결된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 • 기준 : 과세기간중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 *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는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할 예정 • 공제방법 : 발행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납부세액을 한도) • 적용 : '10. 12. 31. 일몰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확대 지원
 적용시기 '08. 7. 1.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및 일몰연장 등 (조특법§126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 • 일몰기한 : '07. 11. 30 ■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선불·신용카드등 - 기명식 선불카드인 전자화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 • 일몰기한 : '09. 12. 31 ■ 소득공제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도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개정이유 과표양성화

적용시기 '07. 12. 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56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장세액공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 •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장부 : 산출세액의 10% - 복식장부 : 산출세액의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식장부 : 산출세액의 20%

* 간편장부대상자('05 귀속) : 기장신고자 123만명 중 57만명 (46.3%)

개정이유 •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 기장시 기장세액공제 상향 조정
 적용시기 '08. 1. 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3-2) 귀금속산업 세원투명성 제고

① 금지금 면제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조특법 §106의3)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금 면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업자·제련업자가 세공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판매하는 금지금 〈추가〉 ■ 일몰기한 : '0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 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 ■ 일몰기한 : '10. 12

개정이유 밀수방지 등 금지금 거래 정상화 유도
 적용시기 '08. 1. 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조특법 §106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금 및 금제품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금 전용계좌」를 통해 국고에 납부 ■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른 매출자의 소득세·법인세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대비 증가분의 50%, 당기이용분의 5% 세액공제 중 선택
<신설>	

개정이유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 매입자납부제도 : '08.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인세 경감 : '09.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
(조특법 §106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제품 소매상이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103 세액공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 고금 매출액의 80% 한도 • 일몰기한 : '09.12월 (2년)

개정이유 고금 거래의 양성화 유도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8.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금지금 거래내역 제출 (조특법 §106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금 제련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 ■ 세관장은 금지금 수입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월 1회)
<신설>	

개정이유 금지금 거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8. 7. 1.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3-3)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① 농어민에 대한 부정유통 방지
(조특법 §106의2 등)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기계를 1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기계 재신고 기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단위로 재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면세유전용카드 사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 l /년 이상 사용 농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용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유를 사용하는 모든 농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율을 40%로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의 부정유통* 적발시 1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 가사용 등으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계 허위 신고시 2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 면세유 공급 중단 기간을 2년으로 연장

개정이유 농어민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적용시기 '08.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카드사용 대상 확대는 '08. 7. 1.부터 적용)

② 농·수협 단위조합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
(조특법 §106의2)

현행	개정안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단위조합에 대해 부당하게 감면된 세액의 10%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협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부정유통에 개입한 농수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 단위조합에 대해 감면된 세액의 2배 가산세 부과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내역을 농·수협 홈페이지에 공개

개정이유 농·수협의 면세유 관리업무 강화 유도
적용시기 '08. 1. 1. 이후 부정유통에 개입시부터 적용

③ 면세유 판매업자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
(조특법 §106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업자*가 면세유 부정유통에 개입시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징 *주유소, 석유대리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산세율을 40%로 인상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에 개입시 3년간 면세유 판매 불허 주유소가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판매중단처분 효과 연계
<p><신설></p>	

개정이유 석유류 판매업자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
적용시기 '08. 1. 1. 이후 부정유통에 개입시부터 적용

[3-4]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3-4-1)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명확화(국기법§14③)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과세원칙 ①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②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과세원칙 명확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자거래* (우회거래) 또는 단계거래** 등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거래로 적용 * 교환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변칙파생상품거래를 통한 법인세 회피 ** 2회 이상의 제3자 거래

개정이유 ■ 다양한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 국제조세법에 있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국제기본법에도 규정함으로써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부터 시행

3-4-2)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①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국기법§84의2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상금 지급대상 • 탈세제보 • 체납자 은익재산 신고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자 신고 추가 • 포상금액 : 100만원 *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시 먼저 신고한 건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 개정이유**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도입
- 적용시기** '08.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②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 인정 (국기법§26의2)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복절차에서 명의대여자로 결정·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에게 과세 불가 * 부과제척기간 (원칙) 일반세목 5년, 상속·증여세 10년 (연장) 무신고 7년, 국제포탈 등 10년(상중 15년) (예외) 불복 결정 또는 판결, 상호합의 종료일로부터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제척기간 예외인정 규정 신설 • 부과제척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질사업자에 대해 과세 가능하도록 규정

- 개정이유**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일실 가능성을 없애고 명의위장을 이용한 조세 회피 방지
- 적용시기** '08. 1. 1. 이후 결정 또는 판결분부터 적용

③ 과세유형업 등 사업자등록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부가영§7)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추가 • 과세유형업 및 귀금속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 소명서 제출

- 개정이유** 명의위장을 통한 세금탈루 방지
- 적용시기** '08. 7.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분 부터 적용

3-4-3) 가산세 제도 등 보완

①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증과 (부가법 §22)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 규정 • 가공·위장세금계산서 발행: 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2%

- 개정이유**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세금계산서 수수 문화 정착
- 적용시기** '08. 7. 1. 이후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교 부받는 분부터 적용

②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배제 (부가법 §24)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 당해 납세자가 환급신청시 부가가치세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을 배제토 록 하되 • 향후 5년간 납부할 부가가치 세에서 차감토록 제도 보완 - 이후에도 남은 부가가치세 가 있는 경우 즉시 환급

- 개정이유**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금계산서 수 수문화 정착
- 적용시기** '08. 1. 1.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주요 국정과제 추진 지원

[4-1] 한·미 FTA 후속조치 추진

<한·미 FTA 후속조치>

4-1-1) 자동차 특별소비세제 개편

①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조정 (특소법§1②3)

현 행	개 정 안
■ 승용자동차 특소세율 • 2,000cc 초과 : 10% • 2,000cc 이하 : 5%	• 2,000cc 초과 : 5% (발효시 8%, 3년간 매년 1%p씩 인하)

개정이유 한·미 FTA 후속조치

적용시기 한·미 FTA 발효시부터 적용

②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범위 확대 (특소법§1②3)

현 행	개 정 안
■ 면세되는 경차 범위 • 배기량 800cc 이하로서 - 길이가 3.5m 이하이고, 폭이 1.5m 이하인 것	■ 경차 면세범위 확대 • 배기량 1,000cc 이하로서 -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

개정이유 경차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03년 개정) 시행에 따라 경차 면세범위를 동 규칙과 일치시켜 경차 보급 확대를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부터 시행

4-1-2)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통관제도 정비

①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 도입 (관세법 §235)

현 행	개 정 안
■ 저작권에 대해서는 상표권과 달리 통관보류요청만 가능 ※ 상표권에만 적용되는 보호조치 ① 수출입금지 ② 세관신고제도 ③ 침해물품 수출입사실통보 ④ 직권통관보류	■ 저작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상표권과 동일하게 개선

개정이유 한·미 FTA 합의사항으로 국내 캐릭터 상품 등의 보호를 위해 모든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적용

적용시기 ’08. 4. 1. 이후 수출입되는 분부터 적용

②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불허 (관세법 §235)

현 행	개 정 안
■ 통관보류된 지적권 침해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자가 담보 제공 후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통관 가능	■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아래의 경우는 통관 불가 • 위조 또는 유사상표 부착 물품 •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물품

개정이유 한·미 FTA 합의사항으로 국제적인 지적권 강화추세에 부응하여 모든 수출입 물품으로 확대 적용

적용시기 ’08. 4. 1. 이후 수출입되는 분부터 적용

4-1-3) 세무서비스시장 개방근거 마련 (세무사법§4의3)

현행	개정안
■ 세무서비스시장 미개방 • 외국세무사의 세무대리 불가 *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대리업무 가능	■ 세무서비스시장 개방 • 외국세무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행하는 외국세법 및 외국조세제도에 대한 상담 업무 허용

개정이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적용시기 한·미 FTA 발효일부터 적용

4-1-4) 산업별 지원대책

1) 무역조정기업

①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 (조특법§33, §33의2)

현행	개정안
<신설>	■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 • 사업전환일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신설>	■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전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법인) • 양도소득세 50%감면(거주자)

* 무역조정기업 :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 (6월의 기간 동안 매출액·생산량이 25%이상 감소한 기업)

* 근거법률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07. 4제정)

개정이유 무역조정기업이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농업

① 농지은행의 임대위탁기능 강화를 통한 영농규모화 추진 (소득영§168의8)

현행	개정안
■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 농지법에 의해 소유가 인정되는 농지 • 종중소유 농지 •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 소유기간중 일정기간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 → 양도세를 60%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다음을 추가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한 농지 ※ 지원효과 : 양도세를 인하효과 기대(60% → 9~36%)

개정이유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금계산서 수문화 정착

적용시기 ’08. 1. 1. 이후 최초로 결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3) 제약업

①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25의3)

현행	개정안
<신설>	■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GMP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 공제율 : 투자금액의 7% • 일몰기한 : ’10. 12. 31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기준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의 구조·설비(Hardware)와 원료·자재 등의 구입, 제조·포장·출하

등 제조 및 품질관리(Software)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4)

- 개정이유**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 선진국 수준의 GMP 운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GMP 시설 개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08.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2]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4-2-1) 지방의 기업투자환경 조성

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조특법 §7등)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5~3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231개 기초자치단체를 4등급으로 구분하여 70%, 50%, 30%, 0%의 감면을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수도권 내</th> <th colspan="2">수도권 외</th> </tr> <tr> <th>제조업 지식기반 사업*</th> <th>기타</th> <th>제조업 지식기반 사업</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소기업</td> <td>20%</td> <td>10%</td> <td>30%</td> <td>10%</td> </tr> <tr> <td>중기업</td> <td>10*</td> <td>-</td> <td>15%</td> <td>5%</td> </tr> </tbody> </table>		구분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제조업 지식기반 사업*	기타	제조업 지식기반 사업	기타	소기업	20%	10%	30%	10%	중기업	10*	-	15%	5%	<p>〈등급별 감면율〉</p> <p>-4등급지역소재 소기업 10%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h>4등급</th> </tr> </thead> <tbody> <tr> <td>70%</td> <td>50%</td> <td>30%</td> <td>0</td> </tr> </tbody> </table>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70%	50%	30%	0
구분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제조업 지식기반 사업*	기타	제조업 지식기반 사업	기타																										
소기업	20%	10%	30%	10%																										
중기업	10*	-	15%	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70%	50%	30%	0																											
<p>* 엔지니어링,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음 10년간 등급별 감면율의 100%, 이후 5년간 50% 적용 ■ 대기업 지방사업장 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7년간 등급별 감면율 100%, 이후 3년간 50% 적용 																												

개정이유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또는 이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60·61)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광역외·광역시외 공장 이전 • 지원 내용 : 공장 양도차익의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본사 이전 • 지원 내용 : 본사 대지·건물 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특례 확대 : 공장 양도차익의 5년거치 5년분할 과세 • 과세특례 확대 : 본사 대지·건물 양도차익의 5년거치 5년분할 과세

개정이유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적용시기 '08.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2-2) 살기좋은 지방 생활여건 마련

① 지방이전 기업(공공기관 포함) 종업원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 (소득영\$15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내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취급 • 원칙 -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 지방이전 기업* 직원은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법 18조에 따른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보유 허용 기간 연장 - (좌동) • 5년

개정이유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지방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99의4)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 * 기존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소재지 : 광역시·수도권·투기지역 외 지역 • 면적 : 주택 45평(아파트 35평) 이하 대지 200평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주택취득가액 요건 상향조정 (7천만원→1.5억원) •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격요건(1억원 이하) 폐지

개정이유 도시민의 농촌이주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지방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 폐지는 '0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2-3) 지방혁신클러스터 육성기반 확충

①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이연 (조특법\$85의7, \$85의8 신설)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용 수용(협의매수 포함)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 행복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과세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 : 신공장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내국법인 :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 양도소득세 10%(채권보상분 15%) 감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도시 수준의 세제지원 • 공익사업 목적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개인)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개정이유 원활한 공익사업 수용을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수용분부터 적용

- 단,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07년 수용분에 대해서도 3년 내 신공장을 취득하는 등 요건충족시 적용

②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
(조특법§63의4)

현 행	개 정 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에 대해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허용 ※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금액 - 기업과 교육기관 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8)

개정이유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지방대학 간 산학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08.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지방대학 기부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63의4)

현 행	개 정 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비에 대하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포함하여 R&D설비투자 세액공제* 허용 ※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개정이유 수도권 대학에 집중* 되고 있는 기업의 현 물기부부를 지방 대학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방 대학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지원

* '05년의 경우 현물기부(2,700억원) 중 80%가 수도권 대학에 집중

적용시기 '08.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④ 토지보상자금의 안정적 관리 :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조특법§77)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보상분: 10% 감면 • 채권보상분: 15% 감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 만기보유 특약제결 등을 조건으로 감면율을 20%로 상향조정 - 다만, 채권조기매각 등 위반사실 발생시 감면세액 추징 ※ 만기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발행자 예탁제도) 마련

개정이유 유동성 관리를 위한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 유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07. 7. 6. 발표)의 일환

적용시기 '07. 7. 6. 이후 보상받는 분부터 적용

[4-3]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현 지원

① 제주도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조특법§121의8)

현 행	개 정 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4등급지역 소재 대기업의 제주도 이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간 70%, 그후 5년간 35% 감면적용 • 대기업이 제주도에 사업장 신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간 70%, 그후 3년간 35% 감면적용 • 일 물 : '12. 12. 31

개정이유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로의 육성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이전 ·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제주 내국인면세점 이용범위 확대
 (조특법 §121의13 등)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면세점 이용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40만원, 연 4회 ■ 주류구매 한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만원 한도 내에서 1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이용횟수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40만원, 연 6회 ■ 주류구매 한도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만원 한도 내에서 1병

개정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자금 조성 및 제주 관광산업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③ 제주도 내 골프장과 관련한 취득세 · 재산세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규정을 조례로 이관 (조특법§121의14)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내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 등록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특소세 면제 • 취득세 10% → 2% (5배중과 배제) • 건축물 · 토지재산세 : 분리과세 대상토지(4%)이지만 세율은 종합합산세율(0.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로 이관 <삭제> *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로 이관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내 골프장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이관하여 현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적용시기 '08. 1.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제도의 선진화

[5-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 납부한도* : 2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세목·납부한도는 필요시 시행령에 위임규정했다가 제도시행 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 **200만원 이하 설정시 종합소득세의 81%, 부가가치세의 80%, 관세의 98%가 납부대상에 포함 • 카드납부 수수료(1% 내외, 일종의 “convenience fee”)는 납세자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드 사용수수료 납부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국세수납대행기관 설립 필요 *미국의 경우 별도의 대행기관을 통해 국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수수료도 납세자가 부담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08. 1. 1.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결정)

[5-2]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5-2-1)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①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소득법 §34 · 5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15%, ('10년)20% * 종교단체는 논의중인 사후 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10%유지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소득법 §34.52)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대상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범위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기금 • 대학병원, 대한적십자병원 등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p>※ 일몰시한 : '09. 12. 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대상 단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자연환경자산 기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미술품 기부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특례기부금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73)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

개정이유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문화유산·자연환경 자산 기부, 유물·미술품 기부의 경우 현물 기부가 많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사회환원기부신탁 육성지원 (조특법§73)

현 행	개 정 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시 등에 사회환원기부신탁* (공익신탁전환조건부신탁) 설정시 당해 신탁자산을 특례기부금 기부로 보아 신탁설정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자가 사망시 자동적으로 공익법인에 기부되는 조건부 신탁 • 소득금액의 50%까지 위탁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되 3년간 이월공제 허용 • 신탁수익 지급시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정상과세 • 과세특례 대상 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 사망 또는 사전에 약정한 기간 이후 공익신탁으로 전환 -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 - 위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단체로 신탁기금이 귀속되지 않을 것 - 금전신탁에 한정

개정이유 기부방식 및 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 설정하는 신탁부터 적용

⑤ 기부펀드 육성지원 (조특법§91의8)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익 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을 투자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했다가 추후 기부금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펀드 수익 부분 비과세

개정이유 금융상품을 통한 기부확대 유도

적용시기 '08. 1. 1. 이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

⑥ 투명성을 갖춘 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상증법§16,§48)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취득 등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에 한해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 제한 완화 *공익법인 투명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계좌 개설 - 결산서 등 공시제도 이행 - 외부감사 제도 도입 - 매년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기업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 계열기업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산가액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 - 총자산가액의 50%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확대 유도

* 일본 : 발행주식총수의 50%, 미국 : 발행주식총수의 20%

적용시기 '08. 1. 1. 이후 주식 출연·취득분부터 적용

5-2-2)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①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상증법§51의2)

현행	개정안
<p><신설></p> <p>현재는 사회복지법인만 금융기관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토록 의무화</p> <p>*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수입·지출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출연금, 수익사업 운용수입 전입금 - 인건비, 임차료, 고유목적사업비(100만원 초과분) -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고유목적사업회계의 수입·지출 • 의무위반시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용금액의 0.5% • 전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명세서 작성·보관

개정이유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확보

적용시기 '08. 1.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기존 공익법인은 '08. 6. 30.까지 신고, 가산세부과는 '09. 1.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내실화 (상증법§50)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 세무확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중 다음법인 제외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는 공익법인(예:종교법인) -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 공익법인 • 매 2년마다 외부전문가* 3인의 세무확인 결과 보고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 세무확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 받은 재산의 운영 및수익 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 정부의 작성·비치의무의 준수 등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확인제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확인 대상 확대 : 자산 총액 10억원 이상 • 세무확인 주기 단축 : 매 2년 → 매 1년 • 외부전문가 축소(3인 → 2인) * 외부감사 적용시 세무확인 의무 면제 ■ 외부감사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산총액 30억원 이상 (종교·학교법인 제외) • 주기 : 매년 • 미이행시 : 가산세 없음 * 개정된 주식출연·취득제한 완화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에 한정하여 운용

개정이유 대규모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8.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화 (상증법§51의3)

현행	개정안
<p><신설></p> <p>* 학교법인 (사립학교법시행령 §14⑤) 결산보고서 등을 학교자제 홈페이지에 1년이상 공개</p> <p>* 학교법인 (사립학교법시행령 §14⑤) 결산보고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p>	<p>■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 공시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기부금 수입과 지출 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양식 제정 • 공시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공시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공시에 따른 시정요청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가산세 : 자산총액의 0.5%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8.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2-3)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관리 강화

① 기부자 : 부당공제자 검색시스템 구축 등 (소득법§73·80)

현행	개정안
<p>■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만원 이상 기부자 <p><신설></p> <p>■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에 대한 경정처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처분 •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 직접 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p><추가></p>	<p>■ 제출대상 단계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 100만원, ('09) 50만원 ('10) 금액제한 폐지 <p>■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시스템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실시 • 표본범위는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 기부자의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 기부금공제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직접 경정처분 허용 <p>- 허위*로 기부금 소득공제받은 경우</p> <p>* 허위증빙의 작성, 허위증빙의 수취 등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p>

개정이유 부당 기부금공제에 대한 관리·제재 강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 지출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공익법인 : 기부금영수증 보관범위 확대 등
(소득법§160의3, 법인법§112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수령단체의 영수증 발급내역* 5년 보관 범위 *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등 • 100만원 이상 기부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증 보관범위 확대 • ('09) 50만원('10) 금액제한 폐지 ■ 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 자료 세무관서 제출 의무화 * 제출양식 표준화 : 발급건수, 총금액, 사용내역 등

개정이유 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8. 1. 1. 이후 지급·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수증 보관범위 확대 : '09. 1. 1.)

③ 공익법인 : 허위영수증 발급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소득법§81, 법인법§76 등)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영수증 기재금액의 1% •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미보관액의 0.1% <신설> ■ 공익성기부금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정취소 •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어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시 • 공익목적 위반 사실을 주무부처의 장이 재경부장관에게 통보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 강화 - 영수증 기재금액의 2% - 미보관액의 0.2% ■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 공개(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예시 - 추정횟수 및 추정금액이 일정수준 이상 -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일정횟수 이상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명단공개이전에 해당 단체에 사전 소명 기회 부여 • 불성실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 지정취소이전에 당해 단체에 소명기회 부여 - 지정취소시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재지정 가능

개정이유 불성실기부금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 지급·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5-3] 알기 쉬운 세제·편한 세제 구축

5-3-1) 세금신고·납부 등 절차 간소화

①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국기법§7)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달지연시 납부기한 연장 • (요건) 고지서(독촉장 등) 도달일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 (납부기한)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달지연시 납부기한 연장 요건 완화 • (요건)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기한 도래 • (납부기한) 좌 동

개정이유 송달지연시 납부기한을 최소한 14일 보장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

<납부기한 연장 비교>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경과 후 도달 : 도달일로부터 14일 • 납부기한으로부터 7일 이내 도달 : 도달일로부터 14일 • 납부기한으로부터 8~14일 이내 도달 : 납부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도달일로부터 14일

적용시기 '08. 1. 1. 이후 송달되는 분부터 적용

② 연말정산간소화 대상 추가(소득영§216의3)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종) ※ 전체 소득공제항목 17종중 9종 • 보험료 • 교육비 • 의료비 • 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 퇴직연금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2종) ※ 전체 공제항목은 소상공인 공제 부금이 추가되어 18종 • 주택자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정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자료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등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자료집중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08.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법§143의6)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소득자 소득공제 신고 • 공적연금소득자는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 기한 : 다음연도 1월분 연금액 수령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신고 간소화 -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 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 연금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게재한 신고서 초안을 열람·승인하여 신고 종결 • 기한 :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개정이유 공적연금소득자의 연금소득 연말정산 편의 제고

적용시기 '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및 연말정산 시기 조정 (소득법§128)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제 대상기간 • 의료비·신용카드 :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 기타 항목(보험료 등)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 모든 항목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조정 •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개정이유 ■ 모든 소득공제의 공제대상기간을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운영

•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대상 소득자료 수집·구축 및 홈페이지 게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연말정산시기를 1개월 순연

적용시기 '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5-3-2) 납세협력비용 절감

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 (법인법§119)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 대상 :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 •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 미제출·누락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액면금액 2% (1월 이내 제출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코스닥 법인의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 • 대상 :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 현행 명의개서대행기관(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주식명의개서자료 제출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활용

개정이유 ■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경우 기업이 직접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주식변동 분부터 적용

② 지급조서 제출대상 조정 (소득영§214)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조서 제출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및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일직료·숙직료·여비·피복비 등

개정이유 소득과약의 실효성 및 사업자 납세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지급조서 제출 범위 조정

적용시기 '08.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 (소득영 §208의2, 법인영§158)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5년) • 적격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대상 : 1만원 초과 거래 * '07년 : 5만원, '08년 : 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경우 지출증빙 보관의무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카드)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자료를 통보받아 홈페이지에 수록 → 사업자는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 조회 가능

개정이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지출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폐지하여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08. 1. 1. 이후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5-3-3) 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

- 납세자가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
- 금년에 개정하는 11개 세법 및 시행령 중 총 326개 조문을 쉽게 개정(총 985개 조문 중 33%에 해당)
 - 어려운 용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쓰기, 복잡한 문장 체계 정리 등

〈주요 정비 사례〉

-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순화
 - 예) 발급내역 → 발급명세 (소득 §81)
 - 등록필증 → 등록증명서 (국기 §31③)
 - 감안하여 → 고려하여 (특소 §8①2)
 - 기간이 경과한 → 기간이 지난 (법인 §63①)
-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쉽게 고쳐쓰기
 - 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까지의 (국기 §18⑤)
- 한 문장 안에서 예외규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경우 별도의 문장으로 표현
 - 예) (법인영 §52의2)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동일한 법령에서 단일 용어가 다르게 해석되는 조항을 개정

예) (소득영 §51⑤2)에서의 '정상가액'의 의미는 '시가'이나 (소득영 §79①2)에서의 '정상가액'은 '시가±시가의 30%'로 규정되는 등 단일 용어가 다르게 해석되므로 (소득영 §51⑤2)의 정상가액을 '시가'로 개정

■ 기타 용어의 명확화 : 지급조서 →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5-4] 조세제도의 합리화

5-4-1)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 제도 보완

①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제공 예외 신설 (국징법§85의2)

현행	개정안
<p>■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p> <p>• 과세관청은 별도의 납세담보 제공 요구</p> <p>*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p> <p>** 재산의 압류유예, 공매절차 중지, 압류해제 등</p>	<p>■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p> <p>•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정리위원회"에서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p> <p>*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에 관한 사항, 체납세액 변제일정에 관한 사항 등</p>

개정이유 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는 담보제공 없이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적용시기 '08. 1. 1. 체납처분 유예 신청분부터 적용

②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국징법§31)

현행	개정안
<p>■ 압류금지재산</p> <p>•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의복·침대·가구·주방구, 3월간의 식료와 연료</p> <p>•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p> <p>• 의료·조산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p>	<p>■ 압류금지재산 추가</p> <p>•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p> <p>- 질병·재해 등에 대비하여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납입액 300만원 이하)</p> <p>- 3개월 이하 생계비, 자녀교육비·의료비 등에 해당하는 예금잔액(120만원 이하)</p> <p>-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을 예치한 예금 잔액(120만원) 등</p> <p>* 시행령으로 규정</p>

개정이유

■ 국민의 기본 생존권 보호

• 체납자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과 질병·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소액 보장성보험*은 기초생활보장수단인 점을 감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일부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우체국 보험금 및 환급금,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 소액보장성보험 등

적용시기

'08. 1. 1. 압류분부터 적용

③ 증가산금 적용대상 금액 상향조정(국징법§22①,②)

현행	개정안
<p>■ 증가산금* 적용대상</p> <p>• 체납세액 50만원 이상</p> <p>*매월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매월 0.12%를 가산(최대 60개월까지 적용)</p>	<p>■ 증가산금 적용대상 축소</p> <p>• 체납세액 100만원 이상</p>

개정이유

증가산금 적용대상 기준금액 50만원은 83년 이후 유지된 것으로 물가상승 등 고려하여 상향

적용시기

'08. 1. 1. 이후 적용

④ 독촉장 발부 최저 금액 설정 (국징법§23①,②)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장 등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 *제2차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 생략

개정이유 ■ 징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 국세기본법상 고지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고지를 생략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고, 행정비용 절감

적용시기 '08. 1. 1. 이후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분부터 적용

⑤ 불복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배제 (국기법§45의2,§5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세목(소득세·법인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진 신고(수정신고 포함) - 신고후 3년 내 경정청구 • 조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내 불복청구 또는 - 신고 후 3년 내 경정청구 * 불복청구와 경정청구 중복 적용소지 ■ 부과세목(상속·증여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내 불복청구 또는 • 신고 후 3년 내 경정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세목(소득세·법인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진신고 : 좌동 • 불복기간(90일) 이내에는 불복청구와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불복기간 경과 후에는 경정청구 제한

개정이유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재송을 통해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적용시기 '08. 1. 1.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범위 보완 (국기법§13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 ②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

개정이유 주택조합* 과 같이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는 개인(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으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

* 대법원(대법 2005 두 2656외 다수)는 주택조합 등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판단

적용시기 '08. 1. 1. 이후 시행

5-4-2) 재산과세제도의 보완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 (소득법§9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보유특별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5년 : 양도차익의 10% • 5년~10년 : 15% • 10년 이상 : 30% • 15년 이상 1세대1주택 : 45%* * 1세대1주택에만 적용하며, 토지 양도차익은 최대 30%까지만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씩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 10% • 4년 : 12% • 5년 : 14% • 6년 : 16% • 7년 : 18% • 8년 : 20% • 9년 : 22% • 10년 : 24% • 11년 : 26% • 12년 : 28% • 13년 : 30% • 14년 : 32% • 15년 이상 : 34%

개정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시기 '08.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
(소득법 §118의)

현 행	개 정 안
■ 해외부동산 양도시 적용세율 • 보유기간 2년 이상 : 9~36% • 1~2년 : 40% • 1년 미만 : 50%	■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9~36%로 단일화

개정이유 해외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③ 배우자 간 증여공제 확대 (상증법 §53)

현 행	개 정 안
■ 배우자 간 증여시 공제한도 • 3억원 ※ 상속공제 : Max[5억원, 법정지분내 실제상속액(30억원 한도)]	■ 공제한도 상향조정 • 6억원 *현행 고가주택 기준 ※ 배우자간 상속공제는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

개정이유 선진국의 사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
 * 미국, 영국은 배우자 간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하며, 프랑스의 경우 '08년 세제개편안에 배우자 간 상속·증여세 면제방안 포함

적용시기 '08. 1. 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④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 (상증법 §73)

현 행	개 정 안
■ 상속·증여세 물납 • 상속·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물납 대상재산 • 부동산 및 유가증권* 에 한함 * 국·공채, 주권, 채권 등	■ 물납제도 개선 • 상속·증여시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 *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허용

개정이유 물납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고손실 등의 문제점 개선

적용시기 '08. 1. 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5-4-3) 소득과세제도의 보완

① 전속계약금 수입시기 조정 (소득영§48)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 수입시기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단서 신설>	•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일시에 수령한 전속계약금에 대한 과세 합리화
 예) 전속계약금 5억원을 '08. 1에 일시에 받았으나 계약기간이 5년인 경우 세법상 수입시기는 매년 1억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

적용시기 '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4-4) 소비과세제도의 보완

① 특별소비세법 명칭 변경 (특소법§1)

현 행	개 정 안
■ 세목 : 특별소비세	■ 세목 : 개별소비세

개정이유 자동차, 유류 등 외부불경계를 발생시키는 재화 등에 대한 교정세적 기능으로 전환 되는 특별소비세 과세목적에 맞게 명칭 변경
 * 특소세 비중('06) : 유류(등유·중유 등 6개 품목) 72.9%, 자동차 20.4%, 과세장소 5.9%, 보석·귀금속 등 12개 품목 0.8%

적용시기 '08. 1. 1. 이후 적용

② 경정장 입장에 대한 특소세 과세 (특소법§1)

현 행	개 정 안
■ 특별소비세 과세장소 <신설> *경마장 500원, 경륜장 200원	■ 특별소비세 과세장소 추가 • 경정장 : 1회 입장 200원

개정이유 사행성 오락장소인 경마장, 경륜장 등과의 과세형평 고려

적용시기 '08. 1. 1.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부가법§17)

현 행	개 정 안
■ 매입세액 불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명확화 • 임차비용 추가

개정이유 승용차의 임차는 구입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 구입과 임차를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형평 시정

적용시기 '0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4-5)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의 보완

① 비거주연예인(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소득법§156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 현행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공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용역대가가 3천달러를 초과하면 원천징수 가능하나 →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불가 <p>다만, 외국연예법인이 연예인 등에게 대가지급시 당해 법인이 20% 원천징수해야 하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해 사실상 이행불가</p> <p>* 다른 조세조약에서는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대가지급시 20% 원천징수 가능</p>	<p><선원천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 외국 연예·체육법인*에게 연예인, 체육인의 제공대가 지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조약상 비과세규정에 불구하고 지급금액의 20% 원천징수 *비과세 외국 연예·체육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예인·체육인 공연등을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법인 <p><후정산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 외국 연예·체육법인이 연예인·체육인에게 대가지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예인 등에게 지급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국내 과세관청에 정산신청하면 - 국제청은 신고서 등 확인후 과다원천징수세액 환급

개정이유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사례방지

적용시기 '08.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계 적용방법 조정
(국조영§26)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지배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손금불산입 $\text{※ } \frac{\text{지급이자} \times \text{총차입금} - \text{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text{총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배수 - 금융업 : 6배, 비금융업 : 3배 	- 모든업종 : 3배

개정이유 일반업종과 은행업 등의 차입이자 손금인정 범위 일원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5-4-6) 관세제도의 선진화

①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관세법 §76관련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세 적용대상 • HS6단위 93개 품목 (5,052품목 중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세 적용대상 • HS6단위 75% 이상 (약 3,800여개)으로 확대

개정이유 개도국 지원 강화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적용시기 '08. 1. 1. 이후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

② 통관신속화를 위한 국제협력활동 증대 기반 마련
가. 안전성 우수업체를 외국과 상호인증
(관세법 §255의2)

현 행	개 정 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보안 관련 안전성이 우수한 수출입업체를 관세청장이 공인하여 통관절차상 혜택 부여 • 외국과 상호인증토록 하는 제도 도입

개정이유 물류관리 시스템 선진화

적용시기 '08. 4. 1. 이후부터 적용

나. 세관자료 표준화 및 상호교환근거 도입
(관세법 §255의3)

현 행	개 정 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하는 방식의 수출입신고항목 및 화물 식별번호 사용근거 도입

개정이유 통관제도 개선

적용시기 '08. 4. 1. 이후부터 적용

③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선

가.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가격신고 절차 간소화
(관세규칙 §2)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수입물품, 무세물품 등의 경우 가격신고 생략 가능 ■ 건별로 가격신고 • 수입신고건별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해서도 가격신고 생략 ■ 포괄신고제도 도입 • 동일물품을 동일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포괄하여 신고가능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비용 감소
적용시기 '08. 4. 1. 이후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

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시 과세가격 사전 확인제 도입(관세법 §37)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가격 가산금액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세관 등에 사전 심사 신청 가능 외국과 상호인증토록 하는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가격 산정이 어려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가격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확대 사후 추정시 가산세 면제

개정이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 확대를 통한 관세마찰 사전 제거
적용시기 '08. 4. 1. 이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

④ 보세공장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절차 간소화 (관세법 §189)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과세 신청 절차 신청시기 : 보세공장에 원재료 반입시 건별로 신청 원재료관리: 명문규정 없음 *실무상 사전신청된 원재료를 별도 구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과세 신청 절차 신청시기 : 단위제품별 포괄신청 허용 원재료관리 : 회계장부를 통한 사후 소요량 관리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08. 4. 1. 이후부터 적용

⑤ 반덤핑관세 부과절차 명확화 (관세영 §61등)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덤핑방지관세율 산정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 반덤핑협정* 권고규정 및 무역위원회 내부규정 등에 의해 결정 * 1994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재심사절차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덤핑률과 국내산업피해를 상쇄하는 수준을 비교하여 결정 (최소부과원칙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 추정시 가산세 면제 재심사절차에 대해서도 최초 반덤핑조사절차를 준용하도록 근거 마련

개정이유 규정 명확화를 통한 자의적 제도 운용 방지
적용시기 '08. 4. 1. 이후 신청되는 건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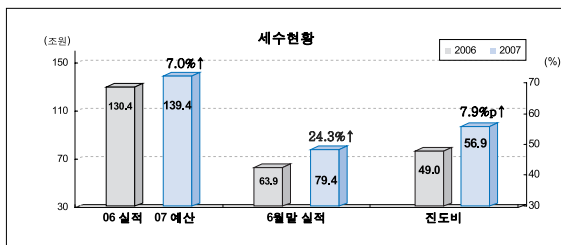
금년도 국세징수 실적 호조

* 이 자료는 2007년 9월 6일 국세청 징세과에서 발표한 「금년도 국세징수 실적 호조」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상반기 세수실적 및 연간전망

1. 상반기 세수실적

- 국세청(청장 전공표)의 2007년도 소관 세입예산 139.4조원 중 6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79.4조원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5조원(24.3%)이 증가되었으며,
 - 진도비는 56.9%로 전년(49.0%)보다 7.9%p 앞서가고 있는 것임



■ 주요 세목별 세수현황

(단위: 억원, %)

	'07년 예산	세수 실적			
		'06. 6월	'07. 6월	증감	
				금액	비율
총계	1,393,833	638,678	793,674	154,996	24.3
소득세	327,807	140,405	203,315	62,910	44.8
법인세	304,957	154,462	179,466	25,004	16.2
부가가치세	411,631	180,447	202,250	21,803	12.1
특별소비세	52,041	27,008	29,731	2,723	10.1
상속증여세	25,921	10,536	14,697	4,161	39.5
증권거래세	23,244	15,115	14,037	△1,078	△7.1
기타	248,232	110,705	150,178	39,473	35.7

2. 연간전망

- 현재의 세수진도를 감안할 때 연도 말까지의 세수는 전년 실적 대비 20조원 이상 증가한 1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금년 세입예산을 11조원(7.9%) 이상 초과하는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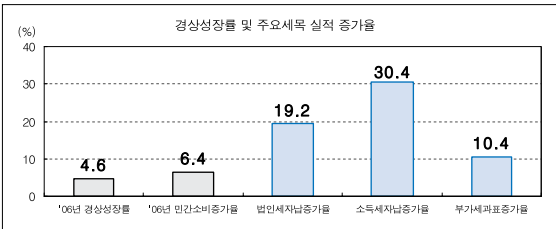
(단위: 조원, %)

'06.실적 (①)	'07.예산(②)	'07.전망 (③)	증감			
			예산 대비 (③/②)	전년 대비 (③/①)	증감액	증감률
130.4	139.4	150.4	11	20	15.3	7.9

- 2004년에는 세입예산 대비 3.5조원(△3.1%) 부족 징수되었고, 2005년에는 2.1조원 감액 추경하는 등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 2006년에는 세입예산을 2조 4천억원 초과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금년에도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금년에는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자진납부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및 민간소비지출 증가율보다 훨씬 상회하는 가운데 세수 호조가 지속되고 있음

* 3월 법인세 19.2% 증가, 5월 소득세 30.4% 증가, 7월 부가세 과세표준 10.4% 증가

* '06년 경상성장률 : 전년 대비 4.6% 증가, 민간소비지출 증가율 : 6.4% 증가



II. 금년 세수증가의 의미

1.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한 가운데 괄목할 세수 증가 달성

- 국세청은 2006년 7월부터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세정운영 방향으로 정하면서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고,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세무조사 건수 축소 및 세정지원

- 조사건수는 '05년 대비 '06년 13.5% 축소, '07년에는 23% 축소 예정
- 조사기간은 조사기준일 단축 설정, 조사기간 연장 통제, 조사성과 평가 등을 통해 20% 정도(평균 2~5일) 단축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확대
- 제조·수출 등 생산적 중소기업은 1년간 조사 유예
- 특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성장동력산업은 2~3년간 조사유예
- 지방소재 30년 이상 장기사업자(25,417명) 3년간 조사유예
- 지방소재 20년 이상 사업자(62,358명) 중 성실사업자 2년간 조사선정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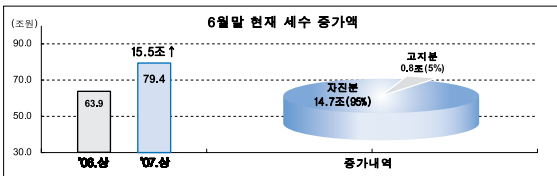
◇ 따뜻한 세정의 의미

-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고, 부조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정치적 중립마저 의심받던 과거의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로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 깨끗하고 투명하며 중립적이고 국민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다는 의미

- 이와 같이 금년의 세수증가는 적극적 징세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상의 간섭을 최소화한 가운데 따뜻한 배려와 세정지원을 하면서도 세수증가를 이끌어 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음

2.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로 자납세수 증가

- 국세청 소관 세수 중에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자진납부 세수와 체납정리·세무조사 등 고지서에 의해 징수하는 고지납부 세수가 있음
- 금년 상반기의 자진납부 세수가 전년보다 14.7조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수 증가액(15.5조원)의 대부분(95%)을 차지하는 반면에,
 - 고지에 의한 납부액은 전년보다 0.8조원 증가하는 데 그침



* 자진 납부액 : 58.9조원('06. 상반기) → 73.6조원('07. 상반기), 14.7조원(24.9%) 증가

3. 계층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통한 조세 수입 확보

- 세금은 세법이 정한 세율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임의로 세법에 정해진 이상의 세금을 징수할 수도 없고, 징수하여서도 안 됨
- 금년도 세수 증가의 상당부분은 그동안 법에 정하여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던 계층(예컨대, 고소득 자영업자)이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의 세금을 납부한 데 기인함

- 지속적인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추진대책의 결과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이 개선됨

* '07년 종합소득세(자영업자) 전년 대비 26.6% 증가, 근로소득세 8.7% 증가 전망

- 이는 공평과세를 통해 계층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며 조세 수입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

Ⅲ. 세수 호조의 원인 분석

※ 금년 세수 증가의 유형별 요인(예산 대비 11조원 이상 증가)

유형	금액	증가 사유
• 특수한 요인	3.1조원	'06.12월말 공휴일로 인한 연도이월 세수
• 제도개선 효과	4.4조원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증가(0.5조원) 실가과세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3.9조원)
• 납세성실도향상 (근로소득세 감소)	4.75조원 이상 (△1.25조원)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따른 세수증가 (갑근세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금년도 세수감소 효과 포함)

* '07년 종합소득세(자영업자) 전년대비 26.6% 증가, 근로소득세 8.7% 증가 전망

1.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에 따라 성실신고 수준 획기적 개선

-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따라 세정의 독자성 확보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을 탈권력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됨에 따라 국세청이 세정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외부의 영향력에 구애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을 집행함으로써 기업들의 성실납세 향상에 기여

■ 정치자금법 시행 등 정치개혁이 기업투명성 개선에 일조

-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이 원천 차단됨에 따라 세금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일부 기업의 잘못된 의식을 근원적으로 불식

⇒ 기업의 세금 탈루 의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실신고 수준을 향상시킴

■ 기업비자금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 수사와 처벌

- 대선자금 수사 이후 기업비자금에 대해서는 기업주를 포함하여 엄정하게 수사하여 기소하고, 법원도 엄정한 판결

⇒ 기업이 비자금 조성 의지를 가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것이 성실 세금 납부로 이어짐

2. 세무조사의 질적 혁신

■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범칙조사 강화

- 세무조사를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세무조사 건수는 대폭 축소하되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실시하고,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을 강화하여 “탈세=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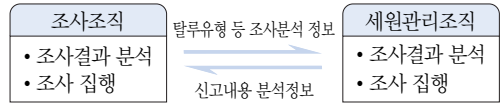
* 고발·통고처분 등 조세범 처벌 : 316건(05년)→369건(06년), 16.8% 증가

- 징벌적 가산세(40%) 도입으로 부당신고에 대한 기회비용을 가중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게 함

■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조사역량을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집중하여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엄정하게 실시’ 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함
- 조사 결과 밝혀진 탈루유형, 수법 등을 분석하

여 신고지도에 활용하고, 신고 후 불성실 혐의자를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조사와 세원관리의 연계 시스템을 가동함



■ ‘따뜻한 세정’ 운영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는 납세자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여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함

* 간편조사 건수 : 214건(05년) → 369건(06년), 72.4% 증가

■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과세로 인해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 부실과세방지시스템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음

* 불복청구 건수 : (06년) 13,559건, 전년 대비 △5.8%, (07.4) 4,140건,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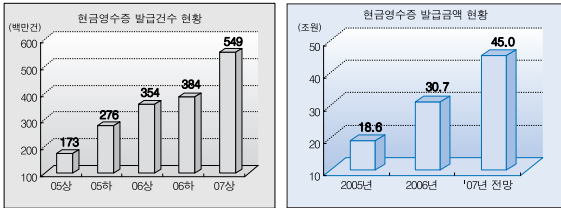
3. 그간의 세정혁신 노력이 성실신고의 결실을 맺음

■ 현금영수증 제도의 성공적 정착 등 조세행정의 선진화

- 광범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세원투명성 제고
- 신용카드에 이어 2005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 수입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함

* 신용카드 발급액 : 255.5조원(05) → 279조원(06,+9.2%) → 152.5조원(07. 상반기, +13.8%)

* 현금영수증 발급액 : 18.6조원(05) → 30.7조원(06,+65.1%) → 45조원(07.전망,+46.6%).



-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중 70.6%가 3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시에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현금영수증 제도가 소액현금 거래를 양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함('07. 상반기 549백만건)
- 2007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자진 납부세액 중 1.2조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반면에,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증가에 따라 0.2조원의 감소 혜택

* IMF, OECD, 중국, 인도 등에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싱가포르·베트남 등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할 정도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인정

- 고소득자영업자 과세 정상화
 - 업종별·거래유형별로 탈루혐의가 높은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를 5차례에 걸쳐 1,730명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총 8,856억원을 추징하였으며,
 - 고의적 탈세자 110명은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여 “탈세=범죄”라는 인식이 자영업자 전반에 확산됨으로써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실현함
 -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더욱 확대하되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음

4. 납세의식 향상

- 선진형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세금 바로 알기” 캠페인 적극 전개
 - 개청 이래 처음으로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책자를 발간하고, 여론 선도층을 직접 찾아가는 ‘세금 바로 알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함
 - 발간 2개월 만에 6만 여권이 판매되어 정부발간 책자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에 진입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가져옴
 - 세금은 ‘빼앗기는 것’이라는 부정적 개념에서 사회에 대한 ‘나눔과 기여의 실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확산시켜 선진형 납세문화를 조성함
 - 지난해 중부세 자진신고율 98.2%를 달성하는 밑거름으로도 작용함
 - 또한, 국민들이 잘못 알기 쉬운 세금 상식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 바로 알기」 이벤트를 실시함
 - 앞으로도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의식·문화로 바로 연결됨을 감안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임
- 성실납세자 우대 확대
 -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우대방안을 도입함

기존 우대내용

- ◇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
 - 세무조사 유예(2년)
 - 납세담보 면제(2년)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우대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2007년도 확대 내용

- ◇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
 - 납세담보면제 한도 확대 (2억 → 3억원)
 -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15억 → 30억원)
 - 조달청 물품구매 가격심사 우대
 -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 '07년 2월부터는 종전 고액성실납세자 본인에 게만 주어지던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동반가족에게도 확대하여 시행함
- 또한, 재정기여도 등이 탁월한 고액성실납세자(40명)에게는 「공항 귀빈실」 이용혜택을 최초로 부여함

■ 체납정리 인프라 확충

- '04년부터 도입된 금융조회와 명단공개 등 체납정리인프라를 활용하여 현금 위주 체납정리가 정착됨
- 올해부터 관세청과 협의하여 국세 고액체납자 출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정밀검사」를 실시
- '06년 청약 과열 사태를 빚은 판교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계약자 중 체납자에 대하여 분양권 등 압류하여 체납자 301명으로부터 26억원 현금징수와 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골프회원권 보유 자료를 체납처분에 활용하여 체납자 1,137명으로부터 242억원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함

■ 탄력적 체납처분으로 서민생활 보호

- 국가재정 확보 노력과 함께 영세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징세행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함
-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의 압류해제 등 조치

* 금융자산 탄력적 체납처분 실적

(06년) 8,709명, 659억원, (07. 1~6월) 2,080명, 515억원

-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거주 주택 및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매유예」 실시

* (06년) 444건, (07. 1~6월) 253건

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 등 납세편의 제고

-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법령, 질의회신, 심사·심판결정문, 판결문 등 국세관련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과세인프라'로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대국민서비스 기대효과

- 국세공무원이 과세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법령정보 부족에 따라 발생하던 부실 과세와 불복청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 '07. 4월 불복청구(4,140건) 전년 동기(4,890건) 대비 15.3% 감소

- 납세자가 국세공무원과 동등한 눈높이에서 세금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세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조세마찰을 줄이는 계기가 됨

IV. 앞으로의 세수관리 방향

1. 안정적 세수전망을 바탕으로 세정지원 확대

■ 세무조사 축소 및 조사유예 확대

- 제조·수출 등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성장동력산업 및 지방소재 장기사업자에 대해 조사유예 지속 실시

※ 금년 세수 증가의 유형별 요인(예산 대비 11조원 이상 증가)

• 생산적 중소기업	• 일자리 창출기업	• 성장동력산업
704개	162개	37개

※ 조사유예 실적('07년 상반기)

- 지방소재 30년 이상 사업자 조사유예 및 20년 이상 성실사업자 조사면제 조치를 수도권 소재 사업자로 확대 검토

- 내년도 시행예정인 근로장려세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면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

- 금년 8월 법인세 중간예납시 납기연장 1.5조원을 실시하였으며
- 앞으로도 부가세 예정신고·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시 자금사정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임

2.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바람직한 재정조달 기반 확립

- 2014년까지 ‘자영업자 소득과약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득과약 수준을 높여 계층간 세부담 형평성을 개선하면서
 -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모델”을 항구적으로 정착시키겠음
 - 또한, 고소득층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저소득층도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납부하는 국민개납(國民皆納)을 구현함으로써
 - 모든 국민이 소득에 적합한 세금을 부담하는 투명하고 선진화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함
- 금년과 같은 선순환의 성실신고 추세가 향후 2~3년간 지속되도록 노력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바람직한 재정조달 체제의 기반을 확실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음

세수추계 오차 발생원인과 개선방안

* 이 원고는 국정브리핑 2007년 9월 7일자 「세수실적 오해풀이 ①, ②」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 초과세수가 예산 대비 11조원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추계 오차비율도 7.5%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과도한 세수추계 오차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금년도 세수추계 오차 발생원인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세수추계 오차 예년보다 큰 이유

금년 세수추계 오차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일시적인 특이요인이 예년과 달리 크게 발생한 가운데 경기회복, 세원투명성 제고 대책 추진에 따른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등의 효과도 같이 맞물려 나타난 데 있다.

우선 전체 11조원의 초과세수 중 절반 이상인 6조원 가량은 일시적인 특이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첫 번째 특이요인은 지난해 말에 일요일이어서 교통세 등 말일 납기 세수가 금년 초에 납부됨에 따라 늘어난 3조 1,000억원 부분이다. 이는 2006년분 세수가 금년 세수에 반영된 것이다.

두 번째 특이요인은 금년부터 실거래가과세제도의 전면 시행,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지난해 말 이후 부동산 거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면서 양도세가 증가한 3조원 부분이다.

* 토지거래량(천건) : ('06. 1~10 평균) 214 → ('06. 11~12월 평균) 352(64.5%↑)

* 건물거래량(천건) : ('06. 1~10 평균) 135 → ('06. 11~12월 평균) 222(64.4%↑)

또 11조원 가운데 나머지 5조원은 경기회복, 과표양성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 들어 경기가 수출입증가세 지속, 내수부문의 개선 등으로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기업실적도 호전됨에 따라 법인세(+2.4조원)·배당소득세(+0.5조원)가 증가하고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증권거래세(+0.5조원)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등 그간의 세원투명성 제고대책 추진에 따른 과표양성화 등으로 전반적인 세입기반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숨겨졌던 자영업자의 세원이 양성화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 수출(전년동기비, 통관, %) : 2007년 1분기 14.6 → 2분기 14.4 → 7월 17.8 → 8월 14.4

* 주가지수 : 2006년 6월 1,249 → 2007년 6월 1,754

* 소득세자납증가율 : 2007년 6월 누계 30.4%

* 신용카드 사용액(조원) : 2006년 1~7월 124.0 → 2007년 1~7월 142.3(14.8%↑)

* 현금영수증 사용액(조원) : 2006. 1~6월 14.6 → 2007. 1~6월 20.9(43.2%↑)

결론적으로 볼 때 금년 세수추계 오차 확대는 일반적인 모형으로는 예측이 곤란한 일시적인 특이요인, 과표양성화 효과 등이 크게 좌우한 것을 알 수 있다.

세수추계 오차 어떤 수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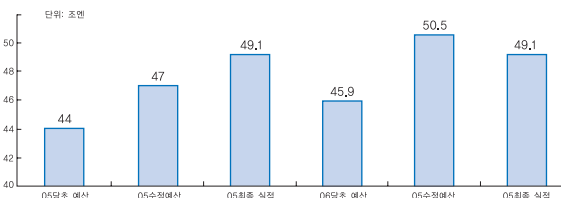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세수추계 오차는 성장률, 물가, 환율, 수출입, 이자율, 유가 등 거시경제지표의 정확한 전망에 좌우된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개방화 진전, 국제금융시장 발달로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시경제지표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거시지표 전망에 기초를 둔 세수추계도 어느 나라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실제로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주요국들의 경우 높은 오차율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05년 10.3%(실적 대비), 2006년 6.5%() 등의 오차율을 보였으며, 미국도 2000~2005년중 평균 7.8%의 오차율을 보인 바 있다. 인도 7.7%, 홍콩 9.1%, 대만 8.5%, 싱가포르 6.1% 등 주요 국가의 경우도 6%를 상회하는 오차비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평균
7.80	1.33	0.94	7.72	6.48	5.72	8.53	6.13	9.14	2.50	5.63

대상기간 : 미국('00~'05), 영국('01/'02~'05/'06), 호주('00/'01~'05/'06), 인도('98/'99~'05/'06), 일본('00~'06), 중국('00~'03), 대만('03~'06), 싱가포르('01~'05), 홍콩('01~'06), 뉴질랜드('90~'03)

일본의 세수추계 오차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연도별로 등락은 보였으나 과거 5년간 1.8%, 과거 10년간 2.6%의 오차율을 나타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외환위기가 있었던 '98년 세수가 13.9% 급감하였으며, 그 반사효과로 '00년에는 16.6%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결국 우리나라 과거의 오차비율, 외국의 오차비율을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의 세수추계 모형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의 경우도 단순히 수치상으로는 외국과 비슷한 7.5%를 나타냈으나, 예측이 곤란한 우발적 요인을 감안할 경우 통상적인 오차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07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일시적 특이요인을 제외할 경우 7.5%에서 3.4%로 예년 수준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 과표양성화 등 예측곤란한 상황까지 감안하면 더 낮은 오차율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수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첫째, 조세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세수추계 모형을 개발하고 있으며, 단년도 추계방식도 개선중에 있다. 특히, 금년도 추계오차가 컸던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목을 중심으로 추계방법 개선을 마련중에 있다. 아울러, '08년 세입예산안 편성시에 중장기 모형 등을 통해 개발한 회귀식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수추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둘째, 세수추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지표 전망에 대해서도 거시경제 Task Force 회의를 통해 여러 연구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세수추계 Task Force 회의를 통해 조세연구원, 국회에 산정정책처, 국세청, 관세청 등 여러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각기 다른 거시·미시모형,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세수추계한 결과를 감안하여

전망하고 있다.

셋째, 일본 등 선진국과도 정보를 긴밀히 교류하여 선진적인 세수추계 기법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OECD의 세수추계 관련 회의에도 적극 참석하여 각국의 세수추계 기법과 개선사례 등에 대한 검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초과세수, 어떻게 활용되나?

국민들의 성실한 신고에 의해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정부입장에서는 소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재정적자로 인해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재정여건, 금년 초과세수가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항구적인 감세보다는 국가채무 상환에 최대한 사용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우선 '07년 예산에서 계획되었던 적자국채(8.0조원)중 아직 미발행분(1.3조원)은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머지 초과세수(9.7조원)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후 잔액을 최대한 공적자금 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초과세수를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하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08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2.9%에서 32.2%까지 0.7%p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법(제 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 처분절차〉

- ① 지방교부세 정산 : 내국세 초과징수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초과징수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 내국세 초과징수액의 19.4%, 교육세 초과징수액
- ② 공적자금 상환 : 교부금 정산 후 잔액의 30% 이상

- ③ 국가채무 상환 : 공적자금 상환 후 잔액의 30% 이상
- ④ 추경편성 : 자연재해, 경기침체, 법령에 따른 지급이 필요한 경우 편성가능
- ⑤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2007년 세수초과액 및 활용방안

2007년 세수초과액	2007년	2008년(2007년 결산 후)			
	적자국채 미발행	지방교부세 정산 등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	08년에 세입에 이입
11.0조원	1.3조원	11.0조원	11.0조원	11.0조원	11.0조원

이와 함께 경기회복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으로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없이도 세입기반이 확충되었기 때문에 그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하고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2007년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3.5조원 수준의 세금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제감면액의 약 80%는 근로자, 자영자, 중소기업 등 중산·서민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세제개편 주요내용〉

- 소득세 과표구간 20~10% 상향조정 (△1.1조원)
-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1.0조원)
-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0.7조원)
- 등유세율 인하 (△0.3조원) 등

이울러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해 수립한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여력을 배분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확대, 소외계층에 대

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실행하는 한편, 연구개발(R&D) 투자 및 고등교육 투자 확대,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추진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보완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큰 폭의 감세는 곤란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는 우선적으로 적자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을 위한 증가하는 재정수요와 금년의 초과세수가 일시적인 특이요인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항구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큰 폭의 감세는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이 경쟁상대국이나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전체 초과세수 11조원중 6조원 가량이 전년도 이월세수, 거래량 급증에 따른 양도세 등에 기인

* 적자국채 발행(조원) : 2003년 3.0 → 2004년 2.5 → 2005년 9.0 → 2006년 8.0 → 2007년 6.7

* 국가채무비율(%) : 2003년 22.9 → 2004년 26.1 → 2005년 30.6 → 2006년 33.4

〈재정경제부 윤영선 조세기획심의관〉



재정통계

- 연도별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총괄내역
- 특별회계별 예비비 사용실적
- 특별회계 세출 불용실적 추이
- 연도별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추이

1. 연도별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총괄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예비비 예산액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결정 잔액
1961	990	370	230	118	22
1962	1,164	526	458	15	53
1963	1,122	359	326	5	27
1964	1,220	877	844	-	33
1965	1,243	1,003	969	-	34
1966	1,120	460	428	-	32
1967	1,789	897	855	-	42
1968	2,910	2,232	1,925	-	307
1969	5,439	3,373	3,155	26	192
1970	5,584	2,349	2,094	75	180
1971	5,180	2,067	2,021	-	46
1972	6,232	2,324	2,153	9	162
1973	5,994	7,521	7,396	36	89
1974	6,480	11,104	10,878	-	226
1975	12,309	21,266	21,190	-	76
1976	12,990	12,780	12,046	371	363
1977	18,140	4,233	4,084	76	73
1978	13,542	2,685	2,657	5	23
1979	14,916	3,070	2,999	22	49
1980	23,847	15,279	15,261	-	18
1981	31,217	158	81	-	77
1982	34,115	3,207	3,207	-	-
1983	51,849	7,712	7,482	-	230
1984	19,809	8,775	8,501	-	274
1985	23,799	10,126	9,888	-	238
1986	33,513	-	-	-	-
1987	26,624	-	-	-	-
1988	29,654	4,578	4,575	-	3
1989	40,929	22,500	22,499	-	1
1990	44,256	27,347	27,347	-	-
1991	45,062	41,007	39,615	685	707
1992	87,929	74,042	66,828	-	7,214
1993	132,074	-	-	-	-
1994	128,482	1,154	1,154	-	-
1995	119,425	2,339	2,248	-	91

연도	예비비 예산액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결정 잔액
1996	23,139	-	-	-	-
1997	315,720	30,328	30,328	-	-
1998	529,347	4,565	3,417	298	851
1999	179,233	284	284	-	-
2000	101,159	-	-	-	-
2001	96,290	3,854	3,854	-	-
2002	14,860	-	-	-	-
2003	51,106	325	319	-	6
2004	44,722	4,140	4,136	-	4
2005	75,292	5,618	5,610	-	8

자료 : 대한민국정부, 『예비비사용총괄서』, 각 연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결산개요, 각 연도.

2. 특별회계별 예비비 사용실적

(단위 : 백만원)

		경제개발 (경제부흥)	자금관리	문화재관리	국립대학교부속병원	국유임야관리	공무원연금
1961	지출결정액	25					
	지출액	21					
1962	지출결정액						1
	지출액						1
1963	지출결정액	99					2
	지출액	84		5			2
1964	지출결정액	35		2			1
	지출액	33		2			1
1965	지출결정액	252		6			1
	지출액	251		6			1
1966	지출결정액			7	3		93
	지출액			7	2	26	93
1967	지출결정액			10	20	19	159
	지출액			10	20		159
1968	지출결정액			7	10		340
	지출액			7	10		340
1969	지출결정액			17	2		488
	지출액			17	2		435
1970	지출결정액			42	36		34
	지출액			42	28		34
1971	지출결정액			16	31	30	16
	지출액			16	31	30	11
1972	지출결정액			178	124	27	12
	지출액			166	100	27	11
1973	지출결정액	3,261	513	5	25	27	1,823
	지출액	3,261	513	5	24	27	1,823
1974	지출결정액	8,963		91	157	100	6
	지출액	8,791		84	145	91	4
1975	지출결정액	18,473	29	112	6	131	
	지출액	18,473	25	85	6	112	
1976	지출결정액	7,324	1,734	25		30	2,200
	지출액	6,951	1,727	24		30	1,931
1977	지출결정액		401				
	지출액		401				
1978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9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0	지출결정액						10,359
	지출액						10,341
1981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2	지출결정액						
	지출액						

2. 특별회계별 예비비 사용실적 <계속>

(단위 : 백만원)

		경제개발 (경제부흥)	자금관리	문화재관리	국립대학교부속병원	국유임야관리	공무원연금
1983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4	지출결정액					277	
	지출액					277	
1985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6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7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8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9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0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1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2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3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4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5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6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7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8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9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0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1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2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3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4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5	지출결정액						
	지출액						

2. 특별회계별 예비비 사용실적 <계속>

(단위 : 백만원)

		군인연금	원호	국영TV방송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군용시설교외이전	정부청사조정
1961	지출결정액						
	지출액						
1962	지출결정액						
	지출액						
1963	지출결정액		1				
	지출액		1				
1964	지출결정액		8	1			
	지출액		8	1			
1965	지출결정액	0	24	2			
	지출액	0	23	2			
1966	지출결정액		22	7			
	지출액		22	7			
1967	지출결정액		5	20	39		69
	지출액		5	20	39		47
1968	지출결정액			31	14		90
	지출액			31	13		77
1969	지출결정액		14	12	14		560
	지출액		14	12	14		552
1970	지출결정액	594		45	30	166	243
	지출액	491		45	30	166	199
1971	지출결정액			141		5	19
	지출액			141		5	10
1972	지출결정액	129		353	181		97
	지출액	103		288	181		97
1973	지출결정액	250	3		142	238	
	지출액	220	3		139	236	
1974	지출결정액		184		168		278
	지출액		184		168		278
1975	지출결정액		190		1,316		501
	지출액		190		1,314		499
1976	지출결정액		21		634		
	지출액		21		634		
1977	지출결정액		899		280	487	
	지출액		890		270	486	
1978	지출결정액				155		
	지출액				150		
1979	지출결정액	164			183		
	지출액	164			183		
1980	지출결정액	3,748					
	지출액	3,748					
1981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2	지출결정액						
	지출액						

2. 특별회계별 예비비 사용실적 <계속>

(단위 : 백만원)

		군인연금	원호	국영TV방송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군용시설교외이전	정부청사조정
1983	지출결정액				6,778		
	지출액				6,574		
1984	지출결정액				8,173		
	지출액				7,899		
1985	지출결정액				10,126		
	지출액				9,888		
1986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7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8	지출결정액				4,153		
	지출액				4,153		
1989	지출결정액				20,000		
	지출액				19,999		
1990	지출결정액				26,970		
	지출액				26,970		
1991	지출결정액	1,209			34,188		
	지출액	726			34,188		
1992	지출결정액	21,649			50,348		
	지출액	20,817			43,966		
1993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4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5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6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7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8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9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0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1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2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3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4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5	지출결정액						
	지출액						

2. 특별회계별 예비비 사용실적 <계속>

(단위 : 백만원)

		사법시설등	국립의료원	서울대학교시설확충	국립종축장관리	양곡관리	전매사업
1961	지출결정액						24
	지출액						21
1962	지출결정액					30	31
	지출액					20	28
1963	지출결정액					8	57
	지출액					8	55
1964	지출결정액					5	176
	지출액					5	171
1965	지출결정액					72	141
	지출액					71	128
1966	지출결정액					15	120
	지출액					15	118
1967	지출결정액					77	37
	지출액					73	36
1968	지출결정액		2			715	7
	지출액		2			596	7
1969	지출결정액		15			30	217
	지출액		15			29	171
1970	지출결정액					330	612
	지출액					299	556
1971	지출결정액					46	517
	지출액					40	517
1972	지출결정액		25		14	114	833
	지출액		16		14	112	827
1973	지출결정액	167		21		64	244
	지출액	123				64	244
1974	지출결정액	31	79		108	213	
	지출액	31	79		100	213	
1975	지출결정액	2	10	87			
	지출액	2	10	87			
1976	지출결정액	48	20	27			43
	지출액	47	20	27			43
1977	지출결정액						811
	지출액						811
1978	지출결정액						943
	지출액						943
1979	지출결정액						663
	지출액						663
1980	지출결정액						184
	지출액						184
1981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2	지출결정액						3,207
	지출액						3,207

2. 특별회계별 예비비 사용실적 <계속>

(단위 : 백만원)

		사법시설등	국립의료원	서울대학교시설확충	국립중추장관리	양곡관리	전매사업
1983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4	지출결정액						325
	지출액						325
1985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6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7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8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9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0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1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2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3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4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5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6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7	지출결정액					30,328	
	지출액					30,328	
1998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9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0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1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2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3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4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5	지출결정액						
	지출액						

2. 특별회계별 예비비 사용실적 <계속>

(단위 : 백만원)

		철도사업(교통사업)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	국민복지연금	채신보험	정부차관자금관리	청구권자금관리 ¹⁾
1961	지출결정액	41					
	지출액	27					
1962	지출결정액	328	3				
	지출액	285	3				
1963	지출결정액	145					
	지출액	136	0				
1964	지출결정액	293	3				
	지출액	279	3				
1965	지출결정액	226	1				
	지출액	211	1				
1966	지출결정액	41	1				
	지출액	37	1				
1967	지출결정액	13	8			10	335
	지출액	11	8			7	332
1968	지출결정액	75	15			5	787
	지출액	56	14			5	655
1969	지출결정액	302	5				1,584
	지출액	229	4				1,556
1970	지출결정액		56				
	지출액		51				
1971	지출결정액	383	71				
	지출액	382	65				
1972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3	지출결정액	125					
	지출액	105					
1974	지출결정액	250	63				
	지출액	250	63				
1975	지출결정액		39				
	지출액		39				
1976	지출결정액	130					
	지출액	89					
1977	지출결정액	856					
	지출액	727					
1978	지출결정액	1,054					
	지출액	1,035					
1979	지출결정액	672					
	지출액	639					
1980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1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2	지출결정액						
	지출액						

2. 특별회계별 예비비 사용실적 <계속>

(단위 : 백만원)

		철도사업(교통사업)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	국민복지연금	채신보험	정부차관자금관리	청구권자금관리 ¹⁾
1983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4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5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6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7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8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9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0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1	지출결정액	1,014					
	지출액	936					
1992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3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4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5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6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7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8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9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0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1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2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3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4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5	지출결정액						
	지출액						

2. 특별회계별 예비비 사용실적 <계속>

(단위 : 백만원)

		농림부	건설부	중기사업	대중자금	국토건설사업	부정축재처리자금
1961	지출결정액					256	8
	지출액					141	5
1962	지출결정액				30		6
	지출액				30		6
1963	지출결정액						4
	지출액						2
1964	지출결정액						0
	지출액						0
1965	지출결정액						2
	지출액						2
1966	지출결정액						
	지출액						
1967	지출결정액	22					
	지출액	21					
1968	지출결정액	20	119	20			
	지출액	20	56	1			
1969	지출결정액	1,584		11			
	지출액	1,556		11			
1970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1	지출결정액			137			
	지출액			137			
1972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3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4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5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6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7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8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9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0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1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2	지출결정액						
	지출액						

2. 특별회계별 예비비 사용실적 <계속>

(단위 : 백만원)

		농림부	건설부	중기사업	대총자금	국토건설사업	부정축재처리자금
1983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4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5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6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7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8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9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0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1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2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3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4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5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6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7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8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9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0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1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2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3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4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5	지출결정액						
	지출액						

2. 특별회계별 예비비 사용실적 <계속>

(단위 : 백만원)

		귀속재산처리	구황실재산관리	국토건설단	재정자금운용	재정투융자	특허관리
1961	지출결정액						
	지출액						
1962	지출결정액	38	6				
	지출액	38	5				
1963	지출결정액	3		0	6		
	지출액	1			0		
1964	지출결정액				0		
	지출액				0		
1965	지출결정액				50		
	지출액				50		
1966	지출결정액						
	지출액						
1967	지출결정액						
	지출액						
1968	지출결정액						
	지출액						
1969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0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1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2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3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4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5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6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7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8	지출결정액						
	지출액						
1979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0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1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2	지출결정액						
	지출액						

2. 특별회계별 예비비 사용실적 <계속>

(단위 : 백만원)

		귀속재산처리	구황실재산관리	국토건설단	재정자금운용	재정투융자	특허관리
1983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4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5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6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7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8	지출결정액						
	지출액						
1989	지출결정액					2,500	
	지출액					2,500	
1990	지출결정액						377
	지출액						377
1991	지출결정액					2,400	
	지출액					2,400	
1992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3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4	지출결정액						388
	지출액						388
1995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6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7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8	지출결정액						
	지출액						
1999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0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1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2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3	지출결정액						
	지출액						
2004	지출결정액						3,659
	지출액						3,658
2005	지출결정액						4,768
	지출액						4,768

2. 특별회계별 예비비 사용실적 <계속>

(단위 : 백만원)

		등기	교도작업	에너지및자원	통신사업	조달	책임운영기관	합계
1961	지출결정액					15		370
	지출액					15		230
1962	지출결정액				46	8		526
	지출액				37	6		458
1963	지출결정액				33			359
	지출액				32			326
1964	지출결정액				350	2		877
	지출액				340	2		844
1965	지출결정액		2		222	4		1,003
	지출액		2		219	4		969
1966	지출결정액		3		105	43		460
	지출액		3		81	42		428
1967	지출결정액				63	6		897
	지출액				63	6		855
1968	지출결정액		19		95			2,232
	지출액		19		92			1,925
1969	지출결정액				100	2		3,373
	지출액				92	2		3,155
1970	지출결정액		38		117	8		2,349
	지출액		38		110	7		2,094
1971	지출결정액		72		561	22		2,067
	지출액		72		554	10		2,021
1972	지출결정액				197	40		2,324
	지출액				191	20		2,153
1973	지출결정액		219		392			7,521
	지출액		219		389			7,396
1974	지출결정액		192		155	65		11,104
	지출액		192		155	52		10,878
1975	지출결정액		274		39	58		21,266
	지출액		274		39	36		21,190
1976	지출결정액		346		197			12,780
	지출액		322		178			12,046
1977	지출결정액				494	5		4,233
	지출액				494	5		4,084
1978	지출결정액				500	33		2,685
	지출액				500	29		2,657
1979	지출결정액				1,317	71		3,070
	지출액				1,317	33		2,999
1980	지출결정액				988			15,279
	지출액				988			15,261
1981	지출결정액				158			158
	지출액				81			81
1982	지출결정액							3,207
	지출액							3,207

2. 특별회계별 예비비 사용실적 <계속>

(단위 : 백만원)

		등기	교도작업	에너지및자원	통신사업	조달	책임운영기관	합계
1983	지출결정액				934			7712
	지출액				908			7,482
1984	지출결정액							8,775
	지출액							8,501
1985	지출결정액							10,126
	지출액							9,888
1986	지출결정액							0
	지출액							0
1987	지출결정액				425			0
	지출액				422			0
1988	지출결정액							4,153
	지출액							4,153
1989	지출결정액							22,500
	지출액							22,499
1990	지출결정액				2,196			27,347
	지출액				1,365			27,347
1991	지출결정액				2,045			38,811
	지출액				2,045			38,250
1992	지출결정액							71,997
	지출액							64,783
1993	지출결정액	766						0
	지출액	766						0
1994	지출결정액				2,339			1,154
	지출액				2,248			1,154
1995	지출결정액							0
	지출액							0
1996	지출결정액							0
	지출액							0
1997	지출결정액				4,565			30,328
	지출액				3,417			30,328
1998	지출결정액			284				4,565
	지출액			284				3,417
1999	지출결정액							284
	지출액							284
2000	지출결정액			3,854				0
	지출액			3,854				0
2001	지출결정액							3,854
	지출액							3,854
2002	지출결정액							0
	지출액							0
2003	지출결정액					325		325
	지출액					319		319
2004	지출결정액				105	344	32	4,140
	지출액				105	342	32	4,136
2005	지출결정액				511	312	27	5,618
	지출액				511	305	26	5,610

주 : 1) 1967~69년도는 수산청 소관분 포함.

1. 1986, 1987, 1993, 1996, 2000, 2002연도는 예비비 사용액이 없음.

2. 경제개발의 경제부흥은 61년부터 65년까지 집행되었고, 철도사업의 교통사업은 61년부터 66년까지 집행됨.

3. 통신사업의 2004, 2005는 정보통신부문임.

4. 재정투융자 이후는 2005년 현재 남아있는 특별회계 계정임.

자료 : 대한민국정부, 『예비비사용총괄사』, 각 연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결산개요, 각 연도.

3. 특별회계 세출 불용실적 추이

(단위 : 1948~61 백만원, 1962~2005 백만원, %)

연도	세출예산현액(A)	세출불용액(B)	불용비율(B/A)
1948	244	227	93
1949	1,943	687	35.4
1950	3,745	734	19.6
1951	16,312	3,360	20.6
1952	55,661	4,041	7.3
1953	173,614	30,011	17.3
1954	492,958	50,448	10.2
1955	1,219,891	150,354	12.3
1957	1,228,532	194,805	15.9
1958	1,037,133	186,947	18
1959	794,975	100,292	12.6
1960	740,134	165,061	22.3
1961	761,637	183,051	24
1962	96,458	11,161	11.6
1963	118,512	11,193	9.4
1964	129,232	16,101	12.5
1965	143,290	12,611	8.8
1966	224,939	15,522	6.9
1967	268,332	22,955	8.6
1968	366,421	33,696	9.2
1969	535,833	24,672	4.6
1970	494,478	32,672	6.6
1971	616,610	54,496	8.8
1972	813,378	60,368	7.4
1973	789,906	46,036	5.8
1974	1,045,983	32,326	3.1
1975	1,786,113	76,281	4.3
1976	2,262,998	130,251	5.8
1977	1,945,137	100,704	5.2
1978	2,457,096	142,697	5.8
1979	3,202,982	187,588	5.9
1980	4,554,175	275,873	6.1
1981	6,229,981	694,096	11.1
1982	5,271,551	431,670	8.2
1983	5,848,467	817,301	14
1984	6,333,479	323,316	5.1

연도	세출예산현액(A)	세출불용액(B)	불용비율(B/A)
1985	6,373,537	259,328	4.1
1986	7,342,306	316,258	4.3
1987	7,747,315	2,524,191	32.6
1988	7,854,723	436,202	5.6
1989	11,799,491	427,371	3.6
1990	12,297,884	539,697	4.4
1991	16,134,867	676,803	4.2
1992	19,414,528	767,876	4
1993	25,538,329	2,090,036	8.2
1994	35,608,216	1,390,606	3.9
1995	42,486,141	1,957,751	4.6
1996	48,105,337	1,565,983	3.3
1997	53,718,915	2,816,825	5.2
1998	63,903,894	5,644,472	8.8
1999	69,493,584	5,849,955	8.4
2000	70,253,365	3,185,262	4.5
2001	68,830,403	2,067,162	3
2002	72,208,340	3,696,950	5.1
2003	78,718,814	3,251,225	4.1
2004	72,870,626	5,047,131	6.9
2005	63,431,833	3,842,764	6.1

자료 : 재무부, 『대한민국정부결산관계총계자료』, 제3집, 1961.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각 연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결산개요, 각 연도.

4. 연도별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추이

(단위 : 1949~51 백만원, 1952~61 백만원, 1962~2005 백만원)

	예산액(A)	세입결산액 (수납액)(B)	세출결산액 (지출액)(C)	세계잉여금 (D=B-C)	이월액 (E)	순잉여금 (F=D-E)
1949	196,695	128,840	124,801	4,039	1,191	2,848
1950	372,902	270,831	260,312	10,519	40,666	-30,147
1951	1,576,007	1,342,732	1,291,932	50,800	1,337	49,463
1952	55,496	50,707	47,842	2,865	2,567	298
1953	170,826	144,836	137,830	7,006	5,773	1,233
1954	487,183	318,264	296,025	22,239	146,485	-124,246
1955	1,071,665	852,193	728,261	123,932	341,276	-217,344
1957	969,614	994,043	776,958	217,085	256,769	-39,684
1958	780,850	855,124	686,260	168,864	163,925	4,939
1959	631,050	672,448	598,282	74,166	96,400	-22,234
1960	643,733	690,464	540,074	150,390	35,787	114,603
1961	725,849	643,574	564,602	78,972	13,983	64,989
1962	98,241	86,409	80,147	6,262	4,967	1,295
1963	112,943	112,518	106,548	5,970	592	5,378
1964	127,822	120,562	112,367	8,195	764	7,431
1965	142,452	138,175	130,133	8,042	546	7,596
1966	224,281	216,695	208,632	8,063	784	7,279
1967	267,507	260,963	243,205	17,758	2,172	15,586
1968	364,174	338,662	327,505	11,157	5,195	5,962
1969	530,521	520,514	503,761	16,753	7,400	9,353
1970	486,013	482,810	458,814	23,996	2,992	21,004
1971	611,263	570,247	549,331	20,916	12,782	8,134
1972	797,695	768,797	744,133	24,664	13,889	10,775
1973	769,132	770,118	734,225	35,893	9,645	26,249
1974	1,024,114	1,050,376	989,096	61,281	24,561	36,720
1975	1,742,055	1,750,013	1,686,340	63,673	23,492	40,181
1976	2,227,460	2,172,899	2,068,929	103,970	63,819	40,151
1977	1,922,642	1,936,189	1,821,613	114,576	22,820	91,756
1978	2,397,190	2,375,498	2,282,018	93,480	32,381	61,099
1979	3,165,977	3,033,403	2,927,548	105,855	87,846	18,009
1980	4,454,901	4,308,815	4,207,953	100,864	70,349	30,511
1981	6,157,906	5,587,095	5,458,413	128,682	77,472	51,210
1982	5,223,652	4,972,444	4,779,254	193,189	60,627	132,562
1983	5,786,901	5,101,673	4,977,139	124,535	54,027	70,508
1984	6,253,984	6,184,450	5,954,767	229,683	55,396	174,287

4. 연도별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추이 (계속)

(단위 : 1949~51 백만원, 1952~61 백만원, 1962~2005 백만원)

	예산액(A)	세입결산액 (수납액)(B)	세출결산액 (지출액)(C)	세계잉여금 (D=B-C)	이월액 (E)	순잉순잉여금 (F=D-E)D-E)
1985	6,316,157	6,325,621	6,059,993	265,628	54,216	211,412
1986	7,210,059	7,148,388	6,957,714	190,674	68,334	122,340
1987	7,630,203	5,357,124	5,155,889	201,235	67,235	134,000
1988	7,732,205	7,251,065	7,046,945	204,120	371,576	-167,456
1989	11,419,196	11,487,053	10,949,347	537,706	422,772	114,934
1990	11,773,144	11,830,349	11,046,124	784,225	712,063	72,162
1991	15,283,507	15,790,798	14,713,736	1,077,062	744,328	332,734
1992	18,588,647	18,270,263	17,089,804	1,180,459	1,556,849	-376,390
1993	23,962,283	24,169,006	22,303,818	1,865,188	1,144,475	720,713
1994	34,309,365	35,720,658	32,489,095	3,231,563	1,728,515	1,503,048
1995	40,600,119	42,437,038	38,132,456	4,304,582	2,395,934	1,908,648
1996	45,611,326	48,251,141	43,559,004	4,692,137	2,980,350	1,711,787
1997	50,692,231	51,162,263	46,567,390	4,594,873	4,334,700	260,173
1998	58,911,011	57,925,699	54,232,417	3,693,282	4,027,005	-333,723
1999	64,840,375	65,704,456	61,670,624	4,033,832	1,973,006	2,060,826
2000	67,775,242	69,090,655	64,787,524	4,303,131	2,280,579	2,022,552
2001	66,065,991	66,931,766	63,070,213	3,861,553	3,693,029	168,524
2002	67,817,458	70,003,900	64,365,800	5,638,100	4,145,600	1,492,500
2003	73,767,021	75,673,900	70,780,800	4,893,100	4,686,800	206,300
2004	67,759,400	68,500,300	64,958,200	3,542,100	2,865,200	676,900
2005	60,625,700	61,329,000	58,192,200	3,136,800	1,396,900	1,740,000

자료 : 재무부, 『대한민국정부결산관계총계자료』, 제3집, 1961.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각 연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세입세출결산 및 결산개요, 각 연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국민연금기금 독립 운용, 효율 높일 계기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부에서 완전히 독립돼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진작 이런 방향으로 가야 했다.

이미 2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 기금은 2012년엔 400조원, 2043년엔 2600조원으로 불어난다. 하지만 몸집만 크지 충충시하 시택 식구를 모시고 살림하는 며느리 신세와 같다. 기금을 운용할 전문 인력도 부족하지만 이중삼중의 규제로 운신의 폭이 여간 좁지 않다.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예산처의 다중 감독에다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런 구조하에서 급변하는 투자 및 금융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수익률을 높이는 게 어렵다.

투명성을 높인다면 복지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 부처와 경제

단체는 물론 노동계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까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의 효율성은 극히 낮다. 2006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87.2%가 수익성 낮은 채권에 투자돼 있고 주식투자 비율은 11.7%에 불과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올해 같은 주식 활황 장세에서도 기금운용 담당자들은 경직된 기금 운용계획에 묶여 구경꾼 노릇만 했다.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특성상 고(高)위험 투자도 곤란하지만 지금 같은 저수익 일변도 투자도 문제다.

우리도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이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처럼 수익성과 안정성이 모두 좋은 세계적 수준의 연금기금을 가질 때가 됐다. 새 기금운용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장기적으로 기금수익률이 1%만 올라도 보험료율이 3% 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것은 노후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다. 미흡하긴 해도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만큼 이제는 운용의 자율성 효율성 확보로 내실 있는 기금을 만들 때가 때다.

(동아일보 2007년 9월 7일자 '사설')

연금개편 눈 가리고 아웅식 안돼야

기대와 염려 속에 기다려 온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골자는 국민연금운용위원회를 어느 정부 부처에도 속하지 않도록 아예 떼어내 상설위원회로 만들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기존 기금운용본부는 공사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짜여졌다.

정기 국회에 제출될 이번 개정안은 큰 틀에서 보면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본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일부 위원이나 상근위원이 생겼고 독립 신설될 공사가 이

운용위원회 사무국 기능도 담당하면서 보좌하게 된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최고의결기구로서 운용위를 기대해 볼 만하다. 그동안 운용위도 형식상으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지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연구원과 기금운용본부 등이 짜오는 리스크 한도 관리 등을 그대로 추진하는 데 그쳤다.

다만 독립성이 자칫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일각에선 독립적 운영이라는 목표가 어찌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결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운용위와는 달리 정부에서 위원장을 맡게 될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연금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 조직을 통해 기금운용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과제는 실제 운용이다. 이번 개편안이 마련된 계기도 근본적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해 보자는 데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2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아마도 10년 전쯤부터 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노력했다면 지금 기금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졌을 것이다. 그랬다면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연금개혁을 반복하는 일은 아마도 많이 줄었을지 모른다. 안정성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

했던 책임을 지금에 와서 누구에게 물을 수 있겠는가.

큰 틀의 방향을 옳게 잡은 만큼 정부는 연금기금이 앞으로 분명한 성과를 통해 제대로 개편됐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금을 소규모로 분할해 운영하는 방안을 나중에 미루지 말고 곧바로 도입해 볼 것을 권한다.

(매일경제 2007년 9월 12일자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과제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확정되면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 개혁 필요성은 이미 작년부터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되어 제기되어 왔으며, 연초에 정부에서도 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내는 개혁'에서 '덜 받는 개혁'으로 수정되어 통과됨에 따라,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설계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그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에 이루어진 국민연금 개혁이 매우 복잡한 과정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힘들게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보면, 공무원 연금개혁의 길도 결코 순탄치 않은 항해가 될 것임을 예상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시일을 끌면 끌수록 국민 부담이 증대되고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국민적인 합일점을 도출하여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공무원연금은 외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의 하나로서 도입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연금을 퇴직 후 노후생활보장적 성격만이 아니라, 재직 중의 낮은 보수와 신분적 제약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 재해보상적 성격, 퇴직금적 성격 및 기타 인사정책적인 요소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복지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따라서 공무원 근무여건도 점차 발전되어 왔다. 공무원 보수 수준과 민간 보수 수준과의 격차는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는 등 공무원과 민간과의 차별성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 최근에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무원 연금의 종합 복지프로그램적 성격을 분리하여, 필요한 것은 남기고 나머지는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개혁이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보수가 대폭 인상되기 이전의 퇴직자와 보수 인상이후의 퇴직자간 형평성 확보 방안, 개혁 후 예상되는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간의 연금 차별에 따른 위화감 해결방안, 성과급 비중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성과급의 연금반영 방법, 은퇴 후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적절한 연금하한액과 상한액,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정부와 공무원의 부담률 상향 조정 방안, 그리고 연금 재정적 요인에 따른 공무원 정년연장의 타당성 여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대부분의 쟁점들이 국민과 공무원, 퇴직자와 현직자, 현직자와 신규자, 상위자와 하위자 등 각 집단간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으며, 서로가 이익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따라서 정부당국만이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 및 공무원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여러 선진국에서 연금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적으로 이익이며 그만큼 재정손실을 줄일 수 있다. 지금이 다음세대에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선배 세대가 아닌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용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신문 2007년 9월 1일자 '열린세상')

조세제도 분배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재정학회가 우리 조세제도는 분배를 향상시키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으며 세부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조세의 원칙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로 정부는 이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재정학회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누진과세가 가능한 개인소득세 비중이 작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으며, 따라서 분배개선은 세금보다 재정지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비중을 늘리면 분배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세계적 세금인하 추세와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만큼 재정을 통한 해결 노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재정학회는 그러나 재정지출도 임시적 일자리 창출 등에 소진해서는 안 되며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분야에 중점을 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어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으나 고용사정이 좀체 개선되지 않고 그나마 생기는 일자리도 임시직 등 질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교육이 가난의 대물

림 단절과 계층이동의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보고서는 우리 세제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꼽았다. 현실을 보면 틀림없는 이야기다. 근로소득자들은 소득이 한 푼도 어김없이 그대로 드러나 소득에 걸맞은 세금을 꼼짝없이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본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줄줄이 새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 파악이 어렵고 그나마도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등을 악용해 세금을 탈세하거나 줄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탈세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이런 탈루로 인해 사업소득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에 비해 매우 낮으며, 소득수준이 같아도 근로소득 비중이 큰 가계일수록 세부담이 더 많아 과세형평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분배개선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정책과 조세형평성 확립 노력이 시급하다.

(서울경제 2007년 8월 24일자 '사설')

인기영합적 세제개편 아닌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서민층과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

정을 위한 근로자·자영업자 세 부담 경감, 미래성장산업 지원 확대, 세원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 조세제도 선진화가 골자다.

특히 개편안은 그동안의 임금과 물가상승을 감안해 11년 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 가업(家業) 상속 지원, 파트너십 과세 제도 도입,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시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상당부분 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에 정부가 문화·예술·자선단체 등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동일기업 주식 한도와 계열사 주식비중을 대폭 늘린 것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비영리 공익사업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도 그동안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기부문화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왔음을 생각할 때 다행은 감이 없지 않다.

이는 기업의 공익사업 참여를 크게 촉진하고,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량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돕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자동차 특소세제 개편,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 도입 등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후속 조치와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서둘러야 할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의 문제점 또

한 적지 않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층 세 부담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지만, 그동안 참여정부가 지속적으로 증세(增稅)에 매달려온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선거를 앞둔 선심성 감세(減稅)의 인상부터 지우기 어렵다.

무엇보다 벤처 금융 물류 해외자 원개발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이 제시됐음에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랄 수 있는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을 더욱 촉진하고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세원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법인세 인하 등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세계개편의 우선 순위가 두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점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 2007년 8월 23일자 '사설'〉

고향세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농촌이라면 황순원의 '소나기'나 김유정의 '봄봄', '동백꽃'을 떠올린다. 심훈의 '상록수', 이광수의 '흙', 박영준의 '모범

경작생'도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소설 속에 나오는 농촌의 풍경은 목가적이고 낭만적이지만, 그 속에는 가난에 찌든 소작농들의 삶이 절절히 배어 있다.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의식주 문제는 물론이고 오토바이와 자가용이 즐비하다. 그러나 이 곳 농촌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보기와는 달리 사정은 영 판판이다. 농촌살이가 편하다면 어째서 '해마다 이농(離農)이 계속 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반문한다.

30년 전만 해도 농사인구는 전 인구의 70% 정도였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7%도 채 되지 않는다. 젊은 부부들을 찾기 힘들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친지는 이미 오래됐다. 농·어촌의 오지에서는 학생이 줄어 폐교가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심각하게 인식한 한 시골 출신 국회의원이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고향세' 도입을 제안했다. 주민세 가운데 10% 가량을 납세자가 태어난 고향에 나눠 내면 지역간 세수 격차가 다소나마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많은 납세자들이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지만 정작 세금을 내는 곳은 대도시여서 지방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일본을 벤치마킹한 고향세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엇그제 일본 정부는 2009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지방 주민의 생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이란 비난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일리가 있다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 같다.

현재 우리 몇몇 지자체에서는 '고향 부모님 세금 대신 납부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호응이 매우 좋은 편이라고 한다. 세정(稅政)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고향세도 한번쯤 고려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다.

박영배(한국경제 논설위원)
 〈한국경제 2007년 9월 8일자 '천자칼럼'〉

체감경기를 살리려면...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기는 회복세가 완연하다. 재정경제부 역시 경기회복세가 견실하다고 진단한다. 생산과 투자만 보면 우리 경기는 회복국면에 들어서 있다. 중국 올림픽 특수로 조선과 철강, 그리고 기계류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 투자와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식시장까지 활황세를 보이면서 분기별 성장률은 3년 반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이 직접 받는 소득도 늘어나 국민총소득(GNI)은 2.2%나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과 투자에서의 회복세와는 달리 실제로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이와 거리가 있다. 많은 국민은 아직도 이러한 경기회복

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지표상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가 늘어나지 않음으로 인해 도·소매업 매출이 증가하지 않게 되고, 국민은 실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체감경기 회복의 관건인 국내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먼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소비는 소득이 높아지면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러나 미래가 불확실한 경우는 소득이 높아져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게 된다. 소비자들은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많은 임금노동자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연금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조기 퇴직이 일반화돼 있다. 많은 직장인이 50세 이전에 조기 퇴직을 당할 것을 염려해 지금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지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소득은 늘어났지만 소비증가율은 둔화하고 있고 대신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 영향으로도·소매업의 매출 역시 다른 업종에 비해 그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소비가 되살아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늘어난 실업과 소득의 양극화 때문이다. 기업투자가 부진해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자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들은 소득이 없어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해외소비만 늘리지 국내소비를 늘리지 않는다. 결국 국내소비를 늘릴 수 있는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우리 소비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가 600조원에 근접하면서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고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최근의 한국은행 통계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 우리 소비부진과 이로 인해 체감경기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성장률은 높아져도 체감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 구조 속에 우리 경제가 들어가 있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국내소비를 늘릴 수 있는 중산층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해 국내투자가 늘어나게 만들어 더 많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중산층을 늘려야 국내소비가 증가해 체감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과도한 임금인상

을 자제하고 기업 역시 이에 협력해 지금과 같이 50대 이전에 퇴직하는 조기퇴직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퇴직 연령을 과거와 같이 50대 후반으로 늦추어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 주어야 소비가 다시 늘어난다. 그래야 우리의 체감경기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중앙일보 2007년 9월 11일자 '시론'〉

한·미 FTA 동意的 조속 처리돼야

정부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발효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談話)를 내고 국회의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낙관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적응하면서 시장을 넓혀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 비해 FTA 체결이 뒤져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과의 협정 발효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런데도 국회 일각에서 비준동의안에 반대한다거나 국정조사를 추진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미 FTA는 이미 협상체결 과정에서 수많은 의견수렴과 논란을 거쳐 국민적 합의에 이른 사안이다. 따라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투쟁을 벌이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지역이나 계층, 또는 직능별 대표들이 모인 대의기관이다. 때문에 개중에는 특정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차를 극복하고 국론을 통일시켜 법률이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회의 본분 아닌가. 대다수 국민여론은 외면한 채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론분열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작태(作態)가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이미 국민여론 검증이 끝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비생산적인 트집을 잡을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마땅하다.

〈한국경제 2007년 9월 8일자 '사설'〉

재정포럼

2007년 9월호 통권 제135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민희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간사 /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월간 재정포럼

2007년 9월 15일 발행 / 제12권 제9호(통권 제135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 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